

포스코이앤씨

#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2026

Compliance  
Program

2026. 07. 개정판



posco  
포스코이앤씨

##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개정판을 발간하면서

포스코이앤씨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송기원입니다.

최근 전쟁, 글로벌 공급망 불안 및 AI발(發) 에너지 전환 등에 따른 원자재·인건비 급등으로 건설산업 전반이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녹록지 않은 대·내외 환경에서도 우리가 더욱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는 투명하고 공정한 ‘준법경영’의 실천입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좋은 관계와 평판일지라도 아주 작은 실수 하나로 잃을 수 있는 만큼, 기본부터 철저히 상생 협력과 법규를 준수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는 준법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2003년 CP를 도입한 이래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23~’24년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CP 등급 평가에서 국내 건설사 최초로 2년 연속 최고 등급(AAA, 최우수)을 획득하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예방 체계를 통해 준법경영을 더욱 공고히 하고 현업 부서의 법 위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며 현장 실무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법 개정 내용과 주요 위반 사례 및 최신 공정위 보도 자료를 적극 반영하여 제20차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개정본을 발간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새롭게 발간되는 편람을 업무 수행의 길잡이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포스코이앤씨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및 상생 협력의 선두주자로서 고객과 협력사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변함없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6년 7월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송 기 원

## (주)포스코이앤씨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제20차 개정본 발간을 축하하며...

안녕하세요, 진덕건설 대표이사 이상해입니다.

포스코이앤씨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제20차 개정판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사는 1994년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포항시 지곡동 일원의 부지조성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하수도공사 및 포장공사 등을 수행하며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변함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해 왔으며, 오늘의 진덕건설이 있기까지 포스코이앤씨와의 동행은 무엇보다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공정과 윤리를 실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포스코이앤씨와 파트너로서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진덕건설은 PHP 최우수 협력사로서,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상생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태도’입니다.

원청사와 협력사 모두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서로를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상호 존중과 이해, 그리고 배려를 바탕으로 한 태도는 모든 협력의 출발점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중요한 화두인 안전과 상생협력 등 다양한 현안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상생이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는 ‘공정과 상식’입니다.

불법 하도급이나 저가 입찰 등 불공정한 방식의 공사 참여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청사와 협력사 모두가 합리적인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시장가격과 적정 관리비가 충분히 반영된 공사비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될 때 협력사는 보다 우수한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가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급격한 물가 변동에 대한 공동 대응’입니다.

최근 협력사들은 계약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기보다, 원청사와 협력사가 함께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상생의 가치로 이어질 것입니다.

‘공정’이라는 말에는 ‘공평’이라는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것을 넘어 공평함과 올바름을 실천하는 것이며, 이러한 공정은 윤리와 상호 존중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포스코이앤씨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제20차 개정판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상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진덕건설 대표이사

이 상 해



## 자율준수 편람 개정시 고려사항

정부정책 동향

### 목표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

### 핵심 추진 과제

####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 ▶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 보장
- ▶ 가맹·대리점주의 사업여건 개선
- ▶ 자영업자 보호장치 확충 및 경영애로 해소

####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 ▶ 담합 및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 ▶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정경쟁 기반 확대
- ▶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

####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 ▶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대책 추진
- ▶ 디지털 거래 소비자 권익 강화
- ▶ 신유형·글로벌 거래 소비자 피해 예방

####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 ▶ 부당 내부거래 감시·제재 강화
- ▶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 ▶ 시장 자율감시 기능 확대 및 기업 부담 완화

### 추진 기반

####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 구제 강화

- ▶ 법 집행 시스템 실효성 제고
- ▶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 조정 및 소송 지원 확대

##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개정 연혁

| 구분     | 시기      | 주요변동                          | 주관        |
|--------|---------|-------------------------------|-----------|
| 최초 발간  | 2008.06 | -                             | 포스코건설     |
| 1차 개정  | 2010.04 | 법 개정사항, 최신판례 등 반영             | 포스코건설     |
| 2차 개정  | 2012.09 | 포스코 그룹 통합편람 발간                | 포스코 그룹 공동 |
| 3차 개정  | 2014.01 | 대기업집단 부문 개정                   | 포스코 그룹 공동 |
| 4차 개정  | 2014.07 | 업무추진 시 유의사항 추가                | 포스코 그룹 공동 |
| 핸드북 발간 | 2015.07 | 하도급법 Handbook 최초 발간           | 포스코건설     |
| 5차 개정  | 2015.10 | 구매, 마케팅 부문 발간                 | 포스코 그룹 공동 |
| 6차 개정  | 2016.10 | 대기업집단 부문 발간                   | 포스코 그룹 공동 |
| 7차 개정  | 2018.10 | 법 개정사항, 최신판례 등 반영             | 포스코 그룹 공동 |
| 8차 개정  | 2020.06 | 건설업종 특화 편람 발간                 | 포스코이앤씨    |
| 9차 개정  | 2020.12 | 법 개정사항, 사례, 행동지침 추가           |           |
| 10차 개정 | 2021.05 | 법 개정사항, 사례, 운영지침 개정           |           |
| 11차 개정 | 2021.12 | 법 개정사항, 사례, 운영지침 개정           |           |
| 12차 개정 | 2022.05 | 법 개정사항, 사례, 운영지침 개정           |           |
| 13차 개정 | 2022.12 | 법 개정사항, 사례, 운영지침 개정           |           |
| 14차 개정 | 2023.06 | 법 개정사항, 사례, 운영지침 개정           |           |
| 15차 개정 | 2023.12 | 법 개정사항, 사례, 운영지침 개정           |           |
| 16차 개정 | 2024.07 | 법 개정사항, 사례, 운영지침 개정           |           |
| 17차 개정 | 2024.12 | 법 개정사항, 사례, 운영지침 개정           |           |
| 18차 개정 | 2025.07 | 법 개정사항 반영, 직원 Q&A, 제재 등 사례 추가 |           |
| 19차 개정 | 2025.12 | 법 개정사항 반영, 직원 Q&A, 제재 등 사례 추가 |           |
| 20차 개정 | 2026.07 | 법 개정사항 반영, 제재 사례 추가, 운영지침 개정  | 포스코이앤씨    |

##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모바일 앱 접속방법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업무 지원을 위해 배포한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 책자 및 전자파일(PDF)에 이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접근이 가능한 모바일 App.을 운영중 이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모바일 App. 접속경로

- 핸드폰 그룹스토어 → 모바일포탈 →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 목차 제목 클릭시 해당페이지로 이동



###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PC 접속경로

1. EP시스템 → 공정거래자율준수 홈페이지 App. → 자료실 → 편람
2. EP시스템 → 게시판 → '편람' 상세검색 ('20. 6. 4.자 공지)

【문의】공정거래그룹

법무실 공정거래그룹

## 목 차

|                      |    |
|----------------------|----|
| · 발간사                | 02 |
| · 협력사 VOC            | 04 |
| · 정부 정책 동향           | 05 |
| ·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개정 연혁 | 06 |
| · Mobile App 접속경로    | 07 |

##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관련부서 전사(全社)

|                                |    |
|--------------------------------|----|
| 01. CP(Compliance Program)의 개념 | 16 |
| 02. CP의 필요성                    | 17 |
| 03. CP의 핵심 8요소                 | 18 |
| 04. CP 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 경감제도 | 20 |
| 05. CP 운영실적                    | 21 |

## II 하도급법 실무

관련부서 사업본부(현장) / 구매

### 01. 하도급법 적용범위

|                      |    |
|----------------------|----|
| 1. 건설위탁              | 27 |
| 2. 제조위탁              | 29 |
| 3. 용역위탁              | 30 |
| 4. 적용대상 사업자          | 31 |
| 5. 적용제외대상 중소기업       | 32 |
| 6. 법 적용대상 기간         | 32 |
| 7. 법 위반에 대한 주요 제재 내용 | 33 |

## 02. 원사업자 의무사항

|                                                                  |    |
|------------------------------------------------------------------|----|
| 1.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                                                | 38 |
| 2. 선급금 지급 의무                                                     | 50 |
| 3.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의무                                               | 54 |
| 4.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 58 |
| 5.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 지급보증 의무                                       | 66 |
| 6.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br>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br>증액되는 경우 | 72 |
| 7.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                                     | 81 |

## 03. 원사업자 금지사항

|                                           |     |
|-------------------------------------------|-----|
| 1. 부당한 특약의 금지                             | 87  |
| 2.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93  |
| 3.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106 |
| 4.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 108 |
| 5. 부당 반품의 금지                              | 113 |
| 6.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 115 |
| 7.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및<br>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122 |
| 8.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 125 |
| 9.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 147 |
| 10.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 149 |
| 11.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금지                        | 153 |

## 04. 발주자 의무사항

|                        |     |
|------------------------|-----|
| 1.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 | 157 |
|------------------------|-----|

## III

## 공정거래법 실무

관련부서 영업부서/ 구매 / 경영기획

### 01. 부당한 공동행위

|                    |     |
|--------------------|-----|
| 1. 부당한 공동행위        | 163 |
|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    | 166 |
| 3. 공동행위의 예외적 허용    | 168 |
| 4.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 169 |
| 5.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 178 |
| 6. 자진신고자 감경제도      | 179 |

### 02. 부당한 지원행위

|                    |     |
|--------------------|-----|
| 1. 부당한 지원행위        | 180 |
| 2.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제재 | 186 |

### 03.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                       |     |
|-----------------------|-----|
| 1.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 192 |
| 2. 부당한 거래거절           | 194 |
| 3. 차별적 취급             | 197 |
| 4. 경쟁사업자 배제           | 205 |
| 5. 부당한 고객유인           | 208 |
| 6. 거래강제               | 212 |
| 7. 거래상 지위남용           | 216 |
| 8. 구속조건부 거래           | 223 |
| 9. 사업활동 방해            | 226 |
| 10.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 229 |

#### 04. 공시제도

|                         |     |
|-------------------------|-----|
| 1.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232 |
| 2. 비상장사 중요사항 수시공시       | 242 |
| 3. 기업집단현황 공시            | 248 |

#### 05. 기업결합

|                     |     |
|---------------------|-----|
| 1. 기업결합의 유형         | 257 |
| 2.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 259 |
| 3. 기업결합의 심사기준       | 262 |
| 4. 기업결합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 | 269 |

### IV

#### 표시·광고법 실무

관련부서 분양 / 마케팅 / 홍보

##### 01. 표시·광고법 개념 및 위반유형

|                    |     |
|--------------------|-----|
| 1. 표시·광고의 의의       | 274 |
|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275 |
| 3.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 276 |
| 4. 부동산 표시·광고의 심사기준 | 277 |

##### 02. 표시·광고법의 실효성 확보 및 위반시 제재

|              |     |
|--------------|-----|
| 1. 중요정보 공개제도 | 283 |
| 2. 임시중지명령제도  | 283 |
| 3. 광고실증제도    | 284 |

### V

#### 약관법 실무

관련부서 분양 / 마케팅

##### 01. 약관법의 적용범위

|                     |     |
|---------------------|-----|
|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란? | 288 |
| 2.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제재    | 289 |

##### 02. 약관법의 특성

|                 |     |
|-----------------|-----|
| 1. 약관법의 특성 및 해석 | 290 |
|-----------------|-----|

##### 03. 불공정한 약관조항

|                    |     |
|--------------------|-----|
| 1. 불공정한 약관의 일반원칙   | 293 |
| 2. 면책조항의 금지        | 295 |
| 3. 과중한 손해배상 예정의 금지 | 297 |
| 4. 계약의 해제·해지       | 299 |
| 5. 채무의 이행          | 301 |
| 6. 고객의 권익보호        | 302 |
| 7. 의사표시의 의제        | 304 |
| 8. 소송 제기의 금지 등     | 306 |

## VI

### 공정거래 자율점검

관련부서 전사(全社)

#### 01.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 |                       |     |
|-----------------------|-----|
| 1. 하도급법               | 308 |
| 관련부서 사업본부(현장) / 구매    |     |
| 2. 공정거래법(부당한 공동행위)    | 311 |
| 관련부서 영업부서 / 구매 / 경영기획 |     |
| 3. 공정거래법(부당한 지원)      | 313 |
| 관련부서 영업부서 / 구매 / 경영기획 |     |
| 4. 공정거래법(공시)          | 317 |
| 관련부서 영업부서 / 구매 / 경영기획 |     |
| 5. 표시광고법              | 320 |
| 관련부서 분양 / 마케팅 / 홍보    |     |

#### 0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 |       |     |
|-------|-----|
| 1. 예규 | 324 |
| 2. 지침 | 330 |

## I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관련부서 전사(全社)

## 01 | CP(Compliance Program)의 개념

-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
-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CP의 핵심

## 02 | CP의 필요성

### 1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 전환

- CP 도입은 세계적 추세로 해외 선진기업과 국내 선도 제조업들은 위험관리 차원에서 CP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

### 2 법 위반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

-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 뿐만 아니라 법 위반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무형의 비용을 부담

### 3 대내외 신인도 제고

- CP 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

### 4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쟁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경감,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 경감 등의 혜택

## 03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핵심 8요소

### 1 CP의 도입 및 운영방침의 수립

- 경쟁법 자율준수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관심이 중요하며, 경쟁법의 엄격한 준수가 경영정책의 중요한 요소임을 행동강령이나 준수정책을 통해 공식적 문서로써 조직 내·외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함

### 2 최고 경영진의 지원

-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명확하고 충분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며, 조직 규모에 적합한 인적·물적 자원이 제공되는 등 최고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함

### 3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해 최고의사결정기구에서 최고경영자가 아닌 임원을 CP 운영 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함

###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 회사는 자율준수 관리자의 책임하에 세부지침서로서 활용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야 하고, 임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배포하여야 함

### 5 교육훈련프로그램

- 기업 내부에 자율준수 관행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임직원들에게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경쟁법에 저촉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최고경영자 및 임원(자율준수관리자 포함), 그리고 법위반 행위의 가능성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에게는 보다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6 사전 감시체계

-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은 법위반 행위의 예방과 감시에 있으므로 일상적인 업무에서 법위반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감시·감독하고, 법위반 발생시 이를 자율 준수관리자 및 최고경영진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7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 법위반 행위를 기업 스스로가 용인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위반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임직원의 자발적인 경쟁법 준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함

### 8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함

## 04 CP 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 경감제도

### 1 경감제도의 의의

-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불가피하게 혹은 임직원의 실수로 공정거래 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제재 수준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

### 2 CP등급평가 인센티브

- CP 등급평가를 3등급(AAA, AA, A)으로 구분하여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인센티브 제공

#### ① 직권조사 면제

| CP 등급                                                                                                                               | 직권조사 면제 | 적용대상                                   |
|-------------------------------------------------------------------------------------------------------------------------------------|---------|----------------------------------------|
| AAA                                                                                                                                 | 2년      | - 공정거래법 제45조 (단, 부당지원행위 제외)            |
| AA                                                                                                                                  | 1년 6개월  | -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등 |
| • 인센티브 적용 제외<br>- 최근 2년간 조사활동방해로 처벌받은 경우<br>-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 신고(인터넷신고 포함)나 민원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br>- 명백한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②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면제 혹은 감경

| CP 등급 | 위반사항 신문 공표                | 적용대상                                                                                        |
|-------|---------------------------|---------------------------------------------------------------------------------------------|
| AAA   | 공표크기, 매체수를 1회에 한하여 2단계 하향 | -공정거래법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제52조 / 하도급법 제7조 /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 할부거래법 등 |
| AA, A | 공표크기, 매체수를 1회에 한하여 1단계 하향 |                                                                                             |

#### ③ 과징금 감경

| CP 등급 | 과징금 감경 | 적용대상                                        |
|-------|--------|---------------------------------------------|
| AAA   | 15%    | 법 위반을 탐지, 중단하였음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할 경우 5%까지 추가 감경 |
| AA    | 10%    |                                             |

## 05 CP 운영실적 : (주)포스코이앤씨

### 1 Compliance Program 추진경과

- CP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입니다. 회사는 2003년 7월 이를 도입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                                           |
|---------|-------------------------------------------|
| 2026.07 |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20차 개정                         |
| 2025.12 |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19차 개정                         |
| 2025.07 |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18차 개정                         |
| 2025.05 | 이사회 의결을 통한 자율준수 관리자 신규 선임(법무실장 직무대행 송기원)  |
| 2024.12 |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17차 개정                         |
| 2024.12 | CP평가 'AAA' 등급 2년 연속 획득                    |
| 2024.07 |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16차 개정                         |
| 2024.02 | 이사회 의결을 통한 자율준수 관리자 신규 선임(법무실장 권영균)       |
| 2023.12 |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15차 개정                         |
| 2023.12 | CP평가 'AAA' 등급 획득(국내 건설사 최초)               |
| 2023.09 |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및 동반성장지수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2년 연속) |
| 2023.06 |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14차 개정                         |
| 2022.12 | CP평가 'AA'등급 2년 연속 획득 (국내 건설사 유일)          |
| 2022.12 |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13차 개정                        |
| 2022.09 |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동반성장지수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
| 2022.08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현황 공시 정례화                |
| 2022.07 |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12차 개정                        |
| 2022.06 | 이사회 의결을 통한 자율준수 관리자 신규 선임(법무실장 김성준)       |
| 2022.02 | 공정거래종합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
| 2021.12 | CP평가 'AA'등급 획득 (국내 건설사 최초)                |
| 2021.12 |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11차 개정                        |
| 2021.06 |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10차 개정                        |
| 2021.05 | 온라인 도급설계변경 통지서 발급시스템 도입                   |
| 2021.04 |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에 대한 체불관리시스템 사용 확대 시행        |
| 2020.12 |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9차 개정                         |

## 05. CP운영실적

|         |                                                                              |
|---------|------------------------------------------------------------------------------|
| 2020.09 |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상생발전)수상                                                           |
| 2020.07 |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건설업계 상생협약 체결<br>온라인 기술자료제공요구서 시스템 도입                              |
| 2020.06 |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br>약관공정화 인공지능(AI)시스템 도입<br>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재발간            |
| 2020.03 | 표준구입사양서 전분야 제정                                                               |
| 2019.12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창(공정거래질서 확립)수상<br>국토교통부장관 표창(상생경영)수상                            |
| 2019.06 |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우수' 등급 획득                                                        |
| 2019.05 | 공정거래 홈페이지 및 온라인 작업지시서 시스템 도입                                                 |
| 2019.04 |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분야 도입                                                              |
| 2018.09 | 표준구입사양서(공사)제정                                                                |
| 2017.12 | 표준하도급계약서(공사)도입                                                               |
| 2016.03 | 하도급법 위반 여부 자체점검 및 자진시정 체제 도입                                                 |
| 2015.07 | 하도급법 handbook 발간 및 배포                                                        |
| 2014.11 | 협력업체 CP도입 지원                                                                 |
| 2014.04 |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공정거래전담 그룹 운영                                                    |
| 2011.01 | CP평가 AA등급 획득(현 등급평가 업체 중 최고 등급)                                              |
| 2010.06 | CP운영현황 전사 운영회의 보고                                                            |
| 2010.05 | 단계별 하도급법 점검사항 현장 발송                                                          |
| 2010.04 | 2010공정거래준수편람 발간                                                              |
| 2010.02 | 공정거래자율점검체계 구축                                                                |
| 2010.01 | VP연계 공정거래 / 윤리Risk 예방활동 실시                                                   |
| 2009.04 |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A등급                                                       |
| 2008.06 |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제작 VER.3 (건설업 특성에 맞게 구성)                                        |
| 2008.02 | 공정거래 사이버교육 전직원 의무교육 실시                                                       |
| 2006.12 | CP평가 'A' 등급 획득                                                               |
| 2005.04 | 공정거래 전담조직 신설(윤리실천사무국)                                                        |
| 2005.02 | CP실천리더 임명                                                                    |
| 2003.07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도입, 운영<br>자율준수관리자 임명(이사회 의결 : 상임감사)<br>자율준수협의회 구성(12개 유관부서장) |

## 2 추진실적

| 항목                        | 추진실적                                                                                                                                            |
|---------------------------|-------------------------------------------------------------------------------------------------------------------------------------------------|
| ①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 CP운영 예규 제정('03.7월)<br>· CP운영 지침 제정('20.2월)                                                                                                    |
| ② 최고경영자의 자율 준수 의지 및 지원    | · CEO자율준수의지 대내외 선포('03.7월)<br>· 회사홈페이지 CEO인사말 중 공정거래 준수 표명(상시)<br>· 공정거래자율준수 CEO메시지 및 임직원 서약(매년)<br>· 공정거래 전담조직 신설('05.4월)                      |
| ③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 이사회의를 통한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 ④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활용          | · 자율준수편람 개정 20회('10.4월~'26.7월)<br>· 자율준수편람 최종 개정 (20차, '26.7월)                                                                                  |
| 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 · 임원, 직책자, 일반직원 등 계층별 교육 실시(상시)<br>· 신입사원, 전입자, PM예비교육 등 맞춤형 교육 실시(상시)<br>· 현장, 고위험 스템부서 등 선별 교육 실시(상시)<br>· 집합/비대면 교육,게시판 공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상시) |

추진실적

| 항목                         | 추진실적                                                                                                                                                                                                     |
|----------------------------|----------------------------------------------------------------------------------------------------------------------------------------------------------------------------------------------------------|
| ⑥ 내부감시체계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준수관리자 주관의 자율준수협의회 운영(상시)</li> <li>· PM회의,사업심의회,이사회 등의 협의제도 운영(상시)</li> <li>· 공정거래 종합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상시)</li> <li>· 불공정거래, 비윤리, 갑질 등에 대한 신고/상담센터 운영(상시)</li> </ul> |
| ⑦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실시(상시)</li> <li>· 공정거래 업무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실시(매년)</li> </ul>                                                                                |
| ⑧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시스템, 기획, 민원 등 다양한 점검/감사 실시(상시)</li> <li>· 효과성평가 실시(매분기)</li> <li>· 서면발급, 모니터링, 이상 징후 등 시스템 개발 및 운영(상시)</li> </ul>                                           |

포스코이앤씨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 하도급법 실무

관련부서 사업본부(현장) / 구매

## 01 | 하도급법 적용범위

### 하도급법의 목적 및 입법취지

- 하도급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경제활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수평적·협력적 관계를 통해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거래상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
- 분쟁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면발급 의무를 정하고 있음
- 원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명확히 하고 있음
- 수급사업자로부터 위반행위의 정보제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또는 중소기업청에 의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음

### 1 건설위탁(법 제2조)

- 건설업자가 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그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자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 (2) 건설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 (3) 자체 발주공사의 건설위탁

- 건설업자가 아파트 신축공사 등 건설공사를 자기가 발주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 계약체결 시점에 건설관련 면허·등록이 없었으나 그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면허 등을 취득한 시점부터 법 적용대상이 됨

#### (4) 형식적 하도급관계와 사실적 하도급관계

- 형식적 하도급관계와 사실상의 하도급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하도급거래를 적용대상으로 함

**예시** 원사업자(A)가 사실상의 수급사업자(B)와 하도급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형식상으로는 A가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사실상의 관계가 입증되면 A와 B사이에 하도급관계가 있다고 봄

## ■ 사실상의 관계란?

- ① B가 A에 대하여 공사에 관한 계약이행을 보증한 사실 또는 담보책임을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② B가 공사와 관련된 인부의 산재보험료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일지, 장비가동일보, 출력일보, 유류 사용대장 등에 B의 책임 하에 장비, 인부 등을 조달하여 시공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④ 형식상으로는 B가 A의 소장으로 되어 있으나 B가 동 공사기간 중 A로부터 봉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⑤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B가 직접 허가를 받아 시공한 경우

■ 건설위탁의 범위 예시

1.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기공사가 주인 공사를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에게 전기공사 시공을 의뢰한 경우는 "건설위탁"으로 보지 않음 (단, 부대적인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위탁"으로 봄)
2. 토공사업에만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습식공사업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습식 공사를 시공의뢰 한 경우에는 건설위탁으로 보지 않음

## 2 제조위탁

-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業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① 물품의 제조 ② 물품의 판매 ③ 물품의 수리 ④ 건설

☞ 그 業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 고시

## (1) 건설공사의 경우 다음의 경우가 제조위탁에 해당될 수 있음

-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가드레일, 표지판 등 시설물을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제작위탁
- 레미콘, 아스콘 등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거래관행상 별도의 시방서 등의 첨부 없이 규격, 품질 등을 지정하여 납품하도록 제조위탁하는 것
- 주방가구, 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하여 제조위탁
- 규격·표준화된 자재라도 특별히 사양서 등을 첨부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는 해당됨

■ 제조위탁의 범위 예시

1. 위탁받은 사업자가 자체개발한 신제품을 위탁한 사업자의 승인하에 제조하는 경우
2. 단순한 건설자재인 시멘트, 자갈, 모래는 제외되나 규격 · 품질 등을 지정하여 골재 등을 제조위탁하거나 석산 등을 제공하여 임가공 위탁하는 경우
3. 단순한 일반사무용품의 구매나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 · 설비 등을 단순히 제조위탁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4. 위탁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조위탁하지 않고 단순구매 하여 납품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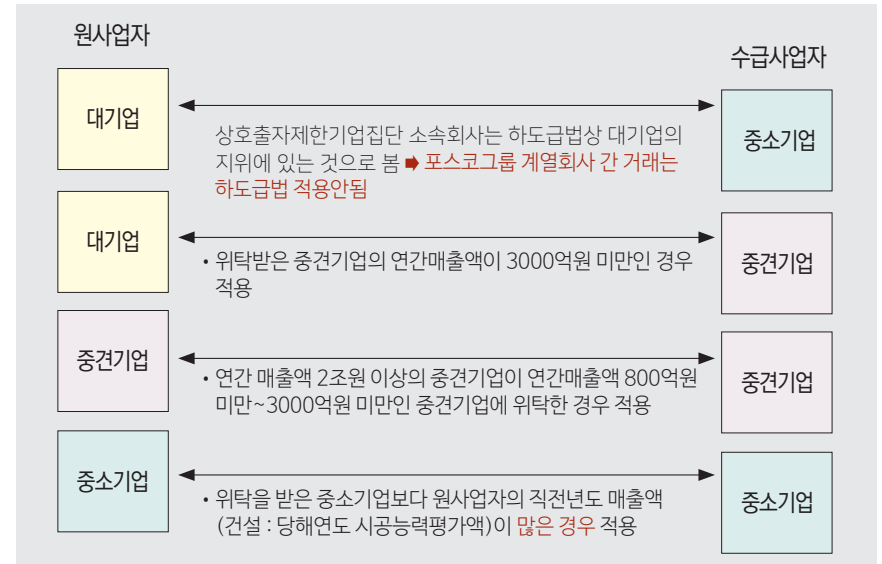
### 3 용역위탁

-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業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 이 경우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용역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함

#### ■ 용역위탁의 범위 예시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 구조계획서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위탁
-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한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설계의 위탁
- 엔지니어링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공장 및 토목공사의 타당성 조사, 구조계산의 위탁
- 시험, 감리의 위탁
- 시설물의 유지관리의 위탁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의 업무의 위탁
- 역무의 공급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위탁받은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

### 4 적용대상 사업자(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



#### ■ 중소기업 정의

- 제조·서비스 업종별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3개년 평균·연간매출액 4백억원 이하 ~1천5백억원 이하
- 건설업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3개년 평균·연간매출액 1천억원 이하

#### ■ 중견기업 정의

↳ 중소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아닌 기업

※ 법 개정에 따라 중견기업이 수급사업자로 보호되는 경우

-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이하 '대기업')로 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 소규모 중견기업이 대규모 중견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 중소기업이 매출액의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지위가 유지되어 하도급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건설업의 경우 3년간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천억원 초과 시 규모상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되지만 5년간 중소기업 지위 유지

## 5 적용제외대상 중소기업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 연간매출액(시공능력 평가액)이 일정규모 미만 중소기업은 원사업자 대상에서 제외

| 위탁 유형   | 연간매출액(시공능력평가액) |
|---------|----------------|
| 용역위탁    | 10억원 미만        |
| 제조·수리위탁 | 30억원 미만        |
| 건설위탁    | 45억원 미만        |

## 6 법 적용대상 기간

- 하도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단,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유출한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여 조사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되거나 분쟁조정 당사자가 분쟁 조정신청을 한 사건의 경우 3년이 경과하여도 조사가 가능함 (하도급법 제23조)

### ➡ 거래종료일

- 제조·수리 및 지식·정보성과물의 제작위탁 :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 :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
- 건설위탁 : 공사가 완공된 날
-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 : 해지 또는 중지된 날

## 7 법 위반에 대한 주요 제재내용

### (1)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시정명령, 권고 등)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 과징금 :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법 위반 금액 비율에 따라 산정, 위반 금액 비율 산정 곤란시 20억원 이내에서 부과)
- 상습 법위반자 명단 공표  
(법 위반 시정권고 3회 이상 사업자 중 별점 4점 초과)
- 입찰제한(3년간 별점 5점 초과) 및 영업정지(3년간 별점 10점 초과)

### (2) 행정질서벌(과태료)

- 출석처분 위반, 허위 자료 제출 : 사업자 1억원 이하, 개인 1천만원 이하
- 조사 방해, 거부 : 사업자 2억원 이하
- 수급사업자 자료 제출 방해 : 사업자 5천만원 이하, 개인 500만원 이하
- 서면실태조사 : 사업자 500만원 이하

### (3) 형사적 제재

- 하도급대금 2배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부당경쟁간섭 금지 및 탈법행위 금지 위반 자

1. 하도급법 적용범위

7. 법 위반에 대한 주요 제재내용

- 3억원 이하의 벌금

·보복조치

- 고발 (법위반 3회 이상 및 벌점 4점 초과)

※ 양벌규정 : 행위자 및 법인 처벌

(4) 민사적 제재

- 손해배상 책임

- 하도급 4대 핵심 불공정 행위 + 보복조치 ▶ 3배 손해배상 책임

① 부당단가인하(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및 감액 금지)

② 부당발주취소(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③ 부당반품 금지

-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공 ▶ 5배 손해배상 책임

벌점 부과기준

•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                     |            |       |
|---------------------|------------|-------|
| 경고                  | 서면실태조사     | 0.25점 |
|                     | 신고 or 직권인지 | 0.5점  |
| 시정권고<br>자진시정&재발방지명령 | 1.0점       |       |
| 시정명령                | 2.0점       |       |
| 과징금                 | 2.5점       |       |
|                     | 예외 *       | 2.6점  |
| 고 발                 | 3점         |       |
|                     | 예외 *       | 5.1점  |

\*예외 : 부당하도급 대금 결정(법 제4조), 감액금지(법 제11조), 기술자료유용(법 제12조의3 제4항), 보복조치의 금지(법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2.6점, 고발의 경우는 5.1점 적용

\*납품단가 연동제(법 제3조제5항)를 위반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의 유형에 관계없이 3.1점을 부과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법 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5.1점을 부과한다.

1. 하도급법 적용범위

벌점 경감기준

- 벌점의 경감은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 중 가장 최근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시정조치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1개 사업연도 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한다.

※ 상습 법 위반사업자 명단 공표의 경우에는 명단 공표일

| 유 형                                                        | 경감 점수                                                        |
|------------------------------------------------------------|--------------------------------------------------------------|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br>(변경계약 포함)                                | 90% 이상 : 2점<br>70% 이상 ~ 90% 미만 : 1점                          |
| 현금결제비율                                                     | 100% 이상 : 1점<br>80% 이상 ~ 100% 미만 : 0.5점                      |
| 입찰정보 공개비율<br>(국가 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입찰 계약은 제외)         | 80% 이상 : 1점<br>50% 이상 ~ 80% 미만 : 0.5점<br>(최저/낙찰 금액 7일 이내 공개) |
|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                                                | 최우수 : 2점<br>우수 : 1점                                          |
| 공정위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 3점                                                           |
| 협약평가결과<br>(동반성장협약, 평가 양호 이상)                               | 최우수 : 3점<br>우수 : 2점<br>양호 : 1점                               |
| 하도급대금 지급관리 시스템 활용<br>(대금 직접 지급)                            | 50% 이상 : 1점<br>50% 미만 : 0.5점                                 |
| 수급사업자 피해 구제                                                | (공정위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름)                                           |
| 연동계약을 포함한 계약 건수의 비율<br>(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대금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계약) | 50% 이상 : 1점<br>10% 이상 ~ 50% 미만 : 0.5점                        |
| 하도급대금 총액 대비 인상 조정하여 지급한 대금 비율                              | 10% 이상 : 1.5점<br>5% 이상 ~ 10% 미만 : 1점<br>1% 이상 ~ 5% 미만 : 0.5점 |

## 02 원사업자 의무사항

| 의무사항                          | 내용                                                                                                                                                                                                                   | 법조문    | 본문<br>보기 |
|-------------------------------|----------------------------------------------------------------------------------------------------------------------------------------------------------------------------------------------------------------------|--------|----------|
|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사항을 기재하고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 제3조    | 38p      |
| 선급금 지급 의무★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때에는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제6조    | 50p      |
|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의무               |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함                                                                                                                             | 제9조    | 54p      |
|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제13조   | 58p      |
|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함<br>※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 발급 (시행령 8조, 2020.07.08 개정시행)<br>당사는 종전 하도급법 시행령의 내용(신용등급 우수)에 따라 지급보증의무를 면제 받았으나, 법 개정으로 해당 조항 삭제 및 발급이 의무화 되었음.                                          | 제13조의2 | 66p      |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 의무★ | 원사업자는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받는 경우,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때에는 그 추가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함<br>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제16조   | 72p      |
| 공급원가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의무    |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필요한 공급원가의 가격 변동,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납품 시기 지연으로 관리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함                                    | 제16조의2 | 81p      |

★ 우리 회사의 하도급 거래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

## 1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

### ① 서면의 발급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 해야함

#### (1) 서면 기재사항

-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 사항
- 그 밖에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목적물)의 내용
  -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 하도급대금(선금금, 기성금, 조정금액 등)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규정

- 주요 원재료의 가격 또는 주요 에너지 비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함
-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함

- 주요 에너지**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에너지(「에너지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에너지)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를 말함

#### ■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서면교부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주요 원재료
-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 하도급대금 연동의 산식
-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 ■ 하도급대금 연동 예외

-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2) 서면의 발급시기 : 사전 발급

- 제조위탁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수리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건설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용역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

■ 예외적으로 일부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발급 가능(하도급법 제3조 제3항)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 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발급이 가능하나,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않은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시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사항을 적지 아니한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 정당한 사유를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함

↳ 해당사항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함(법 제3조 제4항)

참고

우리회사 오프라인 작업지시서 사용제한 (2022.8.1일부)

\* 법정기재사항 6가지 중 일부 작성이 불가한 경우, 보완작업지시서 발급 예정일을 기재한 불안전 발급 이후, 예정일내 재발급 가능

\* 인사조치 기준 : 위반 횟수 및 정도에 따라 본부장 주의~징계 조치(2022.10.1일부)

\* 관련공지 : ① On-Line 작업지시서 의무사용 공지사용 안내 (2019.5.3.)

② 오프라인 작업지시서 사용제한 시행(2022.7.25)

③ 오프라인 작업지시서 사용제한 시행(재안내) (2022.10.14)

▶ 전사공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안내

● 납품대금 연동제한?

계약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계약 당사자간 사전에 합의하여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증액/감액)하는 제도 (상생협력법/하도급법, '23.10.4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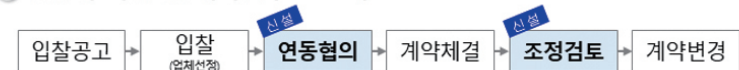
【 연동체결 제외 대상 】

- ① 대기업,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 해외기업인 계약업체
- ② 노무비/경비 등 재료비 외 금액
- ③ 단순 구매품(표준/양산품), 임대품(Buy back 포함)
- ④ 계약기간 90일 이내
- ⑤ 계약금액 1억원 이하
- ⑥ 거래 당사자간 미연동 합의 시



※ 연동체결 제외 대상이 아닌경우 반드시 계약업체와 연동 협의를 해야하며, 기존 ESC 및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납품(하도급)대금 조정」 제도와는 별도 운영

● 연동제 시행 後 계약업무 프로세스



【 연동/미연동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내용 】

| 구분            | 연동계약                                                                                                    | 미연동계약                                                           |
|---------------|---------------------------------------------------------------------------------------------------------|-----------------------------------------------------------------|
| 요건 확인         | 적용대상 + 증빙 검증 + 양사 회망 (3가지 모두 충족 시 연동계약)                                                                 | 예외대상 or 증빙 미확인 or 양사 미회망 (한가지 충족 시 미연동계약)                       |
| 계약 체결 / 대금 조정 | ① 연동조건 합의(대상, 지표, 주기, 산식 등)<br>② 연동계약서, 연동표 작성(계약 첨부)<br>③ 원재료 대금조정 검토 및 협의<br>④ 대금조정 확정(계약변경) 및 변동표 작성 | ① 사유 확인 (주요 원재료 없음, 협력사의 정보 미공개 등)<br>② 미연동계약서 작성(사유기재 후 계약 첨부) |

● 시행일 : '23. 10. 4. 부 신규계약 체결 건부터

※ 첨부 : 납품대금 연동제 입찰 및 계약 업무

2023. 9. 22.  
경영지원본부 구매계약실

### 행동지침

####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 법정 기재사항 중 일부 누락하여 기재하는 경우
- ▶ 제조·수리·건설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
- ▶ 전산으로 발주하였으나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주처 통보 등의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하도급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 다툼으로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미발급하는 경우(서면 미발급에 해당)

####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기본계약서(개별계약서)를 발급하고 이에따라 주문서, 발주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 ▶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
- ▶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FAX, VAN 또는 전산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수출용품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를 개별계약서로 갈음한 경우
- ▶ 서면 발급을 공정위가 제시하는 표준하도급 계약서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② 하도급계약 추정제(하도급법 제3조 제5항, 제6항)

- 원사업자가 위탁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일정한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 **일정한 사항** :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작업내용, 하도급대금,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 통지와 회신은 내용증명우편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 제외)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함

- 인정하는 경우 : 계약의 성립을 서면으로 확인, 향후 분쟁에 대비 가능
- 부인하는 경우 : 계약의 불성립을 확인하고 작업중단, 하도급업체의 손해 예방 가능
- 회신이 없는 경우 : 계약 성립 추정, 추후 분쟁 발생시 소송 등을 통한 구제 가능

### ③ 서류의 보존(하도급법 제3조 제9항)

#### (1) 보존 서류(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 ① 제조 등의 위탁 목적물의 물품수령증명서
- ② 목적물의 검사결과, 검사종료일이 기록된 검사보고서
- ③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등이 기록된 서류
- ④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록된 서류
-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등이 기록된 서류

- ⑥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 감액사유와 기준 등을 기록한 서류
- ⑦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기록한 서류
- ⑧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가 기록된 서류
- ⑨ 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가 기록된 서류
- ⑩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하도급대금 산정 기준에 관한 서류 및 명세서
  - 나.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및 견적서
  - 다. 현장설명서 및 설계설명서(건설위탁의 경우에만 보존한다)
  - 라. 그 밖에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2) 보존기간(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존
- ※ 단, 기술자료 제공 요구 서류는 7년간 보존

행동지침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 하도급대금의 지불이 완료된 시점에서 하도급대금 지불 전의 관계서류(검수관계, 반품관계, 하도급대금의 결정 등)를 파기하는 경우
- ▶ 계약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시킨 후 원본을 파기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 서류의 양이 방대하여 보존이 어려워 마이크로필름, 컴퓨터디스켓 등의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보존하는 경우



## Q&amp;A ①

서류보존기간 및 보존해야하는 서류는?

- 서류보존기간  
- 거래가 종료된 날(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완공일)부터 **3년간 보존**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서류보존의무를 가짐

## Q&amp;A ②

공동도급의 경우 하도급계약방식 및 하도급법상의 책임 유무는?

- 하도급계약 체결방식은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각자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대표사가 공동도급사를 대표하여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 Q&amp;A ③

실제 하도급계약서와는 다른 용도의 하도급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 법 적용 대상 계약은?

- 원칙적으로 계약은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그 합의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면을 작성교부하는 것임
- 따라서, 동일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상이한 계약서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합의내용에 입각한 계약서가 유효한 하도급계약서로 인정되며, 하도급법 적용대상 계약으로 봄

 실제 시공과 관련하여 작성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합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하도급계약으로 보지 않음

## Q&amp;A ④

하도급계약서에 기재해야할 사항은?

- 하도급계약서에는 아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 중 한가지라도 누락되는 경우 하도급법에 위반됨
-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목적물)의 내용
- 목적물 납품, 인도 또는 제공시기 및 장소
- 목적물 검사 방법 및 시기
- 하도급대금(선금금, 기성금, 하도급대금 조정시 조정금액)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원사업자가 원재료 제공시 그 품명, 수량, 제공일
-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요건 및 방법, 절차

## Q&amp;A ⑤

작업지시서 지연발급 기준이 당사의 발급일인지? 협력사의 서명일인지?

- 작업지시서는 양사 중 한 쪽이라도 서명이 없을 경우 미발급으로 간주됨. 따라서, 작업지시서의 실제 발급일은 협력사의 서명일이 기준이 됨.

## Q&amp;A ⑥

회사의 온라인 작업지시서 발급 시스템 관련 작업지시서 삭제 또는 협력사 미서명에 따른 알람메세지 전송 중단 방법은?

-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거래종료일로부터 3년까지 관련문서를 모두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음. 협력사가 아직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고 관련 작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삭제가 가능하겠으나, 가능하면 삭제는 추천하지 않으며, 알람메세지 발송 중단은 전산작업 의뢰를 권장함.

사례 ①

OO건설은 □□건설에게 위탁한 「OOOO OO OOOO개발사업」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OO OOOO OOOO주변 부지조성공사」 중 토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 종료에 따른 공기연장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변경하도급계약 서면은 공사 착공 후에 교부한 사실이 있음

-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OO건설이 수급사업자인 □□건설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하도급계약서 서면을 지연교부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함

사례 ②

OO서비스(주)는 「OO신항 2~3단계 컨테이너 부두건설 중 경량천정을 인입공사」 일부를 OO건축에 건설위탁하면서 위탁서면을 공사착공 전에 교부하지 않았으며, 공사 완료 후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OO건축이 하도급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위탁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원사업자인 OO서비스(주)는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음

- OO서비스(주)는 공사를 구두로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며, OO건축이 위탁내용 및 하도급 대금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그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하였으므로 OO건축이 통지한 내용대로 건설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사례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부당한 특약 설정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화성토건(주)에 시정명령(벌점 2.5점) 부과 (공정위 보도자료 '20.6.12)

- 외부 웬스공사 등을 추가 위탁하며 서면 미발급 및 기성금을 유보하였고 추가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하였으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되어 발생하는 4,382만원의 지연이자를 미지급함.

사례 ④

동아건설산업(주)의 추가공사 및 선투입공사 관련 서면 미교부로 시정명령 (벌점 2.0점) 부과

- 추가공사 관련 서면 미교부 : 기존 설계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통신선, CCTV 배선 등)을 이메일 및 도면 형태로 일부 작업 정보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였을 뿐, 하도급대금 등 계약의 핵심 요소는 사전에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음.
- 선투입공사 관련 서면 미교부 : 본계약 체결 이전에 일부 작업을 선투입공사 형태로 먼저 수행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인수인계서만 작성했을 뿐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서면 발급 이전에 작업 지시.



사내 교육 자료  
(추가공사와 작업지시서 발급)



사내 교육 자료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따른 적용기준 안내)

## 2 선금금 지급 의무

### ① 선금금 지급이란?

- 발주자가 위탁하면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의 착수를 쉽게 하기 위해 원 재료를 구매하거나 노무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이러한 선금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도 이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 ② 선금금의 지급 (하도급법 제6조)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때에는 그 선금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금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금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함
- 원사업자가 선금금을 법정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선금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 기일을 초과시 어음할인료 지급

### ③ 적용기준

- 선금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금금액 산정기준
  -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금금액에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다만, 발주자가 선금금의 사용내역(용도, 지급대상 품목)을 지정하여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역별로 다음과 같이 하도급율을 감안한 선금금을 산정 지급
    -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용도와 각 항목별 비율을 지정받아 선금금을 지급 받은 경우 : 그 용도와 항목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예) 토목건축공사에 토공사, 철콘공사, 조경공사가 있을 경우, 발주자가 선금금을 지급하면서 토공사부분에 30%, 철콘공사부분에 20%를 선금금으로 지정하여 지급하였다면, 원사업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각각 하도급계약 금액의 30%, 20%를 선금금으로 지급하면 됨

↳ 용도를 지정받지 않고 전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선금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 관련된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그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

예) 발주자가 용도 지정 없이 계약금액의 10%를 선금금으로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관련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각각 하도급계약금액의 10%를 선금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수급사업자가 선금금 지급보증서를 지연 제출하여 원사업자가 선금금의 법정 지급일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선금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는데 소요된 기간(통보일로부터 제출일까지)은 지연이자 계산시 공제할 수 있음

### ④ 선금금 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지급기준

- 공정위 고시 : 지연이율 연 15.5% (2015. 7. 1~)  
어음할인율 연 7.5% (2012. 8. 21~)

#### 행동지침

#####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수령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미지급한 경우
- ▶ 선금금을 수령하였으나 수령한 비율보다 적은 비율로 지급한 경우
- ▶ 선금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 기일을 초과하였으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경우
-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 또는 어음으로 선금금을 지급하였으나 법정지급 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또는 어음할인료 미지급

###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 선금금을 공종별, 품목별로 용도를 지정하여 지급받았는데 하도급 내용은 공종이나 품목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
- ▶ 선금금 지급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증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이것만은!

☞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선금금을 어음으로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OO과장입니다.… 금번에 OO현장 건 관련해서 선금금을 드려야 하는데, 요새 저희 자금사정이 좀 안좋아서 절반은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허허, 이해해 주실 거죠?”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금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선금금 지급」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 Q&A ①

선금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부도가 발생한 경우는 선금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어음은 만기일에 결제되는 것을 전제로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선금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다면 선금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함

### Q&A ②

원사업자가 선금금을 지급하고 다음 기성금에서 일괄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원사업자가 기성금(비율 20%)을 지급한 후 선금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금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 선금금은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기성비율에 맞추어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성율보다 높게 선금금을 조기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
- 포선금금을 받기 전에 기성이 나갔다면 기성비율 만큼을 제외한 선금금을 지급하면 됨

### 사례 ①

OOOO(주)은 발주자로부터 선금금 550,000천원을 지급받고, □□□건설(주)에게 「창원 XXXX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를 건설위탁 하였으나, 지급기한인 건설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주)에게 발주처로부터 받은 선금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산정된 선금금 45,999천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원사업자는 □□□건설(주)에게 건설위탁하기 전에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건설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주)에게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금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산정된 선금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은 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됨

### 3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의무

#### ①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하도급법 제9조)

- 수급사업자가 납품·인도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객관적이며 공정·타당하여야 함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 다만, 용역 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인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② 적용기준

- 검사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객관적인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로 제3의 공인기관 등에서 검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
-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라 함은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임
- 검사결과와 통지기간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 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에는 인정되지 않음
  - ② 거대한 건설공사(댐·교량공사, 대단위 플랜트 공사 등), 시스템 통합 용역 등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함

- 검사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후 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음

#### ③ 대량 납품하는 거래의 경우

- 제조업에서 대량 납품의 경우 샘플검사 또는 무검사 인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 인데, 납품완료 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위험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단, 계약서에 반품에 관한 사항(반품사유, 시기, 보상문제 등)이 명백히 밝혀져 있고 반품사유가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확정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됨

#### 행동지침

#####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 원사업자가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검사할 경우
- ▶ 검사기준 및 방법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했으나 그것이 객관적이지 않거나 공정·타당하지 않은 경우
- ▶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목적물 인수를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
- ▶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 검사기준, 방법 및 시기를 정한 이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검사에 적용하는 경우
- ▶ 검사기준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하지 않고,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
- ▶ 통상 적용되는 검사기준보다 매우 엄격하게 정해서 통상적으로는 합격판정이 될 수 있음에도 이를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
- ▶ 원사업자가 불량품의 발생을 예상하여 대금의 지급을 과다하게 유보하는 경우

- ▶ 수급사업자가 기성청구 또는 공사를 준공하고 준공통지를 원사업자에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한 날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 원사업자가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면서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지한 경우

####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 제조공정에서 나타난 불량률 수급사업자가 인정하여 적법하게 대금을 공제하기로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 정당한 사유가 있어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 제조업에서 대량 납품에 따른 샘플검사 또는 무검사 인수시 계약서에 반품 관련사항을 명백히 밝히고 반품사유가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납품 후에도 반품 가능

#### 이것만은!

 **납품·인도받은 목적물에 대한 검사 결과를 구두로 통보해서는 안 됩니다.**

“00장장입니다. … 금번 00물품은 어제 잘 받았구요. 샘플 테스트 결과, 별 하자 없는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서면으로 테스트 결과 꼭 보내달라구요? 한 두번 거래하는 것도 아니면서, 귀찮게 뭘 그렇게 일일이…”

**L** 하도급법 제9조 제2항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에 따라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미통지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사례 1

OO종합건설(주)는 (주)△△△건영에게 강원도 원주시 정산지구의 ‘농업용 저수지제당의 그라우팅공사’를 위탁 후, (주)△△△건영으로부터 同공사를 완료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하도급계약상의 기성금(하도급대금) 지급조건인 ‘감독관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한국농어촌공사) 원주시사에 준공검사를 요청하자, 원주시사는 준공검사를 요청 받은 당일 同저수지제당의 누수를 측정한 결과 측정시점에서의 누수량은 허용 누수량 범위 내로 치수되었음을 인정하나, 제당의 수위가공사 착공 전 수위에 미치지 못하므로 추후 수위 상승에 따른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붙인 검토의견을 피심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음. 이에 피심인은 발주자의 검토의견은 기성금 지급조건인 준공인가가 아님을 이유로 기성금 8천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었음

- 하도급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사업자가 납품 또는 인도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한 기성금 지급조건인 ‘감독관 승인’은 그 승인을 위한 검사시점, 검사시 제당의 수위, 허용 누수량 및 그 측정방법 등을 협의하여 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급조건은 하도급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 및 방법으로 볼 수 없음
- 피심인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인으로 부터 준공통지를 받은 날(2004년 12월 14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 공사는 2004년 12월 24일을 준공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고 피심인이 목적물 인수 후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일부 하도급대금 8천만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2005년 2월 22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당시 이자율 연 25%)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함

## 4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 ①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 등 (하도급법 제13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 기일로 간주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면 안 됨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만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면 안 됨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의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의한 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으로 지급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함

### ② 적용기준

#### (1) 하도급대금 지급시기

-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과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 중 먼저 도래한 기간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임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동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봄
- 하도급대금 지급시기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유예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시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의 수령일 기준
  - 제조·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날이며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날
  -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
  -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급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

**(2) 현금 결제비율 유지 적용기준**

## • 현금비율의 산정방법

-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 현금수령액/도급대금수령액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비율 : 현금지급액/하도급대금지급액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할 경우에는 당해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3) 어음만기일 유지 적용기준**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 까지)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안 됨  
 ◀ 타인 발행의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지급기간은 원사업자의 어음을 교부하는 날로부터 만기일까지로 간주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4)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계산방법**

- 어음할인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급법 제13조 제9항)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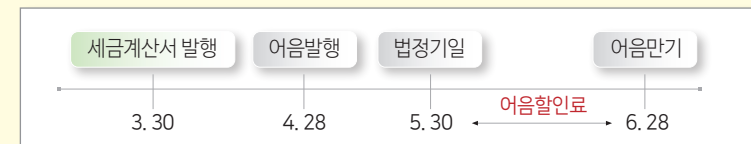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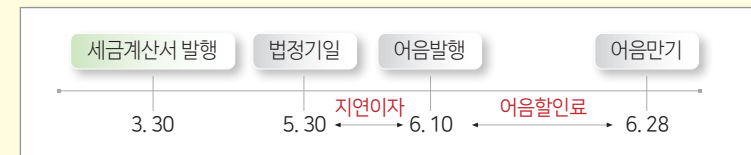
- 고시 어음할인율 : 연 7.5% (2015. 10. 23~)

$$\text{어음할인료} = \text{어음지급액} \times \text{할인율} \times \text{지연일수} / 365$$

- 지연이자는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 고시 지연이율 : 연 15.5% (2015. 7. 1~)

$$\text{지연이자} = \text{지연지급 하도급대금} \times \text{지연이율} \times \text{지연일수} / 365$$

**① 법정기일 내 어음발행 시 : 어음할인료 지급의무 발생****② 법정기일 후 어음발행 시 :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지급의무 발생****행동지침****■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까지 하도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는 경우
-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할인료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는 경우
-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 어음할인료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는 경우
- ▶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처음부터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결제기간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 ▶ 원사업자가 월 12회 납품받고도 마감제도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그 달 말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잡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대법원 판례」(94누10320 등)

-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대금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지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음
- 즉 원사업자가 정산할 것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일단 하도급대금은 공사가 완료되어 목적물이 인수되면 지급하도록 하고, 그 밖의 채권채무관계는 별도의 해결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수급 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판결임

#### 이것만은!

**하도급대금 어음 지급시, 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경과시 이자가 발생합니다.**

“OO과장입니다. 금번 수령한 OO물품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예? 물품 받고나서 60일이 경과했으니까,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대구요? 허허, 거래 한 두번 하실 것도 아니고, 이거 왜 이러십니까?”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60일 초과시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법 제13조에 위반됩니다.

#### Q&A ①

##### 준공정산 협의 완료시 유의사항

당사가 주장하는 준공금은 대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나 적자보존 형식의 대금지급은 대기중이며, 현재까지 합의금액 등에 대한 공탁 등의 필요성 여부는?

- 계약내역에 따라 정산금에 대하여 공사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였다면 합의금액에 대한 공탁은 필요 없음. 지급금액이 적자보존형식의 대금이라면 기한과 관계없으므로 하도급법과 관련이 없음.

**사례 1**

OO건설(주)은 XX건설에게 「용인OO지구 B단지 OOOO신축공사 중 토공사」 등 4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2,250,248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OO건설(주)은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목적물의 인수일 후 60일로부터 2~112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7,635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목적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사례 2**

OO건설(주)은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만기일이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의 인수일 후 60일이 초과하는 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5,138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례 3**

OOOO건설(주)은 OO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OO-OO 도로건설 공사 중 구조물공사」 등 2개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OOO건설(주)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OOO건설(주)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 2,204,000천원을 전액 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어음으로 지급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됨
- 시정명령 :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할인료 33,260,000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함

**사례 4**

대보건설(주)은 19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 2억 5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을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함(공정위 보도자료 '20.2.7)

- 공정위는 벌점 4점 및 과징금 9,300만원 부과

**사례 5**

현대중공업은 하자보증기간(2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납품업체에게 대체품을 요구하여 납품을 받았음에도 하자를 사유로 물품 대금 2.6억원 및 지연이자 2억원을 지급하지 않음(공정위 보도자료 '20.8.26)

- 공정위는 지급명령 및 벌점 2점 부과

## 5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 지급보증 의무

### ①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 지급보증 (하도급법 제13조의2)

-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함

※ 지급까지 포스코이앤씨은행은 신용등급이 우수하여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이었으나 하도급법 개정으로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면제대상 폐지 2023년)

-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함. 다만,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건설공사에 관하여 장기 계속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장기계속 건설하도급계약을 통하여 건설위탁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최초의 장기계속건설 하도급 계약 체결일 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최초 장기계속 건설하도급계약시 약정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함
-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은 원사업자는 장기계속건설계약의 연차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이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완료한 연차별 장기계속건설 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함.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봄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은 현금 (채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다음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함

-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 ②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 ③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 ④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

- 보증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보증약관상 필요한 청구서류를 갖추어 보증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기관은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증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 ① 원사업자가 금융거래 정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② 원사업자의 부도·파산·폐업 또는 회사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③ 원사업자의 해당 사업에 관한 면허·등록 등이 취소·말소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⑤ 그 밖에 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원사업자는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공사기간 중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1회계연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의할 수 있음
- 원사업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않을 수 있음
-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음

## ② 적용기준

- 종전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승계한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계 당시의 잔여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함
-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조정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함. 단, 추가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예외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로 면제되지 않음
- 하도급대금 보증금액 범위

-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 - 선급금
-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고, 기성금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text{계약금액} - \text{선급금}) / \text{공사기간(월수)}] \times 4$$
-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고, 기성금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text{계약금액} - \text{선급금}) / \text{공사기간(월수)}] \times \text{기성금 지급주기(월수)} \times 2$$

### (1) 지급보증 의무 면제사유

- 1건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
-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하도급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행동지침

###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 원사업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으나,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 ▶ 원사업자가 자신은 보증서를 교부하고 수급사업자로부터는 계약이행보증으로 현금을 예치토록 하거나 기성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 의무를 면제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 ▶ 1건 공사금액 1천만원 이하의 보증 의무 면제를 악용하여 하도급공사를 세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하도급법상 탈법행위)
- ▶ 원사업자 자체발주공사에서 당사자들 간 합의로 지급보증을 면제하는 경우
-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대해 조건부로 합의한 상태(예 원사업자 부도시)에서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 ▶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는 그 증가분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 1건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 ▶ 하도급대금을 지급보증한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의 하도급대금에 대해 별도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 Q&amp;A ①

계약기간 1달 이하의 하도급계약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급 필요 여부?

-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급 면제가 가능한 경우는 계약금액이 1천만 이하인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이 원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만 가능함.

## 사례 ①

(주)신성엔지니어링은 수급사업자인 원광이앤지(주)에게 삼성SDI 전지동 증설 공사 중 전기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음

- 원사업자가 원광이앤지(주)에게 건설위탁한 이 사건 공사는 공사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고 있고,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음. 또한, 자신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위반

## 사례 ②

(주)대우건설의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 (주)대우건설은 자체발주공사에 있어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음

- (주)대우건설은 2018.7월부터 2020.12월까지의 기간에 30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3건의 하자보수 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주)대우건설은 위반 건들은 모두 하자보수 관련 자신이 발주한 것으로 행위 당시에는 이들 계약이 하도급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인식하여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는 자체발주의 경우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므로 하도급법상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도 발생한다고 판단함
-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위반에 해당함

## 이것만은!

상호 합의하였더라도 반드시 지급보증해야.

“OO과장입니다.… 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건 말인데요. 그거 하려면 신용기관에서 이것저것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우리 회사 규모쯤 되는 회사가 설마 대금지급 안하겠어요. 지급보증서 굳이 안드려도 되죠?”

↳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것은 하도급법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 6 설계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①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하도급법 제16조)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 시기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받는 경우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 비용이 들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음
-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 원사업자가 제1항의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 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 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 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봄

### ② 적용기준

#### (1) 적용요건

- 제조·건설위탁한 후의 사정으로 설계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 시기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했어야 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 시기 변동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받아야 함

- 수급사업자도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이어야 함

#### (2) 조정기준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 지급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이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기 이전에 체결된 경우라도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원사업자가 조정기준시점 이후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조정해 준 경우 적법함
-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물가변동과 관련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추가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 주는데 있어서 물가변동 조정기준 시점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물가변동 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음

#### (3) 조정기일

- 발주자로부터 조정(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조정해 주어야 함

#### (4) 조정금액 지급시기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연 15.5%)를, 추가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함

### 행동지침

####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 하도급대금 결정에 있어 그 당사의 물가수준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금액 또는 물가연동금액을 수령받고도 이를 미지급하는 행위 또는 받은 비율 또는 내용보다 적게 지급한 행위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금액 또는 물가연동금액을 조정받고도 15일을 초과한 날까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금액 또는 물가연동금액을 조정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조정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지연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금액 또는 물가연동금액을 수령하고서도 15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어음할인으로,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행위

####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은 시점 이전의 하도급계약 공사에 대하여 조정 기준시점 이후의 하도급 공기, 납기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 준 경우
- ▶ 하도급계약 시점이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 이후일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 주지 않은 경우
-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계약하면서 당해연도의 물가상승분이 포함되어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시점 이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다고 무조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님

### 이것만은!

설계변경 등 조정사유 발생시, 하도급대금을 꼭 조정해야 합니다.

“00그룹 00과장입니다. 이번에 발주자로부터 스펙이 약간 변경되서 추가 금액을 약간 더 받았습지만, 액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번거롭게 하도급대금을 또 조정해야 될까 싶습니다.”

설계변경 등으로 발주자로부터 추가 금액을 지급받았을 때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이행치 않을 경우 하도급법 제16조에 위반됩니다.

### Q&A ①

물가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ESC를 적용해 주지 않아도 되는지?

- 하도급계약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체결되고 원사업자가 ESC를 적용받았다면, ESC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의 공사분에 대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정기준일 이후의 잔여공사분에 대해서는 ESC를 수급사업자에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하도급대금 결정에 있어 당시의 물가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사실과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원사업자가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수급사업자에 대한 조정률은 원사업자가 적용받은 ESC조정률을 기준으로 원도급 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공제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입증여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Q&A ②**

금차 도급 변경 시 발주처로부터 ESC를 받았으나 기타 마이너스 금액이 반영되어 전체 공사비의 증감이 없을 경우, 하도급사 ESC 산출 및 지급 여부

- ESC의 증액 부분과 간접비의 감액부분을 별개로 보고,  
1.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도급 계약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통지,  
30일 이내 계약변경을 진행해야 하며,  
2.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와 협의를 전제로 합의가 된 경우, 감액 서면을 발급 후 계약변경을 해야함.

**Q&A ③**

당초 설계 내역에 없는 계약 외 추가 공사의 정산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만큼 증액받지 못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것의 위법 여부

- 발주자의 증액이 없었으므로 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위반은 아니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최초 계약시 합의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Q&A ④**

당사 사유(현장 공사 계획 변경에 따른 도면 확정 지연)로 입찰 시 수급사업자 측에 정확한 정보(도면)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발생한 추가 비용을 설계변경을 해줘야 하는지?

- 당사 사유로 발생한 계약 조건 외 추가 비용일 경우 하도급 설계변경을 해줘야함. 위탁 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계약 조건은 부당특약이 될 수 있으며, 부당특약일 경우 즉시 시정해야함.

**Q&A ⑤**

■ 도급계약 변경 현황

주요 하도급 업체가 선정 된 이후 발주처 설계 변경 발생한 경우  
→ 변경된 도면/물량에 대한 도급 증액 협의  
→ 설계변경에 의하여 증가된 수량은 기존 계약 단가가 있더라도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신규단가를 제시하여 승인 받음  
(도급계약 상세내역 有 / 기존 계약 수량은 기존 단가 유지)

■ 하도급 정산을 위한 질의사항

① 당사 도급 변경과 동일하게, 기계약 물량은 기존단가를 적용하고 증가된 물량에 한하여 물가상승이 반영된 신규단가를 적용 가능 여부  
(당사의 도급 계약 변경 시, 기존 계약수량에 대한 단가 인상은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증가 수량에 대해서만 인정받았습니다.)

- 발주자와 당사간에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만 신규단가로 설계변경 하였기 때문에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함.(협의를 따른 신규단가 적용)

② 하도급 신규단가를 적용할 때, 당사가 인정받은 도급변경 단가의 100%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 가능 여부  
- 100% 내 협의가 가능하다면, 최소한의 기준이 있는지?  
- 100% 내 협의가 가능하고, 당사와 협력사가 협의율에 이견이 있는 경우 결정 방식의 기준이 있는지?

- 받은 내용(내역)을 기준으로 당사가 발주처에 적용받은 비율에 따라 단가를 적용하여야 함(도급단가 100%이내의 기준은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차액(도급-하도급)이 너무 크거나 시장가격과의 차이가 큰 경우 등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할 수 있음. 이 때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함

02. 원사업자 의무사항

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며,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약하지 말아야 함.

③ 하도급 신규단가를 적용할 때, 협의율을 산정하여 전체 내역에 일괄 적용 가능 여부 (혹은 당사가 도급변경 받은 것과 같이 내역의 각 항목별로 별도 검증 후 단가 결정을 해야하는지)  
- 만약 협의율로 전체 적용이 가능하다면, 당사-협력사 간 협의한 회의록을 근거로 적용 가능 여부

- 전체 하도급율을 기준으로 일괄 적용 가능하나 수급사업자의 협의에 따라야 하며, 해당 항목의 하도급율을 적용한 금액이 불리한 경우에는 당사에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발주처 설계변경시 계약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하도급 통지 및 30일 이내 계약변경 하여야 함.

6.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사례 ①

OOOO건설(주)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대금을 증액 조정을 받고도 그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건설(주) 등 9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79~109일을 지연하여 조정한 사실이 있음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부분 설계변경 등에 의한 공사금액을 추가로 받고도 그 조정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로 인정됨

사례 ②

벽산건설은 수급사업자인 대남토건주식회사에게 '진동 - 마산 국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받고,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연조정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내역       |             |           |    | 하도급대금 지연조정 내역 |           |     |           |
|-----------------------|-------------|-----------|----|---------------|-----------|-----|-----------|
| 1차 물가변동               | 2008.12.1.  | 2,105,124 | 조정 | 2008.12.31.   | 2009.11.5 | 308 | 730,858   |
| 2,3차 물가변동             | 2009.12.11. | 5,860,379 | 조정 | 2010.1.10.    | 2011.7.13 | 548 | 1,118,796 |
| 부산리임도 신설에 따른 설계변경     | 2008.12.1   | 70,480    | 조정 | 2008.12.31    | 2009.11.5 | 308 | 39,743    |
| 진동우회도로 신설에 따른 설계변경    | 2010.12.16  | 54,305    | 조정 | 2011.1.15     | 2011.7.13 | 178 | 31,665    |
| 순성토 운반 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 2010.12.16  | -397,466  | 조정 | 2011.1.15     | 2011.7.13 | 178 | -312,985  |

- 벽산건설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았음에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178~548일을 지나 대남토건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 조정하였으므로 이는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

### 사례 3

태림은 202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과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일부를 2021.12.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2022.2.~6. 기간 중 레미콘 운송업자 파업 등으로 레미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자 수급사업자 A사는 공사 장비의 임대기간을 부득이 연장하게 됨. 이후 발주자인 부산진구청은 2023.7. A사의 장비 임대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보전 명목으로 6.6천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급변경 계약을 태림과 체결함. 그러나 태림은 2023.8. A사에 추가 비용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6.6천만 원의 계약금액 증액을 받았다는 내용을 통지만 하고, 그 금액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음

- 태림은 A사의 시공 하자로 손해를 입어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하자에 대한 분쟁은 대금 증액 의무를 이행한 뒤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납품시기의 변동,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도급대금)을 증액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 역시 30일 이내에 증액하도록 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에 해당됨

## 7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

### ①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하도급법 제16조의2)

- 수급사업자는 제2항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사항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물량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
-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음.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적용 안 됨
-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함. 다만, 조합이 해당 기간 내에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 조합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기 전이나 신청한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중앙회에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중앙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함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조합, 중앙회의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안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됨
-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 ❑ 협의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조정신청이 가능한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에 한정됨(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조정신청권이 없음)

## ② 적용기준

- 수급사업자는 위탁을 받은 후(비하도급거래는 제외)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가능
  -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받지 않았더라도 조정신청 가능
    -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추가금액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조정의무가 발생함
  - 공사 저가수주에 따른 단순 적자보전 사항은 조정신청 대상이 아님
    - ↳ 따라서 공급원가 변동에 아닌 다른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음
- ⇒ 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법정서류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행동지침

####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 수급사업자의 협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 수급사업자가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 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않은 경우
- ▶ 단가 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수급사업자가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경우
- ▶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재고수량, 잔여 납품수량 등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시점을 지연하여 제시하는 경우

#### ■ 원사업자가 성실히 조정 협의에 임하였다면, 수급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거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님

#### ■ 분쟁조정협의회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 ▶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 ▶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 ▶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 합의지연 시 영업활동이 심각히 곤란하게 되는 등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 Q&A ①

#### 협력사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에 대한 대응은?

- 하도급법상 협력사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협의에 성실히 임해야 함. 협력사의 요구사항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성의 없이 협의 거절을 하면 안됨. 대면협의 후 회의록 등의 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 Q&A ②

#### 대기업(상호출자제한집단) 협력사가 하도급법에 따른 대금조정 신청 시 응해야 하는지?

- 대기업은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계약 조건에 따른 업무 처리 필요.

### 사례 ①

□□건설(주)은 수급사업자인 ○○건설에게 ‘연제 3차 대주피오레 현장내 신축공사 중 토공사’ 등 5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원사업자는 ○○건설에게 건설위탁한 이 사건 공사는 공사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고 있고,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음. 또한, 자신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행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에 해당함

## 03 | 원사업자 금지사항

1. 부당한 특약의 금지

| 의무사항                                 | 내용                                                                                                                                                                                                                                   | 법조문            | 본문<br>보기 |
|--------------------------------------|--------------------------------------------------------------------------------------------------------------------------------------------------------------------------------------------------------------------------------------|----------------|----------|
| 부당한 특약의 금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                                                                                                                                                                                   | 제3조의4          | 87p      |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 하여서는 아니 됨                                                                                                                    | 제4조            | 93p      |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                                                                                                   | 제5조            | 106p     |
|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거나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됨                                                                                                                                          | 제8조            | 108p     |
| 부당반품금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등을 반품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제10조           | 113p     |
| 하도급대금 감액금지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음                                                                                                                                                | 제11조           | 115p     |
| 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및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일 전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 하게 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제12조<br>제12조의2 | 122p     |
|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됨.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음                                                                                                                                                 | 제12조의3         | 125p     |

| 의무사항           | 내용                                                                                                                                   | 법조문          | 본문<br>보기 |
|----------------|--------------------------------------------------------------------------------------------------------------------------------------|--------------|----------|
|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 제17조         | 147p     |
|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됨                                                                                 | 제18조         | 149p     |
|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금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거래 위반 행위 등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제19조<br>제20조 | 153p     |

### 1 부당한 특약의 금지

#### ① 부당한 특약의 금지(하도급법 제3조의4)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

#### ② 적용기준

- 원사업자의 부당 특약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조의4 제2항)
  - 원사업자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약정(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4)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
-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 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그 밖에 위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①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예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②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예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③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 예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높이거나,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④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 예 목적물 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⑤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 예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 부당 특약 예시 (부당특약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85호)

1.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지급한 자재의 하차비, 추가 장비 사용료, 야적장 임대료 등의 모든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서면에는 기재되지 않고 현장설명서에만 기재된 경우
2.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추가공사 또는 계약사항 이외 시공 부분에 대한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함
3. 하도급공사를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4.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원사업자에게 일체 이익을 제기하지 못함
5.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발생한 진료비, 노무비, 산업재해자 및 유가족과의 합의, 산업재해 처리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함
6.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금액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민·형사상의 요구 및 부대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약정
7.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공사 중에 발생한 산업재해사고 발생 및 처리를 이유로 원사업자에게 추가금액이나 공사기간연장을 요구할 수 없음
8. 현장설명서 등에 명기된 사항이 산출내역서에 없더라도 공사 수행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시공함
9.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 공사 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10.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배부한(구체적인 항목·수량·단위 등을 제시하지 않은)물량내역서에 견적금액 또는 견적단가에는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함
11. 주요 자재항목으로 구분되지 않은 소형 강재 등의 자재비는 시공비에 반영되어 있음
12. 수급사업자는 입찰 전 현장 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내역서를 작성하므로 원사업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음

03. 원사업자 금지사항

1. 부당한 특약의 금지

13. 관청으로부터의 건축허가를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받아야 함
14. 수급사업자가 환경관련 법령(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위반시 기성금 공제 등의 불이익에 대하여 원사업자에게 일체 이익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약정
15.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의 지시나 요구에 의한 작업내용의 변경으로 계약사항 외에 시공 한 부분에 대한 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
16. 원사업자의 지시로 사토장까지의 거리가 증가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청구하지 못함
17. 원사업자의 지시로 수급사업자가 재작업을 수행한 비용은 일체 인정하지 않음
18.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돌관공사·휴일공사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19.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보증증권 상의 보증기간은 하도급계약으로 정한 하자담보책임 기간보다 몇 년(예, 1년)을 더 길게 산정하여야 함
20.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하자라고 확정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21. 원사업자가 제공한 재료로 수급사업자가 가공했을 경우 해당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짐
22. 원사업자가 지급한 자재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변상해야 함  
↳ 멸실 또는 훼손이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일 경우라는 조건이 있어야 함
23.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발주서, 작업지시서 등 서면을 전달받은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24.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상승, 납품조건 및 도면내용에 대한 견적 누락 등을 이유로 계약 변경 및 해제를 요구할 수 없음
25. 공급받은 자재 등의 수량이 부족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추가 공급을 요청하더라도 운반·보관비용, 지체상금 등은 별도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26.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기간 등은 발주처와 원사업자 간 계약조건과 동일조건으로 함  
↳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여야 함
27.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계약조건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원사업자의 계약조건을 그대로 적용함
28. 하도급계약기간 중에 수해·눈피해 등이 발생하더라도 공사기간연장은 없음

29. 제3자의 전국적인 노조파업에 따른 공사기간연장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30. 수급사업자가 건물 부지를 파는 도중 문화재가 발굴되더라도 작업의 중지, 공사기간연장 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31.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사업자의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정함  
↳ 단, 원사업자의 특정 규정 및 지침이 계약 체결 시 또는 계약 이전에 교부된 경우는 제외
32. 수급사업자가 현장을 관리하는 경우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위해요소의 제거에 관한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Q&A ①

선급금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하도급계약 해제 등 제재규정 추가시 문제점은?

- 하도급계약에 선급금 사용 계획 및 사용 내역 제출 의무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더라도 이를 하도급계약의 해제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하도급 부당위탁 취소, 부당 특약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함.

사례 ①

대한조선(주)의 서면미발급, 부당특약 설정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96백만원 부과

- 서면미발급 : 선박 제조 관련 수정 및 추가 공사 위탁 시 법정 서면을 작업종료일까지 미발급
- 부당특약 설정 행위  
▷ ~공사 수행중 상해 또는 피해 발생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협력사가 부담  
▷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 책임을 지며, 피해액 기성 공제 시 이의제기 불가

**사례 ②** (주)비엔에이치의 서면미발급, 부당특약 설정, 대금 조정의무 위반,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73백만원 부과

- 서면미발급 : 공장 공사 건설위탁 시 착공 전까지 법정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발급
- 부당특약 설정 행위
  - ▷ ~돌관 공사 요청 시 즉시 응하고 철저히 원가 관리하여야 하며, 증액정산 요구 불가
  - ▷ ~계약금액에 직접/간접비, 공과잡비,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급 없음
  - ▷ ~손해 발생/염려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가 별도의 초고 없이 계약 해제/해지 가능
-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행위 : 원사업자가 부담인 산업가스 대금 및 장비 임차료를 수급사업자가 대납하도록 함
- 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
  - ▷ 도급 증액 받은 사유, 내용을 증액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미통지
  - ▷ 공사 원가, 내용 변경 등 이유로 도급 증액 받았으나 수급사업자 계약변경 미 실시

**사례 ③** 유강종합건설의 부당특약 설정, 대금 미지급으로 시정명령

- 부당특약 설정 : 「기성금은 청구금액의 85%만 지급하면서 유보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준공 이후 2개월 이내로 유예하는 약정」 설정
- 하도급대금 미지급 : 위 부당특약에 따라 유보된 하도급대금 7,144만원을 미지급 함.

## 2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①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하도급법 제4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할 수 없음

■ 하도급 3배 배상제에 해당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경우 원사업자는 공정위 처분에 더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3배 내에서 배상 책임 (▶ 법 제35조 제2항)  
↳ 배상액은 고의 여부, 수급사업자 피해 규모, 원사업자가 취한 이득,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예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②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④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⑤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⑥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하 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①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이란 원사업자의 도급 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로 한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 자와 수급사 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전력비, 수도 광열비 등)과 원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정경비(산재보험료, 공용 보험료 등)는 제외

- ⑦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 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⑧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 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③ 적용기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 및 가격의 부당성을 동시에 갖춰야 함. 두 요건은 상호보완적으로 부당성이 큰 경우에는 가격기준을 낮추어서, 부당성이 적은 경우에는 가격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게 됨
- 행위의 부당성 :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결정
  - 원사업자의 강요에 의한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결정
  - 원사업자가 기망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가격결정에 관한 판단을 방해하는 경우 등
- 가격의 부당성 :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 **‘통상 지급되는 대가’**란 당해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거 래지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격

■ **‘낮은 가격’**이란 시장 평균가격과의 괴리정도, 원재료 등의 가격동향, 당 해 하도급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취하게 되는 이익의 정도, 단가 결정 방법의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행동지침

####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 자재(원부자재 포함)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견적토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 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료,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하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실행예산 범위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정하지 않고 건설 등을 위탁한 후 견적가격을 크게 하회하는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 경쟁입찰 또는 부대입찰의 경우 당초 낙찰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 금액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
- ▶ 수의계약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원사업자의 도급 내역서상 직접공사비 수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Q&amp;A ①

정부 발주 공사 시 저가 하도급 심사의 대상이 되면 하도급법상 문제가 되는가?

- 하도급법의 규정은 수의계약 시에는 직접공사비 이하, 경쟁입찰 시에는 최저가 투찰금액에 대한 추가 인하협상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도급에 대비하여 하도급대금의 비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즉,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하도급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다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에서 '통상적 지급되는 대가' 이하인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주의하여야 함

## Q&amp;A ②

원가절감 요인이 발생하여 이를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당초보다 낮게 계약한 경우에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되는가?

- 합리적인 원가절감요인을 제시하여야 하며, 일률적으로 할당된 원가절감 목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보여질 수 있음. 통상 장기적인 제조 납품의 경우 거래 초년도보다 이후에 원가절감 사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Q&amp;A ③

경쟁입찰 시 하도급대금 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 최저가 금액이 실행예산보다 초과함을 이유로 네고를 통해 최저가 금액보다 낮게 체결하면 법 위반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찰 후 재입찰을 실시함이 타당함

## Q&amp;A ④

물량을 5배 이상 많이 공급하는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를 기준으로 추가 공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도 무관한지 여부?

- 하도급단가는 그 물량의 대·소에 따라 단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물량이 5배 되는 타사업자의 단가기준으로 계약변경 강요시 위반소지

## Q&amp;A ⑤

자재발주를 위한 사양설명 시 100톤이 필요하나, 공정에 따라 감소나 증가될 수 있다고 설명한 후, 실제 80톤만 필요하여 입고 후 대금 지급할 경우, 업체에서는 100톤을 생산하였으니 사주어야 한다고 했을 때 공정거래법상 어떤문제가 있는지?

- ① 원칙적으로 수량과 단가를 사전에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 ② 하도급거래일 경우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어 법 적용가능. 즉, 자재의 생산시기, 납품주기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공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탄력적으로 납품이 가능하면, 증감의 폭에 따라 단가는 달리 적용하는 슬라이딩 단가결정 시스템. 즉, 납품량에 따라 단가를 달리 결정하는 것이 분쟁가능성을 최소화 가능(예 100~120톤은 단가 1,000원, 99~80톤은 1,100원)
- ③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이 아닌 단순구매인 경우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의한 불이익제공행위 적용도 적용 검토 가능

## Q&amp;A ⑥

하도급 입찰견적 조건 및 현장설명 시 사전에 도면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계약 견적을 위한 내역을 전혀 확정하지 않고 이를 감안하여 입찰에 응하고 그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여부?

- ① 원사업자는 위탁내용의 핵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시 최소한의 내역서나 도면 등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하도급사업자는 이를 근거로 견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상관행임
- ② 따라서 현장설명 시 불확정한 상황을 미리 설정하고 그 비용을 현장설명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케 하면, 이는 수량과 금액을 사전에 전혀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하도급위탁으로 부당소지
- ③ 다만, 핵심, 중요한 사항이 아닌 도면이나 내역서상에 반영하기 어려운 미미한 위탁사항을 현장설명 시 견적서에 이를 반영하도록 충분히 설명하였고, 수급사업자도 이를 인식하고 입찰에 임하였거나, 도면이나 내역서상 문제는 없으나 수급사업자가 단가산출 착오라면 이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임

**Q&A 7**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낮게 도급공사를 수주하여 불가피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야 하는데 가능한가?

- 당초 예상보다 저가의 수주를 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감액에 해당됨. 원가절감, 협찬금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에서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에 해당

**Q&A 8**

물량이 증가하였는데 당초 하도급계약에서 대금 변동은 없는 것으로 특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 하도급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당초 계약변동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단가를 적용하여 대금을 증액시켜주는 것이 타당함

**Q&A 9**

당초 입찰시 교부하였던 사양 조건이 변경되어 하도급계약 금액을 감액하여야 하는데, 이럴 경우 변경계약 체결로 가능한 것이 아닌지?

- 계약의 주요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작업 변경 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임. 또한 하도급계약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 대비 감액이 될때는 사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도 발급해 주어야 함

**Q&A 10**

계약 중 설계변경으로 감액되는 경우와 당초 물량 정산을 하기로 하고 정산시 감액하는 경우의 각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 도급계약이 먼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6조에 의거하여 15일 이내 변경 내역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 도급 계약 변경 없이 물량 감소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감액시 서면발급 의무가 발생하여 정산협의 전 감액되는 물량과 감액방법,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

**Q&A 11**

촉로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는 계약서상 물량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실제 촉로물량과는 차이가 있음), 당사가 하도급계약을 근거로 수급사업자에게는 실제 촉로한 물량으로 하도급대금을 정산하였을 경우 부당감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 ①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에 따라 추가금액을 받은 경우라면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의거 하도급사업자에게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함

- ② 그러나, 물량증가, 단가증액 등 추가금액을 발주자로부터 받은 성격이 아닌 하도급 계약 자체를 당초 사후정산 물량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계약내용에 따라 정산하는 것 자체는 위 하도급법 제16조와 무관할 것이며,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사항도 아님

**Q&A 12**

환율, 소재 등 가격변경을 즉시 반영하지 못하고 이후 정산하여 단가 소급하는 것이 부당감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 원칙적으로 금지됨. 단, 법 위반여부는 단가감액과 증액이 동등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객관적 기준 여부,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검토 가능함

**Q&A 13**

발주 후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하도급대금에서 하락분을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는지?

- 수급사업자의 다른 귀책 사유 없이 원자재가격 하락을 이유로 감액하는 것은 부당감액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Q&A 14**

환차손을 이유로 대금 결제수단(원화 및 달러화)을 임의로 변경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에 대한 법 적용은?

- 계약기간 중 이미 납품완료된 물량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여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제수단 임의변경은 부당함. 단,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신규 납품분부터 결제수단을 원화 또는 달러화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Q&A 15**

수의계약 관련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6번 항목의 도급 직접공사비 대비 하도급금액을 낮게 할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도급금액이라함은 총 계약금액인 직접비+간접비 합계로 보면 되는지?

- 하도급법 제4조에서 2항 6호의 ‘하도급대금’은 직접비+간접비를 뜻함

**Q&A 16**

협력업체가 시공편의를 위하여 최초 설계물량에 없던 건설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현장은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협력업체 기성에서 공제하고자 하는데 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위반 리스크가 있는지?

- 시공구입사양서상 수급사업자가 발생시킨 폐기물에 대해 내역에 금액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폐기물 처리 자체는 부당특약 리스크는 낮아 보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거하여 발생된 폐기물이라고 가정할 때, 해당 폐기물처리를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하도급법 위반 리스크는 낮아 보임. 단,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경우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사업자(당사)’에 있기 때문에 아래 사항을 체크하시어 법 위반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을 권장 드림
  - 수급사업자가 설계물량에 없던 폐기물을 배출하였다는 객관적 근거
  - 수급사업자에게 설계물량에 없던 폐기물에 대해 처리를 요청하는 서면과 처리 하지 않을 경우, 당사가 처리하여 해당 비용은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한다는 서면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에 의해 설계대비 추가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요청 자료

## Q&amp;A 17

## 아래 하도급법 위반 리스크는?

- ① A 현장 토공사는 발주처 지정으로 수의계약이 체결되었음
- ② 해당 수급사업자의 의무에는 잔토처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토사/풍화암/연암에 따라 개별단가로 계약되어 있음  
- 계약단가는 수급사업자가 암의 골재판매 등을 자체적으로 고려하여 투찰한 단가임
- ③ 현장에서는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암의 판매 등을 고려하여 잔토처리 단가결정을 할 것에 대해 (구두)언급 또는 서면(시공구입사양서 등)으로 안내한 바가 없음
- ④ 공사 진행 중 굴착된 암 확인 결과, 품질이 골재용으로 사용이 불가 (붉은색, 수평절리 등)한 상태였음  
- 단, 계약된 암의 종류 및 물량의 변동은 없었으며 단순 굴착된 암의 품질이 저하로만 판정되었음  
- 암은 저품질로 인해 일반 사토장에서 처리하였으며, 이로 인해 협력사에서 암을 일반 사토로 처리하였기에 손실보존 요청함

- 해당 계약은 잔토처리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암처리 방법을 고려하여 단가를 책정/투찰 한 것이며, 이는 토공사 잔토 처리에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으로서 그 내용의 부당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계약내용 및 내역/물량에 변동사항이 있었다면 '추가공사'로서 작업지시서 발급 및 대금지급의 의무가 발생되나 본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음

## Q&amp;A 18

## 물가변동(ESC) 관련해서 하도급계약조건에 물가지수 종류를 지정해도 되는지? 부당특약 여부는?

- ESC 관련해서는 발주자로부터 적용받은 기준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도급 계약조건에 특정 물가지수를 지정할 경우 향후 발주자로부터 적용받는 기준과 상이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물가지수 종류를 특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음. 자칫 부당특약이 될 수도 있음

## 사례 1

포스코ICT는 2014년 7월 11일부터 2015년 6월 17일까지 '광양 5고로 DCS H/W 1식' 등 11건의 하도급계약의 체결을 전자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각 계약 건의 예산에 해당하는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소싱 그룹의 평균 낙찰율, 예비투찰자들의 견적가격, 최근 구입가 등 여러 가격을 조사하여 그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조사금액을 산정한 후 조사금액과 같거나 조사금액보다 0.9~4.4% 더 낮은 금액으로 기준가격을 결정함. 또한, 전자 상거래 이용약관 및 입찰유의서 등을 통해 최초 설정한 기준가격이 재입찰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도 공지하지 아니 함

- 포스코ICT는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 입찰가가 기준 가격보다 높을 경우 유찰시키고, 재입찰 과정에서 기준가격을 상향 또는 하향조정 한 후, 재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거나 몇 차례의 유찰에도 기준가격보다 낮은 입찰가가 나오지 않으면 최종 입찰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초 입찰가보다 5,000천원~416,250천원 낮게 계약금액을 결정함
- 포스코ICT는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자신이 책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입찰가를 제출하는 참여업체가 없을 경우 유찰시키고, 기준가격을 임의로 변경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는 등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낙찰자 등을 선정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입찰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는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함

**사례 2** 동호건설(주)은 경쟁입찰 후 최저가 낙찰자인 A업체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가격협상을 진행하여 입찰가 보다 6억원 낮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공정위 보도자료 '20.2.21)

-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시정명령 및 벌점 2.6점, 과징금 2.6억원 부과

**사례 3** 리드건설(주)은 총 공사계약 금액의 3% 이내의 재작업 및 추가작업에 대해 귀책사유와 관련 없이 수급사업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경쟁입찰 후 추가 협상을 통해 낙찰금액 보다 5.3억원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함(공정위 보도자료 '20.2.27)

- 공정위는 부당특약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시정명령 및 벌점 5.1점, 과징금 4.6억원 부과

**사례 4** GS건설(주)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4건의 공사를 수급사업자인 한기실업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직접공사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 하도급업체의 계약 4건의 직접공사비는 총 198억원에 달하였으나, GS건설(주)은 하도급대금을 이보다 11.3억원 낮은 186.7억원으로 결정하여 지급하였음

- 공정위는 GS건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3.8억원 부과

**사례 5** (주)홍성건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 27백만원 부과

- (주)홍성건설은 수급사업자가 최저가로 낙찰되었음에도 단순히 계산의 편의성을 이유로 천만원 단위 이하의 금액을 절사하여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 (주)홍성건설은 대금결정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상 비교적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자유의사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계산 편의를 위한 단위 절사가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위반에 해당함



사내 교육 자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및  
보복조치의 금지)



### 3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①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하도급법 제5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

#### ② 적용기준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위탁목적물의 품질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발주자, 바이어, 고객이 목적물 제조, 수리시공시 특정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토록 요구한 경우
- 위의 경우에도 당연히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요구가 합리적이고 구속력 있는 요구이어야 함

#### 행동지침

#####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공사현장에서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재를 수급사업자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원사업자가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 장비를 구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계약 당시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제조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가 지정한 부품이라고 주장하며, 원사업자가 고가의 부품 구매를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매처의 지정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발주자, 바이어, 고객이 목적물 제조 또는 시공의뢰시 특정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위탁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을 위하여 특정 자재 및 장비의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 이것만은!

☞ 계열회사 등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OO과장입니다. OO구매 건과 관련해서 기왕이면 당사 계열회사인 OO사의 제품을 사용해 주었으면 합니다. 계약서에 그런 내용은 없었대구요? 물론 그렇지만, 뭐 꼭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 목적물에 대한 품질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물품, 장비, 역무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토록 강요하는 것은 하도급법 제5조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 4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①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하도급법 제8조)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안 됨(법 제8조 제1항)
-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납품이 있을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검사 완료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종료되는 즉시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함(법 제8조 제2항)
- ‘수령’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 아래 두게 되는 것을 말함. 다만 이전이 곤란한 목적물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때를 수령한 때로 간주(법 제8조 제3항)

### ② 적용기준

- 원사업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포함)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승인 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 회사로 합병될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된 목적물의 제조 및 건설을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기간내 제조 및 건설이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보상을 한 경우

### ③ 유의사항

- 원사업자가 무리한 납기를 설정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차후에 납기지연을 이유로 한 수령거부나 지체상금 공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바로 이의를 제기하여 서류상으로 수정토록 해야 하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시키거나 또는 발주서 등을 즉시 반납하여 책임을 면해야 함
-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물품의 내용이 발주시 위탁내용과 상이하다 하더라도 계약서의 위탁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검사기준이 불명확하여 납품받은 물품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가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령거부 할 수 없음

### 행동지침

####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시공한 목적물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않고는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 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위탁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하여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보관장소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경우
- ▶ 원사업자가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률로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납기를 연기 통보하는 경우
- ▶ 발주자의 위탁취소 및 위탁중단 등의 이유로 이미 위탁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 이미 수령하여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품의 판매가 부진하자 새로 위탁한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 ▶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시공하고 있는데도 시공능력부실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막연한 이유로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의 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 정해진 납기를 현저히 초과하여 지연 납품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작업장에서 검사한 결과 기준에 상당히 미달된 하자품인 경우
  - 발주서 및 시방서와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등
- ▶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해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보상을 한 경우

#### 사례 1

삼성중공업(주)는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따른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로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명령, 과징금 36억 원 및 법인이 검찰에 고발됨. (공정위 보도자료 '20.4.23)

※ 직권조사의 결과로, 삼성중공업은 최소 7.6점 ~ 최대 11.1점의 벌점 부과가 예상됨(3년간 누적벌점이 5점 초과시 '공공입찰 참가제한'되며, 10점 초과시 '영업정지' 조치됨)

- 사전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
  - '13년부터 '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38,451건의 선박 및 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후에 발급함
-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 '17년 10개의 선체도장 업체에게 409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선체도장 단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전년대비 일률적인 비율(3.22%, 4.80%)로 인하하여 5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함
- 일방적으로 제로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 '15년부터 '18년까지 95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2,912건의 추가공사를 위탁시 하도급업체와의 협의 없이 금액을 결정했으며, 공사완료 후 계약이 체결됨
- 부당한 위탁 취소·변경 행위
  - '15년부터 '18년까지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42개 사외 협력사에 제조 위탁한 선박부품 6,161건을 임의로 취소 및 변경함

**사례 ②** (주)엔에스건설, 공사진행 지연을 이유로 일방적 계약 해지  
(공정위 보도 '21.09.01)

- (주)엔에스건설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 중이던 OO건설에게 공사진행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음. 해당 계약서 상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독려·최고하고 해지하여야 하나 이러한 최고절차 등도 이행하지 않았음
-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억원 부과(벌점 2.5)

**사례 ③** 명가토건(주), 이중 계약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 취소  
(공정위 보도 '21.09.07)

- 명가토건(주)은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하고 한달 뒤 '일부공사가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되었으므로 늦게 계약된 귀사와의 계약은 취소하겠다.'라는 취지 문서를 발송 후 타일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충분한 협의 없이 해지하였음
- 공정위, 시정명령 부과(벌점 2)

## 5 부당 반품의 금지

↳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① 부당 반품의 금지(하도급법 제10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시켜서는 아니 됨.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치 아니함(법 제10조 제1항)

### ② 적용기준

- 원사업자의 부당 반품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0조 제2항)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원자재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행동지침

####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불합격을 이유로 이를 반품하는 경우
- ▶ 수급사업자의 납기·공기 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 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

###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 납품받은 상품에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하자 등이 있어 목적물 수령 또는 인수한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 ▶ 인수한 목적물이 주문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에 인수일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당해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 ▶ 인수 또는 수령한 목적물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당해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당해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반품받아 자기가 당해 물품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여 수급사업자가 스스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 이것만은!

☞ 무검사 합격 후 반품처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00과장입니다. 이번에 납품된 00제품에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지난번 제품 테스트 때는 시간도 없고 해서, 무검사로 진행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제품 이상은 이상이니까 남은 재고 전량을 반품해야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하도급법 제10조 「부당 반품의 금지」에 따라 제품을 무검사 수령한 것은 합격처리한 것으로 간주되며, 원칙적으로 반품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6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① 감액금지 (하도급법 제11조)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음
- 당초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나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한 경우에는 적법함
  - ☞ ‘감액의 정당성’ 여부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 내용,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하도급대금을 감액시 감액사유와 기준,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함
- 감액서면 표준서식 확인 경로
  - 당사 홈페이지(EP) → 공정거래 홈페이지(앱) → 자료실 → 표준서면양식
  - [표준양식]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 ② 적용기준

- 원사업자의 부당 감액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1조 제2항)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 감액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해 합의한 경우, 당해 합의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 또는 지급기일 전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공제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행동지침

#####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 하도급대금의 총액은 그대로 두고 납품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 ▶ 하도급계약 후 추가 위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추가 하도급대금이 경미함을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고 원 계약금액만을 지급하는 경우
- ▶ 원사업자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경우
- ▶ 계속적인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경우
- ▶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경우
- ▶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감액하는 경우

- ▶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일반물가 및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가격 등이 계약시점 보다 낮아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 ▶ 목적물을 저가로 수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달리 감액하는 경우
-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 ▶ 수출용품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당초 계약조건과 달리 원사업자가 환차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
- ▶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의해 원사업자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표준안전관리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

#####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이 발주서대로 제조·시공되지 않았거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 ▶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내역과 실제 시공한 공사내역에 차이가 있어 실제 시공내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 ▶ 원사업자가 지급한 자재대, 가불금, 장비임차료 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최종 정산에 합의하여 감액하는 경우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수출용 물품의 하도급거래에 있어 결제통화를 외화표시로 할 것을 합의하고 환율변화에 따른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 Q&amp;A ①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낮게 도급공사를 수주하여 불가피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야 하는데 가능한가?

- 당초 예상보다 저가의 수주를 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감액에 해당됨. 원가절감, 협찬금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에서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에 해당

## Q&amp;A ②

물량이 증가하였는데 당초 하도급계약에서 대금 변동은 없는 것으로 특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 하도급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당초 계약변동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단가를 적용하여 대금을 증액시켜주는 것이 타당함

## Q&amp;A ③

당초 입찰시 교부하였던 사양 조건이 변경되어 하도급계약 금액을 감액하여야 하는데, 이럴 경우 변경계약 체결로 가능한 것이 아닌지?

- 계약의 주요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작업 변경 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임. 또한 하도급계약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 대비 감액이 될 때는 사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도 발급해 주어야 함

## Q&amp;A ④

계약 중 설계변경으로 감액되는 경우와 당초 물량 정산을 하기로 하고 정산시 감액하는 경우의 각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 도급계약이 먼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6조에 의거하

여 15일 이내 변경 내역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 도급 계약 변경 없이 물량 감소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감액시 서면발급 의무가 발생하여 정산협의 전 감액되는 물량과 감액방법,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

## Q&amp;A ⑤

촉로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는 계약서상 물량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실제 촉로물량과는 차이가 있음), 당사가 하도급계약을 근거로 수급사업자에게는 실제 촉로한 물량으로 하도급대금을 정산하였을 경우 부당감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 ①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에 따라 추가금액을 받은 경우라면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의거 하도급사업자에게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함
- ② 그러나, 물량증가, 단가증액 등 추가금액을 발주자로부터 받은 성격이 아닌 하도급 계약 자체를 당초 사후정산 물량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계약내용에 따라 정산하는 것 자체는 위 하도급법 제16조와 무관할 것이며,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사항도 아님

## Q&amp;A ⑥

환율, 소재 등 가격변경을 즉시 반영하지 못하고 이후 정산하여 단가 소급하는 것이 부당감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 원칙적으로 금지됨. 단, 법 위반여부는 단가감액과 증액이 동등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객관적 기준 여부,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검토 가능함

## Q&amp;A 7

발주 후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하도급대금에서 하락분을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는지?

- 수급사업자의 다른 귀책 사유 없이 원자재가격 하락을 이유로 감액하는 것은 부당감액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 Q&amp;A 8

환차손을 이유로 대금 결제수단(원화 및 달러화)을 임의로 변경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에 대한 법 적용은?

- 계약기간 중 이미 납품완료된 물량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여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제수단 임의변경은 부당함. 단,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신규 납품분부터 결제수단을 원화 또는 달러화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사례  
1

OO건설산업(주)은 (주)OO건설에게 OOO사관학교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면서 2007. 3. 19. 안전약정을 체결하였다.

- 위 약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 (주)OO건설의 공사 중 발생한 근로자의 신체손상 사고(이하 ‘산재사고’)를 원사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이하 ‘산재처리’)할 경우 이로 인한 원사업자의 불이익을 (주)OO건설이 보상하기로 하였는 바, 위 약정에 따라 원사업자는 2007. 4. 26.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를 자신이 산재처리하고 2007. 11. 5. 공사대금에서 500만원을 공제한 사실이 있음

- 건설업에서 각급 공사의 발주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도급대금으로 지급하라고 원사업자가 통상 수급사업자의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공사현장의 근로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를 포함한 공사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책임은 원사업자에게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산재사고 발생시 그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약정이라는 형식으로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보상하게 한 행위는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부당한 감액행위임

사례  
2

(주)포스코캠텍은 2015년 1월 9일 자신과 거래하는 협력업체 4개사에게 성과 평가를 통해 최하위 업체로 평가된 1개 수급사업자로부터 페널티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중 2,244만원을 환수함. 또한, 자신이 제조하는 내화물의 성형·가공·포장 등을 위탁한 2개 수급사업자와 직전 연도보다 단가를 인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계약 체결일 이전에 위탁한 부분도 인화된 단가를 소급 적용하여 하도급대금 9,250만원을 환수함

- 원사업자가 성과 평가를 통해 페널티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을 일부 환수하는 행위 및 단가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도 소급하여 단가를 인하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의 감액을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됨

## 7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및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①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하도급법 제12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해서는 안 됨

### ②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하도급법 제12조의2)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③ 적용기준

- 수급사업자가 물품을 당해 하도급작업 이외의 다른 작업에 사용하거나 전매한 경우 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 결제청구 가능
- 수시로 기성이 발생하는 장기계약 거래에 있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한 경우, 실제 투입한 물량가액 이상으로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됨

#### 행동지침

#####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자재 등을 원사업자로부터 사게 하고, 그 물품대금 등을 목적물을 납품하기도 전에 전액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 계속적인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원사업자가 납품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시 실제로 투입한 물량보다 더 차감하는 경우 (예) 1회 기성금 지급시 전액 차감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자신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함에 있어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사용대가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

#####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원사업자로부터 제조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한 것을 당해 하도급 작업 이외의 작업에 사용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그 물품대금을 조기결제하는 경우
- 원사업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급사업자가 전매한 경우 원사업자가 그 물품 대금을 조기결제하는 경우
- 원사업자로부터 제조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하도록 하고, 납품(기성)이 있을 때 마다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투입한 물량만큼 납품대금(기성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구매 또는 임차한 원재료나 장비를 훼손하거나 또는 손실을 발생시켜 납품해야 할 목적물의 제조가 불가능하여 조기결제하는 경우

## Q&amp;A ①

## 협력업체 공상처리시 하도급법 문제점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는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하도급법 제12조의2)에 해당할 수 있음

## 사례

## ①

현대삼호중공업(주)는 (유)한국특수산업, (주)WD중공업, (주)태형중공업, 삼강에스피(주)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파이프피스 도장을 제조위탁함에 있어 보증기관의 지급보증 외에 추가로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음

- 피심인은 지급보증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하여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였음.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하도급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되는 사항임

## 8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 ↳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①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하도급법 제12조의3)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단,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음
-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 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함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함  
→ 공정위는 비밀유지계약 체결에 표준이 되는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② 적용기준

## (1) '기술자료'(법 제2조 제15항)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 기술자료는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서 제조·수리·시공·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를 의미

## ①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 제품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무형물 (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에 한정하지 않음

☞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 작업공정도, 작업표준서(지시서), 기계 운용 매뉴얼, 기계조작 방법, 시방서, 원재료 성분표, 배합 요령 및 비율, 소프트웨어의 테스트 방법, 소스코드 또는 소스코드 관련 정보,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시험 방법 등

- ②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경제적 유용성)
- 정보·자료의 보유자 혹은 다른 사업자가 이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

☞ 현재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경우

☞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큰 경우(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

☞ 실패한 연구 데이터 등과 같이 그 자체로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그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를 입수하여 사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을 단축하는데 기여하는 등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나 자료인 경우(소극적 정보 : negative information)

☞ 전체적으로는 동종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세부사항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의 정보나 자료인 경우

### ③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서면 기재 사항

- ①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 ② 비밀유지 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③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 ④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 ⑤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⑥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 ⑦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반환 또는 폐기방법 및 일자
  - ⑧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공정위 기술자료 제공 요구 표준서식 보급

#### (1)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
- 기술지도, 품질관리를 명목으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
- 기술자료 미제공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로 기술자료 제공을 유도

#### (2)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 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④ 비밀유지계약의 내용**

- ①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②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 ③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 ④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 ⑤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 ⑥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반에 따른 배상
- ⑦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⑤ 중소기업 기술 유용 관련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기술의 부당이용 :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준수사항)**

- ② 위탁기업은 취득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이하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이라 한다)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나.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 다.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사인(私人)의 금지 청구제도 도입(25.12.17)

### ● 금지청구에 관한 법률

#### 제34조의2(금지청구 등)

- ① 제3조의4, 제4조,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법원에 자신과 관련된 그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수급사업자가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법원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위반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그 밖에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

### 《 거래이전 단계 》

-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낙찰받은 수급사업자의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자료를 자신이 유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나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 등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거래 개시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제품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단순 열람한 후 이를 도용하여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디자인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토록 하는 경우

### 《 거래 단계 》

- 원사업자가 거래를 위한 부품 승인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정도,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납품가격을 경쟁시키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에 그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기술지도, 품질관리 명목으로 물품의 제조공법을 수급사업자로부터 습득한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제조공법을 전수하여 납품 하도록 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고 기술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위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자신과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전에 정한 반환·폐기기한이 도래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반환·폐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 《 거래이후 단계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고 거래 종료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 (법 제35조 제2항) ▶ \*24.8 시행

↳ 배상액은 고의 여부, 수급사업자 피해 규모, 원사업자가 취한 이득,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참고

##### 우리회사 '기술자료요구서 - 비밀유지계약서' 발급 시스템 (전사공지 2023.12.19)

##### 가. 발급대상 및 절차

당사가 협력사에 요청하는 자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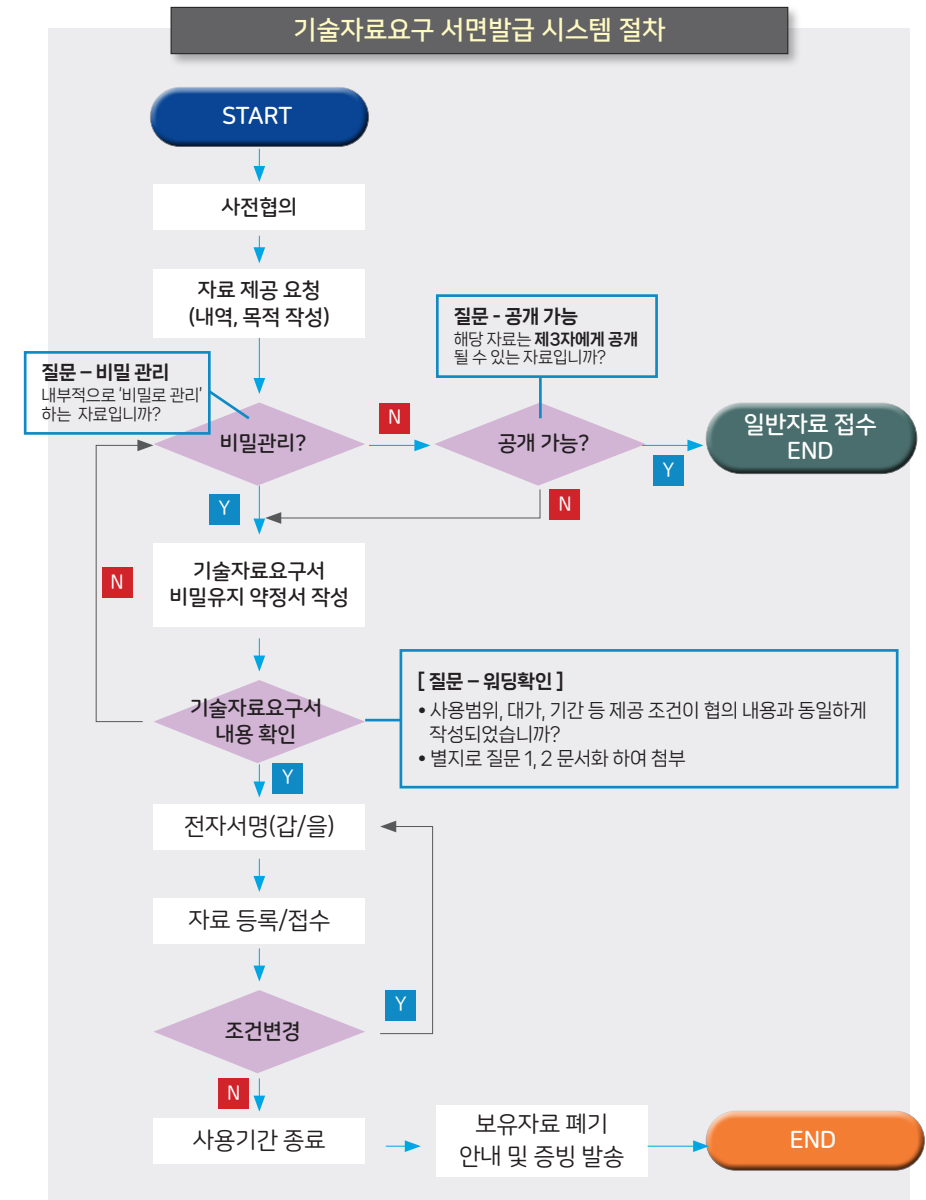
- ① 내부적으로 비밀로 관리하는 자료
- ② 외부에 공개 가능한 자료

인지 시스템으로 협력사에 문의하고 해당 시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를 발급

※ 양사 합의 완료 시 법정서면 Email 자동 교부

##### 나. 시스템 접속경로

- ① Promaster → 외주
- ② Estimaster → 견적지원
- ③ EP 시스템 APP



## Q&amp;A ①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진행시 기술자료제공요구서 발급 필요 여부는?

- 기술자료제공요구서 발급 기준은 기술적으로 영업활동에 가치가 있는 자료 등 기술자료 해당 여부가 기준이며, 입찰단계나, 계약단계나 등은 기준이 아님. 담당자가 기술자료로 판단한다면 업무단계와 관련 없이 기술자료제공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함.

## Q&amp;A ②

협력사에 견적서를 받으려는데 반드시 기술자료제공요구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 무단가내역에 대한 단순 단가입력 견적서는 기술자료가 아니며, 따라서 기술자료제공요구서도 발급할 필요가 없음.

## Q&amp;A ③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진행시 기술자료제공요구서 발급 필요 여부는?

- 기술자료제공요구서 발급 기준은 기술적으로 영업활동에 가치가 있는 자료 등 기술자료 해당 여부가 기준이며, 입찰단계나, 계약단계나 등은 기준이 아님. 담당자가 기술자료로 판단한다면 업무단계와 관련 없이 기술자료제공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함.

## Q&amp;A ④

원사업자가 기본도면을 제공하는 등 제조방법 및 사양을 구체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자료가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 하는지?

- 수급사업자의 기술 또는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다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의 특성상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기술자료에는 원사업자의 기술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사업자가 제공한 기본 도면 등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 또는 노하우가 반영되었다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 Q&amp;A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였고, 부품제조 위탁에 따른 대가도 지급하였음. 그렇다면 부품의 제조를 위해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승인도는 원사업자의 소유가 아닌지?

- 부품 제조 위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원사업자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것이지, 수급사업자의 노하우 및 기술이 포함된 기술자료 자체를 이전받기로 한 것은 아니므로, 부품 제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부품 제조 과정의 노하우 및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승인도까지 원사업자에게 바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 Q&amp;A 6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개발 및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한 뒤 계약의 최종 목적으로 기술자료를 받은 경우에도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 원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자체를 이전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수급사업자의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술자료 요구서 등을 교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기술자료의 소유권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기술자료 이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 제12조의3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관련 계약서 상 기술자료가 원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여전히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라는 전제 하에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더 나아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킨다는 약정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부당 특약에 해당하여 별도의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Q&amp;A 7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설계 도면자체를 이전받기로 한 상황에서 대금 지급 완료 전에 중간 산출물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경우 기술자료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 원사업자가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의 중간 산출물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12조의3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 전에 받은 중간 산출물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기술자료를 유

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기술자료 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절차 또한 이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VI. 3. 다. <예시 5>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고 기술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를 기술유용의 사례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자료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일지라도 최종적으로 계약이 완료되어 원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하도급법 제12조의3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Q&amp;A 8

수급사업자의 자료가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통상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인 경우에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는지?

- 세부 사항에 수급사업자의 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밀로 관리되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III. 5. <예시 4>는 전체적으로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세부사항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의 정보나 자료인 경우 기술개발·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Q&amp;A 9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개발과정에 참고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존 기술과는 큰 차이가 있는 제품을 개하여 생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4항이 금하는 '부당한 기술자료 사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 수급사업자와 합의된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동일하게 모방한 것이 아니라고하더라도 부당한 기술자료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대법 2017다34981)에서도 기술자료인 정보를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타인의 기술자료를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기술자료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자료를 사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이르지 않더라도 합의된 목적을 벗어나 사용하였다면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4항에 위반 될 수 있습니다.

## 사례 1

(주)두원공조는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도면)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기술자료(도면)를 제공 받으면서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수급사업자와 별도 합의 없이 해외 계열사에 기술자료(도면)를 제공함

-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 및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12조의3」 위반에 해당함

## 사례 2

공정위는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주)에 시정명령(벌점 2.5 점)과 함께 과징금 9억 7천만원을 부과 (공정위 보도자료 '20.7.24)

- 현대중공업(주)은 엔진에 사용되는 피스톤을 하도급업체(A사)와 협력하여 국산 화하고 수의계약을 하였으나 비용절감을 위해 제3업체에게 A사의 기술자료를 제공 및 계약하였고 이후 A사의 단가를 약 11% 인하하고 거래를 단절하였음. 또한 A사에게 작업표준서등 기술자료 요구 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음

## 사례 3

두산중공업(주), 별도 서면 제공 없이 기술자료 요구 및 수령 (공정위 보도 '21.03.23)

- 두산중공업(주)은 발전소 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2개 중소기업에게 제조 관련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서면 제공 의무를 위반하였음

→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원 부과(벌점 2.5)

## 사례 4

현대로템(주), 구두나 E-mail로 기술자료 요청 후 서면 미제공 (공정위 보도 '21.06.09)

- 현대로템(주)은 철도 차량·자동차 생산 설비 관련 기술자료(부품 도면 등) 45개 중소기업에 210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구두나 E-mail로만 요청을 하고 별도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음

→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 부과(벌점 2.5)

**사례**  
5

삼성중공업(주), 구두로 기술자료 요청 후 서면 미제공  
(공정위 보도 '21.10.18)

- 삼성중공업(주)은 63개 중소기업체에 369건의 조선기자재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 받는 과정에서 기술자료(승인도면 등) 요구를 구두로만 하고 별도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음

→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 부과(벌점 2.5)

### 공정위 판결 근거

#### 1)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인지 여부

##### ■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 인정

- 도면에 제출 목적, 작성(수급사업자) 회사명, 설계자, 로고, 설계일자, 작성회사, 설계자, 검토자 등 기재

##### ■ 비밀관리성 : 인정

-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기재함 : “본 도면은 ○○○의 재산으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의 사전 동의 없이 복사를 금합니다” 등
- 접근 대상자나 방법을 제한함 : 별도 서버에 관리, 접근 인원 제한, 보관장소 출입 통제, 파일 구현장소 제한 등
-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함 : 회사 내부규정, 비밀유지계약 등
- 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을 명시함
- ISO 9001 인증 등 국제표준에 따라 도면을 관리함

##### ■ 제조 방법 등에 관한 정보·자료인지 여부 : 인정

- 이 사건 기술자료는 승인도로서, 그 목적을 고려할 때 여기에는 제품의 제작을 위해 사용·참고되는 기술적 내용이 집약되어 있음
- \* 예시 : 외형 및 수치, 제조 시 유의 사항, 부품 선정, 부품 간 결합 위치, 부품 소재 등

##### ■ 경제적 유용성 : 인정

- 이 사건 도면은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을 들여 작성한 자료
- 제품 제조에 실제로 사용되고,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생산·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음
- 구체적인 설계 수치 등을 포함하고 있음

#### 2) 하도급법 위반 여부

##### ■ 법 12조의3 제1항(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금지) : 준수

- 도면을 통해 피심인은 발주처에 제출한 사양서와 동일한 수준의 부품을 공급받는 지를 발주처에 승인받을 수 있음
- 수급사업자의 제품이 피심인의 요구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음
- 제품의 설계 및 사후 수리를 위해 기자재 및 장비의 크기, 위치, 제작도면 등이 요구됨

##### ■ 법 12조의3 제2항(기술자료요구서 교부 의무) : 위반

- 피심인은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음
- 기술자료의 제공이 하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도 원사업자는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하여야 함
-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가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됨
- 서면에 관련 내용이 포괄적·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사례 ⑥ (주)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 (주)현대케피코는 A수급사업자가 베트남 동반 진출 제안을 거절하자 A수급사업자와 별도 협의 없이 현지 공급업체로 선정된 B수급사업자에게 해당 부품개발 참고 목적으로 기술자료 5건을 제공함
- (주)현대케피코는 2017.10.25~2022.11.29 동안 금형도면 24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음
- (주)현대케피코는 2022.2.23~2023.7.6 동안 금형도면 6건을 제공받으면서 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

→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7,400만원 부과(벌점 2.5)

사례 ⑦ 공정위는 제작도면은 물론 승인도면도 기술자료에 해당되며 단순 기술검토 의뢰를 위한 도면의 타사 전달도 기술유용행위로 법위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벌점 5.1점)하고 법인 및 관련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공정위 보도자료 '20.7.22)

-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
  - 두산인프라코어는 협력업체에게 에어 컴프레셔 용접도면 등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하여 전달받았고 30개의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건설기계 등에 관한 382장의 승인도면을 제공받아 보관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법 위반

#### • 기술자료 타사 유용행위

- 두산인프라코어는 기존 공급처의 용접도면과 승인도를 타협력사에 전달하여 공급가능 여부 및 견적을 의뢰하였으며 이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하여 하도급법 위반

사례 ⑧ 하도급계약체결 이전 기술자료제공요구서 발급 필요(22. 10. 27. 선고 2021누 68874 판결(고법 확정))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한 다음 그 체결 후에는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않았으나 수급사업자가 체결 전 요구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공한 경우를 상정해 보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한 것은 원사업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원사업자의 체결 전 요구가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이루어 수급사업자의 의무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데도 '최초 요구'라는 사실행위가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요구행위의 내용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 및 요구행위가 구속력을 갖게 되는 시점을 간과하고 탈법행위를 조장하는 해석론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음

## 사례

9

세방전지(주), (주)에이비비코리아, 엘에스일렉트릭(주)의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 총 100백만원 부과

- 세방전지는 '16.4~'19.5까지 제조공정에 활용되는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 4건을 3개 하도급업체에게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제공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음
- 에이비비코리아는 '16.2~'19.6까지 공장 자동화 관련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33건을 2개 하도급업체에게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제공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음
- 엘에스일렉트릭은 '18.1~'18.7까지 수배전반 관련 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5건을 3개 하도급업체에게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제공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음

→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금지 및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요구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토록 의무화'한 하도급법 제12조의3 위반에 해당함

→ 공정위는 향후 기술탈취, 비밀유지 계약체결 의무 위반, 기술자료 제공요구서 미발급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 계획을 공표한 만큼, 회사의 기술자료 제공요구서 발급 시스템 활용을 통해 법 위반 Risk 대응이 필요함

## 사례

10

현대엠시스템즈(주)의 기술 유용,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원 부과, 법인 및 대표이사 검찰고발 조치

- 현대엠시스템즈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중장비용 카메라를 납품받아 볼보건설기계에 공급하던중, 수급사업자의 카메라를 자사 제품으로 대체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계획하고, 자체 카메라 개발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타 사업자들에게 송부했으며, 이를 토대로 견적의뢰, 샘플 작업, 개발 회의 등을 진행

함,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했으며,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음



사내 교육 자료  
(협력사의 기술자료 요구 시 유의사항)



사내 교육 자료  
(기술자료 제공요구서 및  
비밀유지 계약서 발급방법)



## 참고

## 우리회사 온라인 기술자료제공요구서 사용 의무화 (2020.7월부)

기술자료란 : 수급사업자가 비밀로 관리하는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

☞ 견적서, 제안서, 도면, 시방서, 매뉴얼, 기술검토서, 연구자료 등

\* 접근경로 : PRO-Master ⇨ 외주 ⇨ 외주계약 ⇨ 기술자료 제공요구서 발급

\* 관련공지 : ① 『기술자료 제공요구서 발급 시스템』 의무사용 안내(2020.7.10.)

② 『기술자료 제공요구서 발급 시스템』 변경 안내 (2022.2.14.)

## 기술자료의 구체적 사례



제조, 수리, 시공,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지식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사업 수행 시  
주고받는 자료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 보고서 등)

## 9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 ①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하도급법 제17조)

- 원사업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원사업자는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제시하여야 할 자료, 자료제시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행동지침

##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당초 하도급계약에는 현금으로 지급기로 했으나, 이후 일방적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부득이 대물변제한 경우

## 이것만은!

☞ 당초 계약과 다르게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변제해서는 안됩니다.

“00과장입니다. 이번 00아파트 창호공사 건 관련해서 말인데요, 하도급대금 일부는 아파트 0세대를 분양하는 걸로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분양가가 시세보다 무척 싸게 나온 건이라, 그 쪽에서도 이득일 거라 보는데요.”

사례  
①

후지카 대원전기(주)는 (주)두발가스엔지니어링 등 7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1억3천234만9천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물품(석유난로 등)으로 지급함

- 피심인이 (주)두발가스엔지니어링 등 7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자기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 1억3천234만9천원을 물품으로 지급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7조 위반

## 10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 ①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하도급법 제18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 하여서는 아니 됨

## [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간주되는 행위 ]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 경영상의 정보 》

1.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2.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3.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 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4.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납품조건(납품가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 등)
5.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행동지침****■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 인사에 간섭하는 경우
- ▶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경우
- ▶ 1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 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 조건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경우
- ▶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경우
- ▶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달성과 관계없이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한 자(회사 또는 자연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생산과정, 투입인력, 재료배합 등을 실사하는 행위(다만,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3조의3에 근거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체결의 대상이 되는 수급사업자에게 행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
  -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한 범위 안에서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요청 내지 권유하는 행위
  -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수급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지원하면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도 동일한 행위를 하도록 요청 또는 권유하는 행위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일정한 현금결제비율로 지급하는 행위
  - 인건비·복리후생비 지원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행위
  - 직업교육·채용박람회 실시 및 채용연계 등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행위
  - 상기 이외의 행위로서 효율성 증진·경영여건 개선·소속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 이것만은!

**수급사업자에게 인사청탁 등의 행위는 반드시 금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포스코 00그룹 00과장입니다. 이번에 00억짜리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귀사가 우리 파트너가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어요. 허허,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귀사 재무팀에서 자리가 하나 필요하다면서요? 제 조카 녀석이 이번에 대학 졸업하는데, 어떻게 자리 좀 봐 줄 수 있겠어요?”

↳ 수급사업자에게 인사청탁 등을 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하도급법 제18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 Q&amp;A ①

선금금 사용 계획 제출 및 사용 내역 확인에 대한 내용을 특별약관에 추가시 문제점은?

- 당사가 하도급업체에게 원가 정보가 일부 포함된 선금 사용 계획 및 사용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를 하도급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한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따르면 요구되는 정보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므로 선금 사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 하도급계약상 전체 원가 관련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

## Q&amp;A ②

협력사에서 공동운영 통장을 만들자고 제안하는데 만들어서 관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 향후 대금지급 및 부당한 경영간섭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 완료 후 또는 발주처 수금일로부터 준수기간을 지키지 못할 소지가 있으므로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 11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금지

## ① 보복조치의 금지 (하도급법 제19조)

##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 행동지침

##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수급사업자에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협력업체 등록을 해제하거나 협력업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수급사업자에 대해 가격·품질·공기 등에 있어서 다른 수급사업자에 비해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주기회 제한 또는 거래를 단절하는 경우

## ② 탈법행위의 금지 (하도급법 제20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행동지침

####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경우
-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사내 교육 자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및  
보복조치의 금지)

### 이것만은!

☞ **정당한 사유없이 업체를 입찰에서 제외시키려는 안 됩니다.**

“팀장님, 이번에 00발주 건 말인데요. 00회사에서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몇 년 전 하도급법 위반으로 당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던 업체인데요. 가격 등 조건은 좋아 보입니다만, 과거 전력도 있고 하니 입찰에서 배제시키는 게...”

⚠ 하도급법 위반 신고 등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19조 「보복조치의 금지」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사례 ①

(주)포스코ICT는 2014. 5. 30부터 2014. 10. 16까지 화성이앤티 등 3개 수급사업자와 브라질 CSP 제철소 건설 관련 ‘브라질 CSP 제강 Panel & Box 구매’ 등 3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능보증 유보금 명목으로 ‘MC/SC/FC 단계별로 각 5%씩 기기대금의 총 15%를 각 단계별 확인서 발급 이후에 지급’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함

- 원발주자인 브라질 CSP 제철소와 발주자인 포스코건설 사이에 설정된 브라질 CSP 제철소 건설 관련 대금 지급조건을 도급인인 포스코ICT가 하도급계약에 까지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서, 하도급계약의 이행 및 목적물의 성능보증과는 무관한 SC단계(원발주와 발주자 사이의 지체상금, 하자책임 등의 정산단계 포함) 및 FC단계(종합준공 이후 제철소에서 양산된 결과물의 품질 점검 포함)의 확인서 발급을 하도급대금 중 일부의 지급과 결부시킨 것이므로 법 제13조가 보장하는 수급사업자의 대금지급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 위반

**사례**  
**2**

(주)백양은 봉제임가공과 관련하여 하도급법에 의한 어음할인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고 일단 한남인쇄 등 27개 수급사업자에게 미부담한 어음할인료 2억8천400만원을 지급한 후 납품단가의 인하를 통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미 지급한 어음할인료 중 1억8천500만원을 다시 환수함

-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어음할인료 2억8천400만원을 지급한 후, 납품단가의 인하를 통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 중 1억8천500만원을 환수함으로써,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에 의한 어음할인료 지급의무를 면탈하려고 하였는 바, 이는 탈법행위로서 하도급법 제20조 위반

## 04 | 발주자 의무사항

### 1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

#### 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하도급법 제14조)

- 발주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 ①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②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 ③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④ 원사업자가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
- 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공제함

-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재하도급의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를 말함

## ② 적용기준 (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9조)

-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 요청이 있어야 함(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제외)
-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 합의는 반드시 3자 간에 동시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묵시적인, 순차적인 직접 지급 합의도 유효)
- 2회분 이상 미지급한 경우는 하도급 기성분의 총액이 2회의 기성분에 해당할 때임
-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기지급한 금액은 제외
-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발생 (의사표시의 도달 증명 책임은 수급사업자에게 있음)
-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시 민사집행법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공탁 가능
-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 부담

## ③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 범위

### (1) 직접 지급해야 할 금액의 확정

- 직접 지급금액의 확정이 직접 지급 의무의 전제이며, 직접 지급금액은 원사업자의 기성검사 및 발주자 또는 감리자 등의 승인(검수)에 의해 확정될 수 있을 것임
- 원사업자의 비협조 등으로 확정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의 합의에 의할 수 있을 것임

### (2) 발주자의 직접 지급 한도

-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 범위임
-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선급금 중 미공제금이 남아있을 경우, 발주자는 직접 지급하기에 앞서 미공제 선급금을 상계하고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행동지침

####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 하도급법상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발주자가 명백히 직접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 직접 지급액이 기성미확인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자가 이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유보하는 경우

04. 발주자 의무사항

사례  
①

씨티씨는 원사업자에게 골리앗 크레인 중 일부시설의 제조위탁을 하고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와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 씨티씨는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일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였음

-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 간 합의를 하였을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 의무는 발주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

사례  
②

해룡학원은 원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고 원사업자는 다시 수급사업자에게 일부를 위탁하였음. 원사업자는 해룡학원에게 3, 4회 기성을 수령하고도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수급사업자는 해룡학원에게 3, 4회 기성금 지급을 요청. 해룡학원은 수급사업자의 채권자로부터 공사대금이 가압류 되었다고 하면서 지급요청을 거부하였음. 이후 가압류가 해제된 이후 수급사업자는 해룡학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해룡학원은 원사업자에게 이를 지급하였음

- 원사업자가 2회 이상 기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이의 지급을 발주자에게 요청하면 발주자는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함. 해당 사례에서 3, 4회 기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회 이상 기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직접 지급 요청이 가압류 통보 보다 하루 앞서 전달되었던 점을 확인해 보면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음

포스코이앤씨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 공정거래법 실무

관련부서 영업부서/ 구매 / 경영기획

# 01 | 부당한 공동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답합)

| 구분                                               | 본문<br>보기 |
|--------------------------------------------------|----------|
| 01 가격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169p     |
| 0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 169p     |
| 0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170p     |
| 0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171p     |
| 05 생산 또는 용역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171p     |
| 0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171p     |
| 0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 하거나 그 목적으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 172p     |
| 08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을 결정하는 행위                         | 172p     |
| 09 기타 행위로 다른 사업자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178p     |

합의

명시적 합의  
묵시적 합의  
합의의 합의

## 1 부당한 공동행위(법 제40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Cartel, 답합)란 부당하게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를 말함

### ①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다음의 3가지 요소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되어 법에 위반됨

#### ① 둘 이상의 사업자

- 둘 이상의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 ② 합의의 존재

- 사업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는 계약·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 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함

#### ■ 합의의 개념

- 부당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들 간 의사 합의(합의만 있고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
- 합의는 계약·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
  - ↳ 시장점유율이 높은 선도업체가 가격을 인상하고 후발업체가 이에 동조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의식적 병행행위일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추가적인 정황 증거(정보 교환, 만남의 증거 등)가 있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됨

#### ③ 경쟁제한성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 간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사업자가 가격, 수량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야 함

## ② 유의사항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위법이 됨
- 과당 경쟁 방지, 경영 압박에 대한 업계의 자구책, 정부 고시가격 준수 등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합리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
- 원재료·상품을 구입하는 제조·유통업자의 구매 시의 공동행위도 문제가 됨
  - 공동으로 공급자의 가격인상 요구를 거부하기로 하는 것
  - 특정 공급자로부터만 구매하기로 하는 것
  - 공급자에 대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강요하기 위해 공동구매하기로 하는 것
- 부당한 공동행위는 일시에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행해 지는 경우에도 성립함

### ■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상품(용역 포함)의 거래조건이나 대금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 상품(용역 포함)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설비의 신·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제한하는 행위
- 상품(용역 포함)의 생산·거래시 상품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는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예시

을 및 다른 10개 건설회사 입찰 담당자들이 사전에 모여 공공건물 신축공사 입찰에서 을이 낙찰되도록 하기 위해 을은 100억원 미만의 금액으로 입찰하고 을을 제외한 다른 회사들은 모두 100억원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하기로 약속함. 갑회사 입찰 담당자는 다른 사업자들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심으로는 100억원보다 낮은 80억원으로 입찰하여 낙찰을 받을 의사를 가졌으나 겉으로는 위와 같이 합의함. 그후 합의와 달리 갑은 실제 80억원으로 입찰하여 낙찰을 받음

이와 같이 갑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합의를 한 후 실제 입찰에서 이 합의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러한 사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 함.

### 사례 ①

(주)칼슨 등 4개 사업자들은 (주)효성 및 진흥기업(주)이 발주한 타일, 조명 및 홈 네트워크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4년간 총 16건을 (주)칼슨이 낙찰되게 하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자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투찰금액을 담합 함 (공정위 보도자료 '20.1.10)

- 공정위는 수 년간 담합을 주도한 (주)칼슨에 대해 과징금 5억원 부과 및 검찰고발로 엄중하게 제재

##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 (법 제40조 제5항)

부당한 공동행위는 명시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고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한 정황증거가 있으며, 또한 행위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원가나 비용구조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유사시기에 동일한 가격수준, 같은 인상률로 인상한 사실
- 시장구조, 과거 법 위반 전력 등
- 모임을 나타내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 ① 정황증거

- 직·간접적인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 예 비밀회합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사업자 간 가격이나 산출량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거나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모임을 갖는 경우
- 공동으로 수행되어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 예 원가상승 요인도 없고 공급과잉 또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 예 원재료 구입가격, 제조과정, 임금 인상률, 어음 할인금리 등이 달라 제조원가가 각각 다른데도 가격 변동폭이 동일한 경우
- 당해 산업구조상 합의가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 ②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또는 판례에서 인정된 정황증거

- 합의사실을 나타내는 회사 내부 문건(단, 합의사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실제행위와도 일치한다면 합의에 대한 직접적 증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음)
- 실무자, 임원모임 또는 협의체 등에서 가격인상 등을 논의한 사실
- 가격인상 정보 또는 영업방식을 사전 교환한 사실

### 3 공동행위의 예외적 허용

공동행위 중 산업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통해 이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 공동행위가 다음의 목적을 위해 행해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받은 경우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법 제19조 제2항)

- ① 산업합리화
- ② 연구·기술개발
- ③ 불황의 극복
- ④ 산업구조의 조정
- ⑤ 거래조건의 합리화
- ⑥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 4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 ①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 ●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공동으로 가격 인상·인하율을 결정하거나 일정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 예 경쟁 철강업체와 특정제품에 대해 가격인상을 합의하는 행위
- 평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최고·최저가격 등 가격 설정기준을 정하는 행위
  - 예 경쟁 철강업체와 특정제품에 대해 기준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쟁 철강업체와 공동으로 특정업체를 제재하는 행위
- 할인율, 이윤율 등 가격 구성요소의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거나 일률적인 원가 계산방법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하는 행위
- 과당경쟁 방지, 고시가격 준수 등을 이유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②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대금지급 조건을 공동으로 정하는 행위

##### ●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대금지급 방법을 제한하거나, 상품 인도일부터 대금지급 기일까지의 기간이나 어음의 만기일 등을 정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등의 인도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애프터서비스의 기간, 내용, 방법 등을 제한하는 행위
- 원재료 공급업체들로부터의 가격인상 요청에 대하여 구입자들이 합의하여 가격인상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하거나 인상폭을 정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공급자의 가격인상 요구를 거부하기로 하거나 특정 공급자에게서만 구매하기로 하는 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거래조건이나 대금지급 조건을 동일화함으로써 증진되는 소비자의 이익이 사업자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월등히 큰 경우
- 법령 등에 따라 일정한 거래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③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자별로 상품의 생산량, 출고량 등을 할당하거나 용역조건을 제한하는 등 공동으로 그 수준을 결정하는 행위
- 최고·최저 생산량, 필요 재고량 등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 간에 생산량 등 수량의수준을 정하는 행위
- 가동률, 가동시간, 시설의 신·증설 및 개체 등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고·수송 수량을 제한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구매량, 구매가격, 구매하는 물품의 인도방법 등을 결정하거나 구매량 또는 납품업체를 사업자 간에 할당하는 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원재료 공동구매로 원가를 절감함으로써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 이익을 증진시키는 경우(중소기업 간 공동구매로 대기업과의 경쟁에 유리하게 되는 경우)
- 제품 수송차량을 공동활용하여 원가절감 및 소비자 이익을 증진시키는 경우

④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공동으로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거나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 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 하고만 거래하도록 공동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공동으로 특정한 사업자를 우량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⑤ 설비의 신·증설이나 장비도입을 방해·제한하는 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자별 생산·판매시설 등 설비의 규모를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
- 공동으로 설비의 신·증설 또는 개체를 제한하거나 폐기하도록 하는 행위
- 공동으로 장비의 도입자금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설비의 신·증설 또는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⑥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공동으로 규격 또는 종류별로 생산품목을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생산품목을 결정하는 등 사업영역을 설정하는 행위
- 거래승인 거부, 거래시기 제한 등 신상품의 출고를 제한하는 행위. 단,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상품이나 규격을 공동결정하는 행위는 문제되지 않음

## ⑦ 영업의 주요부문 공동관리회사 설립 행위

### ●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가격의 공동결정이나 판매량 제한 등 경쟁제한적 효과를 목적으로 경쟁 사업자들 간에 생산, 판매, 구매 등을 담당하는 공동회사를 설립하는 행위

## ⑧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 ①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 ②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 ③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이 되는 요소가 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판례】

- ‘입찰담합’이란 입찰자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인 것을 그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제3자를 시켜 형식상 입찰을 하게 하는 소위 들러리를 세운다거나, 입찰자들끼리 특정한 입찰자로 하여금 낙찰받게 하거나 당해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들 상호 간에 가격경쟁을 하는 경우 당연히 예상되는 적정한 가격을 저지하고 특정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입찰실시자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올 정도의 가격으로 낙찰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협정으로서 그 어느 경우이건 낙찰자가 된 입찰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함(대법원 2000.6.9. 선고99두2314)
- 일부 입찰자와 담합이 있었으나 다른 입찰자와는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입찰시행자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는 경우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없음(대법원 1983.1.18. 선고81도824)

-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요하고 반드시 이에 대한 실행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는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가 합의할 필요는 없고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함(대법원 98두15849, 1999.2.23. 선고)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담합 건  
(의결 제2007-436호)

### 「합의」

금호산업과 포스코건설은 상주시에서 2005년 6월 7일 고시한 「상주시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에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투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서로 협조하여 입찰에 참가한 사실이 있음

※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볼 때에도 피심인들이 사전에 입찰시의 투찰금액을 합의한 사실이 인정됨

- (1) 첫째, 포스코건설이 2005년 8월 31일 작성한 ‘BTL 하수관거 민자사업 최근 평가결과 및 당사 참여방안’ 문건의 ‘3. 당사 진행사업 참여방안’에 ‘상주시: 낙찰율 90% 이하 투찰(평가 후 환경관리공단과의 담합 의혹 불식)’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음

- (2) 둘째, 포스코건설이 2005년 9월 8일 작성한 ‘하수관거 BTL 민자사업 최근 입찰동향 및 당사 참여방안 보고’ 문건에 완전경쟁이라는 표현과 함께 ‘합의경쟁’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음
- (3) 셋째, 금호산업이 2005년 9월 21일 작성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추진 일정표’ 문건에 ‘경쟁’이라고 기재한 것과는 달리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입찰 건은 경쟁이라고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4) 넷째, 이외에도 고려개발 주식회사가 2006년 1월 10일 작성한 ‘지방 자치단체 방문 일지’ 문건에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 금호산업(명의상 경쟁)’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있음

#### 「실행」

- 금호산업은 포스코건설이 추천해준 지역건설사 및 재무투자자와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포스코건설에서 작성해준 제안서(사업계획서, 설계 도서, 투찰금액 등)를 접수받아 명의만 금호산업으로 변경하여 상주시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
- 포스코건설은 2005년 9월 5일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에 참가하면서 피심인 금호산업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고시금액(공사예정금액) 대비 92.6%인 투찰금액 775억원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투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
- 금호산업도 2005년 9월 5일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에 참가하면서 피심인 포스코건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고시금액(공사예정금액) 대비 95.9%인 투찰금액 803억원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투찰)하여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였음
- 시정명령 / 과징금 : 포스코건설 57억9천800만원(금호산업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과징금 면제)

#### 입찰 관련 행동지침

##### ● 수주자 선정에 관한 행위

##### (1) 수주예정자 등의 결정

##### 【유의사항】

##### ① 사업참여 관련 정보교환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당해 입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발주정보, 사업활동 실적, 대상물건 등과 관련한 수주실적 등 수주예정자의 선정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 됨

##### ②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의 정리·제공

-사업자는 과거 입찰에 있어서 개별사업자의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이후의 수주예정자 선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 형식으로 정리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③ 입찰가격의 조정 등

-사업자는 수주예정자 이외의 입찰참가자가 수주예정자로부터 입찰가격에 관한 연락, 지시 등을 받은 상태에서 수주예정자가 수주 받을 수 있도록 각각의 입찰가격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

##### ④ 다른 입찰참가자 등에 대한 이익공여

-사업자는 수주예정자에게 다른 입찰참가자 등에 대하여 업무발주, 금전지불 등의 이익제공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

##### ⑤ 수주예정자의 결정에 대한 참가의 요청, 강요 등

-사업자는 입찰참가를 예정하는 사업자에 대해 수주예정자의 결정에 참가할 것 또는 결정의 내용에 따를 것을 요청, 강요하고 결정에 참가, 협력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절, 사업자 간 차별적인 취급 등으로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결정의 내용에 따르지 않고 입찰한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절, 사업자 간 차별적 취급, 금전지불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2) 지명과 입찰참가 예정에 관한 보고

-사업자 간 각 사업자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에 관한 지명을 받은 것과 입찰참가의 예정에 대해 보고를 구하여서는 아니 됨

(3) 공동기업체의 조합에 관한 정보교환

-공동기업체로서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단체 또는 다른 공동사업체로서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 간에 당해 입찰참가를 위해 공동기업체의 결성에 관한 사업자의 조합에 관해 정보교환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입찰가격에 대한 행위

(1) 최저 입찰가격 등의 결정

-사업자는 입찰에 관한 최저입찰가격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됨

【유의사항】

① 입찰가격의 정보교환 등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당해 입찰에서의 입찰가격에 관한 정보를 타 사업자와 교환하거나, 이러한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가 관련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 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아니 됨

② 입찰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수준에 관한 정보교환 등

-발주자가 예정가격의 산정을 위해 입찰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준과 동향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업자 간에 정보를 교환, 수집, 제공하거나 이를 촉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수주수량 등에 대한 행위

(1) 수주수량·비율 등의 결정

-사업자는 공동으로 입찰에 관한 발주의 수량, 비율 등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됨

● 정보의 수집·제공, 경영방침 등

【유의사항】

-수주의욕의 정보교환 등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의 정리·제공

【유의사항】

※ 입찰가격의 정보교환 등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당해 입찰에서의 입찰가격에 관한 정보에 대해 사업자 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가 관련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 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아니 됨

(1) 지명과 입찰참가 예정에 관한 보고

-사업자 간 각 사업자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에 관한 지명을 받은 것과 입찰참가의 예정에 대해 보고를 구하여서는 아니 됨

(2) 공동기업체의 조합에 관한 정보교환

-공동기업체로서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단체 또는 다른 공동사업체로서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 간에 당해 입찰참가를 위해 공동기업체의 결성에 관한 사업자의 조합에 관해 정보교환을 하여서는 아니 됨

(3) 입찰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수준에 관한 정보교환 등

-입찰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준과 가격동향에 관한 정보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예정가격의 산정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의뢰를 받는 등에 대해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 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자 간에 정보를 수집·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 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아니 됨

## 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 부당한 공동행위로 주의해야 할 행위 유형

- 영업장소의 수 또는 위치를 제한하는 행위
- 특정한 원료의 사용비율을 정하거나 직원의 채용 또는 자유로운 기술개발이나 이용을 방해·제한하는 행위
- 광고의 내용, 횟수, 매체 등을 제한하거나 결정하는 행위

## 5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 ① 시정조치(법 제42조)

- 공동행위 행위자에 대한 당해 행위 중지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 ② 과징금(법 제43조)

- 공동행위 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의 20% 한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4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
- 여기서 매출액은 당해 공동행위의 대상이 되는 상품·용역의 법 위반 기간 중의 매출액이며, 입찰담합의 경우 입찰을 통한 계약금액임

### ③ 벌칙(법 제124조)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6 자진신고자 감경제도 (Leniency Program)

부당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가 그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과징금 또는 시정조치, 고발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제도

### ① 과징금 완전면제 및 시정조치 감경 또는 면제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에 협조한 자 중
  -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최초 제공한 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
  -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 ② 과징금 50% 감경 및 시정조치 감경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에 협조한 자 중
  -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 자
  -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 02 | 부당한 지원행위

### 1 부당한 지원행위

사업자 간, 특히 계열회사 간의 지원행위는 한계기업의 퇴출을 막거나 경쟁기업의 압박을 통하여 경제력 집중의 유지 및 확장수단이 되고 있으며, 또한 피지원 기업이 위치한 개별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도 침해하게 되므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됨

#### ① 부당한 지원행위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자금(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산(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상품·용역, 인력 등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통행세**)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 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특수 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해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 ② 부당한 지원행위의 판단기준

- 부당한 지원행위는 지원행위 여부와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위법성을 판단

#### (1) 지원행위 여부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 가격 보다 높거나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

↳ 정상가격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일감 몰아주기)

-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 효과가 지원객체에 과도하게 귀속되는 경우
-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유지가 가능하여 지원객체의 사업 위험이 제거되는 경우

※ 예외사유 :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으로 거래 목적달성에 불가피한 경우

#### (2) 지원행위의 예시

##### ① 부당한 자금지원(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거래한 경우)

- 회계처리 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현금 기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 지원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 준 경우
-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

- 보유하고 있는 지원객체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태만히 한 경우
- 임대료를 약정납부기한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경우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기타 자금의 거래에 의한 지원행위는 실제 적용된 금리가 당해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간에 지원주체의 지원없이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보다 낮은 경우에 성립함
- 다만,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의 자금거래에 의한 실제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와의 차이가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의 7% 미만이면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② 부당한 자산 지원(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거래한 경우)

-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가 정상가격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자산거래 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역외편드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기업어음 등을 저리로 매입하는 경우 [기업어음 또는 주식 고가매입]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지분을 전히 보유하고 있지 않은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한 경우 [주식 고가매입]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인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하여 증자 후의 지분율이 50/100 이상 증가하

는 경우(다만, 증자 전 제1대 주주이거나 증자 후 제1대 주주가 되는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하며, 의결권이 제한되는 계열 금융사 등은 제1대 주주로 보지 아니함) [주식고가매입]

-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지원객체에 매도하거나, 고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매수한 경우 [부동산 저가매도 또는 부동산 고가매수]
-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지원객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를 지원객체에 무상 양도하여 지원객체가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무체재산권 무상양도]

③ 부동산을 임대차한 경우

- 실제 임대료·임차료와 정상 임대료·임차료의 차이가 정상 임대료·임차료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부동산 임대차거래 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지원객체에게 공장·매장·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한 경우 [부동산 저가임대]
- 지원객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 [부동산 고가임차]

④ 부당한 상품·용역 지원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에 거래된 상품·용역의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가 정상가격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상품·용역 거래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한 경우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 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는 경우
-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 효과가 지원객체에 과도하게 귀속되는 경우
-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유지가 가능하여 지원객체의 사업 위험이 제거되는 경우

⑤ 부당한 인력지원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한 경우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당금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경우

⑥ 거래단계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한 경우

- 통상적인 직거래관행 및 기존의 거래형태와 달리, 지원객체를 통해 제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면서 실제 거래에 있어 지원객체의 역할을 지원주체가 수행하거나 지원주체와 지원주체의 역할이 중복되는 등 지원객체가 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경우

③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

-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집중이 야기되는 등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부당성이 인정됨

- ① 지원객체가 지원행위로 거래분야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 유지 또는 강화할 경우
- ② 지원객체가 속하는 거래분야에서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지원객체가 지원행위로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④ 지원객체가 속하는 거래분야에서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타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 ⑤ 불공정한 방법 또는 절차를 통해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④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가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 회사나 사업부문에 대하여 손실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채무보증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객체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지분비율에 따라 지원객체가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위탁 기업체가 사전에 공개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기업체(계열회사 제외)를 지원하는 경우
3.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하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해당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5.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건, 사회적 기업에게 각종 용역을 위탁하거나, 사회적 기업에게 시설·설비를 무상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

## 2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제재

### ① 시정조치(법 제49조)

-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 ② 과징금(법 제50조)

-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 ③ 벌칙(법 제124조)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이 주의해야 할 행위

- 특정사업자에 대해 조달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주는 행위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함으로써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 지원객체가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하였음에도 주식을 인수하는 행위
- 유상증자 주식의 발행가격이 주가추이, 주가전망, 재무구조 등에 비추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에 참여하거나 기존 주주인 특수관계인 등이 자기의 지분을 현저히 초과하여 인수하는 경우
- 지원객체에게 공장, 매장, 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한 경우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한 경우
- 인력파견 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경우

### 이것만은!

계열회사에게 공장, 사무실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해 주거나,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하고 인건비를 받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당 그룹에서는 다음 분기부터 계열회사 컨설팅을 전담하는 TFT를 만들어, 몇 개월 간 파견을 보내서 각 회사의 인력·행정·프로세스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솔루션까지 제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컨설팅 비용은 따로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02. 부당한 지원행위

Q&A ①

계열회사 간의 제반거래에 있어서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 계열회사 간의 거래에서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와 부당지원 행위가 주로 문제됨. 따라서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계열회사와 차별하여 계열회사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아울러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자금·자산·인력 등을 거래하는 방법으로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Q&A ②

계열회사에 직원을 파견할 경우 소규모 인원이라 비용 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는지?

- 특정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인원을 파견하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다수 계열회사들이 동시에 특정 계열회사에 인원을 파견한다면 인력을 통한 부당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부당지원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비용 정산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음

Q&A ③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적자에 허덕이는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거래시 특별한 역할이 없는 해당 계열회사를 거래 중간단계에 포함 시켜도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여 거래하면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 중 ‘통행세 지원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사례  
①

롯데피에스넷(주)가 ATM기를 제조사인 네오아이씨피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舊 롯데기공)을 통하여 구매한 사실이 있음. 위 기간 동안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는 네오아이씨피로부터 ATM기 3,534대를 66,635백만원에 매입하여, 롯데피에스넷에 70,786백만원에 판매함

- 롯데피에스넷(주)의 간접구매 방식은 당해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 불필요한 유통비용만 증가하였으며 어떠한 경제적 효율도 발생하지 않음. 롯데알미늄은 아무런 실질적 역할 없이 형식적 역할만을 수행하면서, 중간마진을 챙겨 재무구조가 현저히 개선됨. 이는 별다른 역할이 없는 계열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일종의 ‘통행세’를 챙기게 해 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며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에 위반됨

사례  
②

태광그룹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주)는 골프장 건설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골프장 착공 이전인 2008년 사전투자자를 모집하였으며, 태광그룹 9개사가 ‘회원금예치금’ 명목으로 골프장 회원권 72구좌를 총 792억원(구좌당 11억원)에 매입하기로 사전투자약정함. 태광그룹 9개사는 분양가격이 투자원금과 같음에도 사전약정에 따라 총 792억원에 해당하는 회원권 72구좌를 취득함

- 태광그룹 9개사의 본 건 거래행위는 회원권을 취득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골프장 건설자금을 선납 예치한 자금지원에 해당하며, 선납 예치금에 따른 적정 수준의 이자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았으므로, 동림관광개발(주)에게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을 제공한 것임. 이는 골프장 건설자금 마련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자금지원행위이며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에 위반됨

02. 부당한 지원행위

사례 ③

롯데칠성음료(주)는 주류 소매판매가 금지되는 당시 전업규정 때문에 백화점 등 소매채널을 통해 와인을 직접 판매할 수 없어, 와인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매법인 MJA가 필요하였음

롯데칠성은 자회사 MJA의 손익개선을 위하여, ①자신의 와인 공급가격에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MJA에 와인을 저가에 공급하였고, ②MJA의 판촉사원 용역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③자사 인력을 MJA 업무에 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 지원행위들을 통해 롯데칠성은 2009년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MJA에 대하여 총 35억 원의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

- 공정위는 롯데칠성이 백화점에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MJA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1억 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

사례 ④

HDC 그룹의 부당지원 행위

HDC그룹의 지주사는 경영위기에 처한 계열회사에 임대보증금 지급 후 운영권은 다시 위임하는 방식으로 약 360억원을 사실상 무이자로 장기간 제공함. 이러한 부당지원으로 관련 시장에서 퇴출 위기였던 계열사가 관련시장의 유력 사업자로 성장함

-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지원 행위를 탈법적 자금 대여로 규정, 과징금 171.3억원 부과 및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별점 5.5점)



사내 교육 자료  
(회사간 부당한 지원행위)

## 03 |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개요

| 유형                | 본문<br>보기 | 위법성 검사                         |
|-------------------|----------|--------------------------------|
| 거래거절              | 194p     | 경쟁<br>제한성<br><br>+<br><br>불공정성 |
| 차별적 취급            | 197p     |                                |
| 경쟁사업자 배제          | 205p     |                                |
| 부당한 고객유인          | 208p     |                                |
| 거래강제              | 212p     |                                |
|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남용    | 216p     |                                |
| 구속조건부 거래          | 223p     |                                |
| 사업활동 방해           | 226p     |                                |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 229p     |                                |
| 부당한 지원            | 180p     |                                |

### 《 위반 시 제재 》

| 구분                 | 과징금                                 | 벌칙                           | 비고         |
|--------------------|-------------------------------------|------------------------------|------------|
| 거래거절 ~ 사업활동 방해     | 관련 매출액의 2% 이내<br>(매출액 없는 경우 5억 이내)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br>1억5천만원 이하 벌금 | 동시적용<br>가능 |
| 부당지원<br>(특수관계인 포함) | 관련 매출액의 5% 이내<br>(매출액 없는 경우 20억 이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br>2억원 이하 벌금    |            |

## 1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개별행위 유형이 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해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공정거래저해성이란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

### ①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

- 경쟁제한성
  -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음을 의미
- 불공정성
  -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음을 의미
  -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과 질 이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
  - 거래내용의 불공정 성이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

### ②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없이'의 구분

- 공정거래저해성은 그 판단방법과 관련하여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없이'로 구체화됨
- '부당하게'
  -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불공정성과 효율성 증대 효과 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을 비교 형량하여 경쟁제한성·불공정성의 효과가 보다 큰 경우에 위법한 것으로 봄

-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봄

#### • '정당한 이유없이'

- '정당한 이유없이'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계속적 염매)에 대해서는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피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봄(대판2000두833판결 취지)

#### • '우려'의 의미

-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실제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의미
- 또한, 현재는 그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함

## 2 부당한 거래거절

사업자는 거래를 개시 또는 계속할 것인지 여부와 누구와 거래를 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한이 있으나 거래의 개시나 계속을 거절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가진다면 법에 위반됨

### ① 공동의 거래거절

-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공급거절,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 거래계속의 거절 등이 포함됨
  -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
- 위법성 판단기준
  -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 공동의 거래거절은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함

### ② 기타의 거래거절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 대상 행위

- 사업자가 단독으로 특정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

#### • 위법성 판단기준

- 거래거절 물품·용역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행위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

#### 이것만은!

☞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거래한 특정사업자와 거래를 중단 또는 수량을 현저히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포스코 00과장입니다. 이번 △△설비 00부품 구매 건에 관련해서 말인데요. 귀사에서 그동안 꾸준히 공급해 주셨는데 다음 달부터는 그러실 필요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구요? 저희가 뭐 그런 것까지 말씀드려야 하나요?”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 또는 상품·용역의 수량,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기타의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례**  
①

포스코는 협력작업 계약에 따라, 선재공장에서 제품소재 및 제품의 입출하·절단·연마 등의 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는 화성기업(주)의 대표에게 면담요청을 하여 협력작업에 대한 사업양도를 요구하였으며, 화성기업(주)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1999년 12월 3일 3년 기간으로 연장한 재계약의 만료시점인 2000년 3월 31일에 거래를 종료하고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한 사실이 있음

- 화성기업(주)는 포스코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많은 인력과 장비를 포스코 사업장에 투입하고 있으며, 본 협력작업과 같은 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포스코 이외의 거래처를 확보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포스코는 화성기업(주)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으며, 또한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기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협력작업에 대한 사업양도를 강요한 행위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경영간섭에 해당함
- 계약자유 원칙상 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른 재계약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자율적 판단사항이나, 본 건은 협력작업에 투입되는 인력과 설비규모, 대체거래선의 부재 등을 감안할 때 계속적인 거래가 전제 또는 예상되는 계약관계로서 사업양도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타당한 사유 없이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계획임을 통보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함

### 3 차별적 취급

사업자는 가격 등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나,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의 차별적 설정이 자기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할 경우 법 위반임

#### ① 가격차별

-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 대상 행위
  -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차별(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래조건도 포함)
- 위법성 판단기준
  - 행위자가 가격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지위를 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가격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가격차별 정도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가격차별에 의해 설정된 가격수준이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원가나 매입 원가에 미달하는지 여부
  - 가격차별이 지속적인지 여부
  -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가 가격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전환 용이성 여부 등

## ② 거래조건 차별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조건(수량, 품질, 규격, 대금지급조건, 인도 조건, 수송조건, 리베이트, A/S조건, 하자 책임기간 등)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 대상 행위
  - 가격 이외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계약의 이행방법 등 거래내용의 차별)
- 위법성 판단기준
  - 행위자가 거래조건 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지위를 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거래조건 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거래조건 차별 정도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거래조건 차별이 지속적인지 여부
  -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가 거래조건 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전환 용이성 여부 등

## ③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

-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 대상 행위
  -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는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 등의 차별 행위

## • 위법성 판단기준

-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계열회사에 대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 대해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

## ④ 집단적 차별

-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경우
- 대상 행위
  -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차별 취급하는 행위(합의가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으며, 반드시 행위가 발생해야 함)
- 위법성 판단기준
  - 행위자가 집단적 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지위를 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집단적 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집단적 차별 정도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집단적 차별이 지속적인지 여부
  -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가 집단적 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전환 용이성 여부 등

###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이 주의해야 할 행위

-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특정제품에 대해서만 대단히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 구매물량이나 거래기간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사업자에게만 지불조건을 현저히 유리하게 하는 행위
- 우리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래상대방과 그렇지 않은 상대방을 차별하여 시장지배력을 높이는 행위
- 우리 회사 제품만을 취급하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어음거래를 하면서 경쟁사 제품을 병행 판매하는 대리점에게는 현금거래를 강요하는 행위
- 계열회사와 거래하면서 비계열회사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낮은 대가를 받는 행위
- 계열관계에 있는 업체로부터는 어음으로 대금을 수령하면서 비계열관계에 있는 업체에게 현금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상품을 구입 또는 공급함에 있어서 사규, 공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계열회사와 우선적으로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유도하는 경우
- 우리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계열회사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당해 회사에게 짧은 기간 동안 물량을 현저히 늘리는 경우
- 대량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계열회사에 대해 같은 조건으로 구입하는 비계열 회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행위

### 이것만은!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에게만 가격, 수량, 품질 등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포스△△ 00과장입니다. 금번 00계약 건 말인데요. 같은 계열회사이고 하니 수수료 좀 더 싸게 할 수 없을까요? 다른 회사들보다 딱 0.5%만 할인받는 건 그리 큰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위하여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 내용에 관하여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 Q&A ①

동일한 제품을 경쟁이 낮은 곳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점에게 판매하고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 해당 여부?

- 기본적으로 판매가격은 제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수요가 매우 많은 지역에서 판매가격을 상대적으로 높게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합리적 차별이라 볼 수 있음

### Q&A ②

특정 판매점에게만 가격할인, 보조금 등 긴밀한 지원을 할 경우는?

- 운송비 차이나 거래량의 다과에 따른 합리적인 거래조건 차별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판매점에게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다른 판매점이 그 판매점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 가능성이 큼

**Q&A ③**

계열회사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수출물량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상사의 물량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경우 차별적 행위에 해당하는가?

- 물량 이외의 거래조건이 동일하다면 어느 상사에게 어느 정도 비율의 물량을 배정하는가는 자사의 재량이므로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단, 계약기간 중 물량감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Q&A ④**

물품을 구입하면서 비계열회사인 A사가 계열회사인 B사보다 견적가격을 싸게 제시하였음에도 B사와 거래하기로 하였다면 법 위반인가?

- A사가 공급하는 물품이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거나 불량률이 높은 등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면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단,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이 될 수 있음

**Q&A ⑤**

협력업체를 매 분기별로 평가하고 이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대금결제를 차별화할 경우 문제가 있는가?

- 인센티브 성격의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나 패널티를 부과하는 행위는 거래의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Q&A ⑥**

업체 선정 과정에서 가격이나 기술수준이 별 차이가 없을 경우 계열회사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가?

- 거래상대방의 선택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므로, 동일한 조건하에서 계열회사를 선정하였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음

**Q&A ⑦**

동일상품을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가?

-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가격의 기준을 정해 놓고 파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으로 보기 어려움.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다른 금리를 적용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차별로서 문제 삼기는 어려움

**Q&A ⑧**

대량구입과 소량구입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받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가?

- 판매물량, 거래기간 및 금액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가격을 달리 받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음

**Q&A ⑨**

우리 회사의 구매정책과는 무관하게 물품 판매업체의 영업정책상 우리 회사의 우수한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다른 회사에 비해 대금결제 조건을 유리하게 해주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가? 만일 계열회사가 그런 조건으로 원재료를 공급한다면?

- 모든 거래에 있어서는 항상 상대방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거래조건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음. 거래상대방이 계열회사인 경우에도 당해 회사의 영업정책이나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음

사례  
①

포스코는 1994년 1월~1995년 5월 중 열연코일을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에 판매하면서 판매대금을 비계열사인 동부제강(주) 등 5개사에게는 제품 출고 전에 선수어음 및 외상 30일로 받는 반면 계열회사인 (주)포스틸로부터는 제품출고 후 70일 만기어음으로 받은 사실이 있음

- 비계열회사인 동부제강(주) 등 5개사로부터는 선수어음을 받은 반면에 계열회사에게는 70일 만기어음을 수령함으로써 계열회사에게 판매대금 결제기간을 최고 70일까지 유리하게 한 행위는 거래규모, 판매가격 등 제요인을 고려하여 검토해 볼 때, 경쟁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차별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위하여 판매대금 결제조건에 관하여 현저하게 차별취급한 행위로 인정됨

사례  
②

(주)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계열사·자사(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 기간, 상영관 크기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

- 수직계열화 영화 대기업이 계열 배급사와 자사 영화를 유리하게 차별 취급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됨

## 4 경쟁사업자 배제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킨 후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당해 시장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경쟁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원재료의 상당량을 고가로 매입할 경우 이는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하므로 법 위반임

### ① 부당염매

-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 건설업계의 덤핑수주가 문제되려면

- 가격요건으로서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통상 총 판매원가로, 공공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원가 + 일반관리비'가 이에 해당
- 또한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하회하는 가격'에 대하여는 낙찰가격이 실행예산상의 '공사원가(직접공사비 + 공통가설비 + 현장관리비)'를 하회하는 가격인가 아닌가가 기준이 됨
- 가격요건으로서 '낮은 가격으로 응찰하는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낮은 가격응찰의 빈도, 파급성, 영향을 받는 사업자의 규모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됨

• 대상 행위

- 부당염매에는 계속적 염매와 일시적 염매
- 계속적 염매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공급비용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
- 일시적 염매란 일회 또는 단기간(1주일 이내)에 걸쳐 현저히 낮은 대가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

• 위법성 판단기준

- 염매행위가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자기 또는 계열 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경쟁제한성)가 있는지 여부
- 계속적 염매
  - 당해 시장에 진입장벽(예 : 규모의 경제, 사업영위 인허가, 거래비용 등)이 없어 계속적 염매로 인해 현재의 경쟁사업자들이 배제되더라도 신규 진입자가 잠재적 경쟁사업자로 대두될 수 있는 경우
  - 하자가 있는 상품,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 계절상품 및 재고의 처리를 위하여 제한된 물량의 범위내에서 염매를 하는 경우
  - 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많아 이를 반영하여 염매로 판매하는 경우
  - 신규개점 또는 신규 시장진입에 즈음하여 홍보목적으로 한정된 기간에 걸쳐 염매를 하는 경우
  - 파산이나 지급불능상태를 막기 위해 염매를 하거나 파산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업자가 염매를 하는 경우
  - 계속적 염매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일시적 염매
  - 염매행위를 하는 동기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하는데 있는지 여부

- 당해 염매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유지하기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거나 부도 등의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당해 시장의 경쟁구조, 당해 시장에서의 사업자 수가 적고, 집중도가 높을 경우에는 경쟁사업자 배제우려가 클 수 있음

② 부당고가매입

-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대상 행위
  -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행위(통상 거래가격이라 함은 당시의 시장에서 사업자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수준)
- 위법성 판단기준
  - 고가매입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이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수급이 원활한지 여부와 다른 대체재를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대체재가 존재하더라도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경쟁사업자 배제우려가 있을 수 있음)
  - 고가매입으로 인해 경쟁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거나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5 부당한 고객유인

사업자가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 거래방해 등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것은 그 경쟁수단이 불공정한 것으로서 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가 품질 좋고 저렴한 상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법 위반임

### ①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대상 행위
  -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는 행위
  - 이익제공 또는 제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표시·광고를 포함한 모든 경제적 이익 포함
- 위법성 판단기준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제공(제의)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과대한 이익에 해당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
  -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②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 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대상 행위
  -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유인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을 사용한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기만 또는 위계가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고객을 오인 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기만 또는 위계가 고객유인을 위한 수단인지 여부

### ③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대상 행위
  - 경쟁사업자와 고객의 거래를 방해함으로써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거래방해의 상대방은 경쟁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이며, 고객에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포함됨

• 위법성 판단기준

- 거래방해가 고객유인을 위한 수단인지의 여부
- 거래방해에 의해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중단시킴으로써 자기와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사례 ①

(주)충남도시가스는 대전열병합발전(주)이 대전시 서구 월평동 소재 국유부동산개발 빌딩의 시공사 현대건설(주)과 2007. 11. 2. 열 수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분담금(213,000천원)까지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07. 11. 21. 현대건설(주)에 다음과 같이 시설분담금 전액면제, 기 납부한 시설분담금 환불 문제 해결 등의 거래조건을 제시하면서 현대건설(주)로 하여금 대전열병합발전(주)과의 계약을 파기하도록 유인함

첫째, 대전열병합발전(주)의 시설분담금이 647,165,658원인 반면 (주)충남도시가스는 315,469,680원으로 331,695,978원이 저렴하며 시설분담금 전액을 면제함. 이는 기 납부한 시설분담금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4억4천만 원의 투자비가 절감됨

둘째, 기 납부된 시설분담금의 환불 가능여부는 당사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하여 알려 줄 것이며, 현재 설계 및 착공 전이므로 시설분담금 환불여부에 대한 문제만 발생하나, 향후 대전열병합발전(주)과 법적 분쟁 발생시 책임지고 해결함

- (주)충남도시가스 행위는 시설분담금 면제 또는 시설비 지원에 그치지 아니하고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보상을 제시한 것은 경쟁사업자의 고객에게 계약파기를 유도하여 계약파기 후 자신이 거래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심인의 계약파기 유도행위는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로 인정

사례 ②

국제약품(주)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약 17억6천만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함

-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2억5천2백만원 부과

## 6 거래강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또는 자사 직원 등으로 하여금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을 확보하는 행위로서, 불합리한 수단으로 시장지배력의 확장을 도모하며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제약하므로 법 위반임

### ① 끼워팔기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 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대상 행위
  -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 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끼워팔기를 행하는 주체는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을 동시에 공급할 수도 있고, 자기가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종된 상품(또는 용역)을 공급하게 할 수 있음
  -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외에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
- 위법성 판단기준
  -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이 별개의 상품(또는 용역) 인지 여부
  - 끼워팔기하는 사업자가 주된 상품(또는 용역)시장에서 시장력이 있는지 여부
  -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 하는 지 여부
  -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

### ② 사원판매

-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이 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대상 행위
  -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임직원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 또는 판매를 강제하는지 여부
    - 목표량 미달시 인사고과 불이익, 판매목표 미달분을 역지로 구입하도록 하 거나, 목표달성 여부를 고용관계와 결부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강제성 인정
    - 임직원에게 판매목표를 개인별로 설정한 후 이를 달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판매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원이나 최고경영층에 주기적으로 보고 하는 경우
    - 목표량 달성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임직원에게 불이익을 가하지 않고 단 순히 자기회사 상품(또는 용역)의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달성할 것을 단순 촉 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음
  - 임직원에 대한 구입(또는 판매)강제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잠재적 고객 포함) 을 자기 또는 계열회사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 ③ 기타의 거래강제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대상 행위
  -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 당해 불이익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
  -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

#### 사례 1

(주)대우건설은 2003. 6.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하여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5. 12. 9. 사용검사가 완료되어 2006. 1. 10. 입주자들이 입주를 하게 되자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대한 업무대행 법무사를 지정한 후, 대출 세대의 경우 이들 지정 법무사에게만 등기업무를 위임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있음. 특히, 피심인은 분양세대에게 발송한 아파트 입주 안내문에 대출세대의 경우 반드시 지정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토록 하는 사항을 명시함

- 피심인은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피심인이 연대보증한 대출을 이용한 분양세대로 하여금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업무를 피심인이 지정한 법무사에게만 위임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됨

## 7 거래상 지위남용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 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므로 법 위반임

### ■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 계속적 거래관계 존재 여부,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 의존도(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가 상당한지 여부, 시장상황, 거래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예시) 본사와 협력업체 또는 대리점, 대형소매점과 입점업체, 도시가스사와 지역 관리소, 제조업체와 부품납품업체, 지역독점적 공공시설 관리업자와 시설 임차사업자, 독점적 공공사업자와 계약업체, 방송사와 방송프로그램 공급 사업자 등 간 거래관계

### ① 구입강제

-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대상 행위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구입요청을 거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구입강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
  -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는 행위

###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구입강제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등

### ② 이익제공 강요

-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금전·물품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거래 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토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
  - 판매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 부담·인력 파견을 강요하고, 인건비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이익제공 강요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등(당해 행위의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당해 이익제공의 내용과 성격,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③ 판매목표 강제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대상 행위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 제품 공급 중단 등을 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 판매목표의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 등
-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대리점 계약의 해지나 판매수수료의 미지급 등 불이익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되나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판매목표가 사용되는 경우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음. 다만, 판매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④ 불이익 제공

-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거래상대방에게 일반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포함)
  - 거래상대방에게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계약 기간 중 부당한 거래 조건을 추가하거나 계약 해지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을 설정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 설정, 변경된 거래조건과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 등
-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 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 판단

#### ⑤ 경영간섭

- 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 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대상 행위
  -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 판매처의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자금 출납 등 사업 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경영간섭이 부당한지 여부 등
  - 경영간섭의 의도 및 목적,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경영 간섭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 판단

###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이 주의해야 할 행위

- 거래처에 대하여 구입하지 않으면 향후 계속적인 거래에 영향을 받을 것임을 직·간접적으로 알려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 구입할 의사가 없는데도 계속 구입을 요청하거나 일방적으로 밀어내기 하는 경우
- 독과점적 지위의 강화, 판매지역 제한, 밀어내기 등 공정거래법상 위법·부당한 행위를 달성할 목적으로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경우
- 거래상대방에게 매월 일정액 이상의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실제 판매액이 목표액에 미달했을 경우 목표액과 실제 판매액과의 차액을 실제로 판매한 것처럼 처리하는 경우
- 판매점에게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공급중단, 벌과금 부과,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가하거나, 목표달성을 강요하는 규정을 설정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과 제품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설정하는 경우
- 판매물량에 상응하는 부동산 등 담보를 제공받으면서 대금결제의 이행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당좌수표 또는 백지어음을 예치토록 하거나 연대보증인의 입보를 요구하는 등 이중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불량제품이 발생한 경우 교환비용의 일부를 판매점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거나 반품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경우
- 월초에 설정한 대리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소급 적용하는 경우
- 임직원의 선임·해임·변경 등에 대하여 우리 회사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 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판매점의 임직원을 일정수 이상 유지하도록 하거나 업무용 차량을 몇 대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행위

- 경영지도라는 명목하에 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과도한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납품업자가 타 거래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경우

### 이것만은!

**☞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 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안 됩니다.**

“포스코 00과장입니다. 귀 사의 △△과장님 계시죠? 전 이 사람이 귀 사에서 근무하는 한 계속 거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매너도 없고, 매번 약속을 어기니까 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당장 내보내시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시든지 안하면, 다신 귀사에 발주하는 일 없을테니 그리 아세요.”

☞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 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합니다.

**사례 1**

에스케이치공사는 2005년 9개 용역업체에게 ‘동부권역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사설계용역’ 등 4건의 용역을 경쟁 입찰로 위탁하였고, 이후 자신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시 최초 낙찰률보다 낮은 낙찰률을 적용하여 단가 및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음에 계약시 정한 단가산정 기준에 따른 최저금액 보다 총 564,171,000원을 감액함

- 에스케이치공사는 자신의 조사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업체에 대한 계약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설계변경사항과 관련하여 증가물량 등의 단가를 계약서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정기준보다 낮게 적용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임

**사례 2**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2013년 5월까지 1,849개 대리점 전반에 걸쳐 유통기한 임박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 등을 강제 할당·임의공급방식으로 구입을 강요하고,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파견하는 진열 판촉사원의 파견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고용·관리하였음에도 대리점과의 사전협의 없이 진열 판촉사원 임금을 50% 이상 전가함

- 남양유업은 법률자문·내부검토 등을 통해 대리점에 임의적 주문할당이 위법한 구입 강제에 해당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지속하였으며, 진열 판촉사원 투입 및 교체여부를 결정하고 근무시간, 근태관리 및 급여 등 제반사항을 결정·관리하는 등 실질적 고용주임에도 대리점에 급여를 부담시킨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임

## 8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구매·유통경로의 독점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곤란하게 한다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후생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법에 위반됨

### 1 배타조건부 거래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경쟁사업자가 대체적 물품 구입처 또는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당해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침해받는지 여부
  -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업계순위(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위반 가능성이 높음)
  - 배타조건부 거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수 및 시장점유율(상대 사업자의 숫자가 많고 그 시장점유율이 높을 경우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음)
  - 배타조건부 거래의 의도 및 목적
  - 배타조건부 거래가 거래지역 제한 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타 경쟁제한 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 ②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의 판매지역을 구속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정도(지역제한을 하여도 제재가 없는 등 구속성이 엄격하지 않은 지역제한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
  - 당해 상품 또는 용역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 되어 있는지 여부
  -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경쟁사업자의 숫자와 시장점유율
  - 지역제한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타 불공정행위와 병행하여 행해지거나 재판매가격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 당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서비스 질 제고 및 가격 인하 유인이 축소되는지 여부 등

**사례 1** 크라운제과는 자신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과 거래함에 있어서 계약서상에 대리점이 관할 영업구역 외에서 영업을 할 때 피심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대리점이 관할 영업구역을 이탈하여 거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크라운제과는 자신의 대리점과 거래함에 있어 대리점의 거래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 기준, 일정한 판매지역을 할당해 주고 해당 판매지역 내의 소매점등과

거래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즉, 대리점이 크라운제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해당 판매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 판매할 경우 사전에 크라운제과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점이 피심인에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판매지역 이외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피심인과 대리점 간에 체결한 거래약정에 따라 피심인이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위 행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임

**사례 2** KT&G 수도권 3개 지사·지점은 관할지역 담배소매상들에게 경쟁사업자 담배를 한시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담배대금을 할인해 주고, KT&G 서울지역 4개 지사·지점은 2005년 8월 18일 출시한 ‘로크릭스(LOCRIX)’의 판매량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관할구역 내 담배소매상들에게 로크릭스의 동종 담배라 할 수 있는 경쟁사업자들의 타르 6mg급 담배를 일정기간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담배대금을 할인해 주었음. 또한, 경쟁사업자의 담배 및 담배광고물을 매장에 진열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도 있음

- KT&G는 자기 담배의 가격·품질 및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소매상과 약정을 맺어 이들과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제약하는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인위적으로 담배소매상에 대한 자신의 담배 수요를 유지 또는 창출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였던 바,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5호(부당한 고객유인)에 위반됨

## 9 사업활동 방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거나 거래처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할 경우 가격과 질, 서비스에 의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쟁수단이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에 위반됨

### ① 기술의 부당이용

-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대상 행위
  -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이용하는 행위(다른 사업자의 '기술'이란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되거나 비밀로 관리되는 생산방법·판매방법·영업에 관한 사항 등을 의미)
- 위법성 판단기준
  - 기술이용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
  - 기술이용의 목적 및 의도, 당해 기술의 특수성, 특허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통상적인 업계 관행 등을 고려
  -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②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대상 행위
  -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유인·채용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인력유인 채용의 목적 및 의도, 해당 인력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 인력유인·채용에 사용된 수단, 통상적인 업계의 관행, 관련 법령 등을 고려
  -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의해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③ 거래처 이전방해

-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의 거래처이전을 방해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거래처 이전방해의 목적 및 의도, 거래처 이전방해에 사용된 수단, 당해 업계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이전될 거래처가 사업영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관련 법령 등을 고려
  -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의해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④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이전방해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대상 행위
  -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방해하는 모든 행위
  - 방해의 수단을 묻지 않으며, 자기의 능률이나 효율성과 무관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활동방해의 수단, 당해 수단을 사용한 목적 및 의도, 당해 업계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 법령 등을 고려
  -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도발생 우려,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10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이나 특수관계인이 20%(비상장 20%, 상장 30% → 20%로 일원화 입법 추진 中)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①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②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 ③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④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자금/자산·상품·용역/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용역의 경우 200억원) 미만인 경우

##### (2) 사업기회의 제공

-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 (3)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 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거래당사자 간 상품·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이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
  -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①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판매량 증가, 품질개선 또는 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
- 가. 상품의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경우

나. 회사의 기획·생산·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 연관성이 높은 계열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다. 주된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회사의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회사가 전담하고 그 일부 사업과 관련하여 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라.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

마. 거래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 현황, 대규모·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의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 ②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 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공장, 연구개발시설 또는 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의 구축·운영, 핵심기술의 연구·개발·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
- 나. 거래 과정에서 영업·판매·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

#### ③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전산 시스템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 04 | 공시제도

### 1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의 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 및 용역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함

#### ①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개관

- 자본총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본 총계를 기준으로 함
-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일 전일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함
  - 이사회 의결일 이전에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는 이를 포함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함
- 적용대상거래에는 특수관계인을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으로 한 경우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도 해당
  - 계열회사 발행 유가증권을 비계열 금융회사를 통하여 인수한 경우도 내부거래에 해당
  - ‘특수관계인을 위하여’란 특수관계인을 직접적인 상대방으로 하지는 않으나,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를 의미함(대출액, 이윤, 순이익률, 현금흐름, 자본시장에서의 접근 가능성, 계열회사의 자금력 등을 고려함)

#### ■ 특수관계인(공정거래법시행령 제14조)

- 당해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동일인)
- 동일인 관련자
  - 동일인 관련자에는 동일인의 친족(배우자(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포함), 혈족 4촌, 인척 3촌),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지배하는 계열회사와 비영리법인 및 그 임원 등이 포함(시행령 제4조 제1호)
-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 ② 적용 대상회사 및 대상거래

##### (1) 법 적용 대상회사 : 공정거래법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 포스코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므로 본 규정의 적용을 받음

##### (2) 적용 대상거래 : 자금, 자산,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 ① 자금거래

-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 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회계 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국한 되지 않음)

###### ② 유가증권거래

-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 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행위를 포함

###### ③ 자산거래

-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자산은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말하며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를 포함함

- 단, 상품 및 용역거래의 경우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인 기업집단(포스코, KT 등)에 소속된 회사는 적용되지 않음

↳ 상품·용역거래는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계된 경상적 거래로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 상품·용역거래인 경우 양 당사자 모두 상품·용역 거래로 봄

• 적용 대상거래의 판단

-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함
-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회피하고자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1건의 거래행위를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1건의 거래행위로 간주
- 동일 거래상대방과 같은 날 약관에 의한 여러 건의 기업어음거래가 동일 조건(발행일, 기간만료일, 이자율 등)으로 거래되는 경우 하나의 차입행위로 보아 기업어음의 금액을 합산하여 공시의무 여부 판단
- 계약서상 자동 연장 조항에 의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연장 여부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해야 함

• 대규모내부거래의 예외 조항

- 이전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새로운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

■ 다른 의결 및 공시대상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 채권, CP매입 또는 장·단기 차입 후 이를 만기 상환하는 경우  
단, 차입금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 그로 인해 이미 공시한 사항의 주요내용인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이 변경될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
- 상품, 금융거래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할부금융이나 카드 결제

-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거래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없는 행위

■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거래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 주식을 계열 증권사를 통하여 장내 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 자산운용사와 계열증권사 간 수익증권 위탁판매 계약 체결

### ③ 거래금액의 산정

- 자금·자산·유가증권 거래 : 실제 거래금액
- 담보제공 : 담보한도액
- 부동산 임대차 거래  
- 연간 임대료 + 환산 연간임대료(보증금 × 이자율\*) - 연간 관리비

\*이자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 ④ 공시시기 및 절차

• 공시시기

-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에 공시해야 함(단, 비상장사 또는 비등록법인은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 공시)
- 공시하여야 하는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해야 함(7일의 기간 계산은 비영업일을 포함하며, 비영업일은 당해회사의 비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공시절차

-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전산망을 통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

## ⑤ 공시내용 및 서식

- 공시내용
  -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거래의 목적 및 대상, 거래의 상대방, 경쟁입찰·수익계약 등 계약체결방식(상품·용역 거래에 한함)
  - 거래의 금액 및 조건,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등 주요 내용을 명기하여 공시하여야 함
- 공시양식
  - 수탁기관이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을 준용함

## ⑥ 주요내용의 변경

- 이미 공시한 사항 중 다음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다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여야 함
  - 거래목적, 거래대상, 거래상대방의 변경
  - 거래금액, 거래조건(단가, 약정이자율 등)이 당초 보다 20% 이상 증가 또는 감소

## ⑦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대한 특례

- 금융업 또는 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분기 별로 일괄하여 할 수 있음(다만, 수익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당해 기간동안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음)
- 계열 금융회사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당해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거래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조건 등 주요 내용을 공시하여야 함

-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행위 후 1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비상장법인은 당해 금융거래행위 후 7일 이내에 공시할 수 있음)
-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만기와 중도환매수수료가 없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의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분기별로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음

###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예시》

|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인 경우                                                                                                                                                                                                                                                                                                                                                                                               |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가 아닌 경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열사 주식을 거래소 시장에서 매매하는 경우</li> <li>· 계열사 발행 유가증권을 계열금융사가 인수·매입하는 경우</li> <li>· 채권(회사채, CP등)을 증권사가 계열사와 매매하는 경우</li> <li>· CP 중계·인수·할인 등의 매매행위</li> <li>· 단기금융상품을 계열증권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경우</li> <li>· 초단기 단기금융상품(MMT 등)을 계열증권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경우</li> <li>· 계열 생보사에 종퇴보험, 퇴직보험, 손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li> <li>· 콜자금을 차입 또는 대여한 경우</li> <li>· 투신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계열사 주식·채권을 매입하는 경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계열사 주식을 장외에서 매매하는 경우 등 특정조건을 부기한 금융거래</li> <li>·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 등 금융·보험회사가 일상적인 거래분야가 아닌 경우</li> </ul> |

## ⑧ 상품 또는 용역의 대규모 내부거래행위에 대한 특례

-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상품 또는 용역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음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이 이사회에서 의결한 거래금액의 20% 이상 감소

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종료후 45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을 공시해야 함

- 분기 전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이사회의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 분기 중에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시해야 함
-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계약건별로 계약체결방식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여야 함(다만, 이사회 의결시점에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 건별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의 대상 금액 등 주요 내용에 대하여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할 수 있음)

## 9 다른 법과의 공시내용 중복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의한 공시사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신고하면 본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다만 그 경우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해야 함

## 10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의 불성실행행위

-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는 행위
- 공시한 사항 중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는 행위
- 대규모내부거래를 하였음에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
-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이사회 의결 또는 공시하는 행위

## 11 위반시 과태료 부과

### (1) 기본금액

| 위반유형              |            |                |                                                          | 과태료금액<br>(단위 : 만원)                                                    |
|-------------------|------------|----------------|----------------------------------------------------------|-----------------------------------------------------------------------|
| 이사회 의결 여부         | 공시 여부      | 공시기한 준수 여부     | 누락 또는 허위 공시 여부                                           |                                                                       |
|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     | 공시하지 않은 경우 | -              | -                                                        | 5,000                                                                 |
|                   | 공시한 경우     | 공시기한 까지 공시한 경우 |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 보완한 경우 | 500(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            |                |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경우                                          | 2,000                                                                 |
|                   |            | 공시기한을 넘긴 경우    |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 보완한 경우를 포함한다) | 500(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 공시하지 않은 경우 | -              | -                                                        | 7,000                                                                 |
|                   | 공시한 경우     | -              |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하지 않은 경우                                      | 5,000                                                                 |
|                   |            |                |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경우                                          | 7,000                                                                 |

### (2) 기준금액

- 기준금액은 기본금액에 각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거래 금액            | 적용 비율(%) |
|------------------|----------|
| 100억원 이상         | 100      |
| 8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 90       |
| 60억원 이상~80억원 미만  | 80       |
| 40억원 이상~60억원 미만  | 70       |
| 20억원 이상~40억원 미만  | 60       |
| 20억원 미만          | 50       |

### (3) 임의적 조정금액

- 임의적 조정금액은 다음의 가중 또는 감면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하되 임의적 가중금액은 기본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 ▶ 임의적 조정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임의적 감면금액
- ▶ 임의적 가중금액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 가중비율의 합계
- ▶ 임의적 감면금액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 감면비율의 합계

#### • 가중 조정사유 및 비율

-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50%
- 과거 3년간 공시의무의 위반으로 5회 이상 경고를 받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중복 위반 횟수에 따라 6회 처분부터 1회당 10%씩 가산)

#### • 감면 조정사유 및 비율

- 거래내용이 최초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30%
- 계열 금융 투자회사에 의한 사실상의 중개금융거래로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계열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40%
-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의해 설립된 민간투자 사업자로서 이해관계인이 적고 부당 내부거래 가능성이 적은 경우 50%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
  -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또는 개별회사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 사례 ①

포스코계열회사 △△는 2011년 11월 포스코로부터 유상증자(52억원) 받은 사실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마치고 기한 내에 공시하였으나, 공시항목 중 주요 사항인 증자 참여자 및 회사와의 관계를 누락하고 기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사항 작성시, 유상증자 참여자 / 유상증자내역 / 회사와의 관계 등은 공시항목 중 주요사항에 해당하여 이를 미기입할 때에는 공시사항 누락에 해당하게 됨

#### 사례 ②

포스코계열회사 △△은 포스코로부터의 부동산 매수 관련 대규모내부거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하면서, 거래일자를 누락하여 공시한 사실이 있음

- 공시일 당시, 해당 부동산의 매매일자가 이사회 의결일과 공시일 사이로 계약서상 확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매매 일자는 공시 이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잘못 기재하였음. 이는 주요 공시사항에 대한 누락으로 인정

#### 사례 ③

포스코계열회사 △△는 포스코건설로부터 2억1천5백만원을 차입받기로 결정하고 이사회 의결(2012. 12. 21)하였으나, 이에 대한 공시를 지연한(2013. 3. 29) 사실이 있음

- 대규모내부거래사항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상장사는 1일 이내, 비상장사는 1주일 이내 DART 공시해야 함

## 2 비상장사 중요사항 수시공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회사는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재무 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공시를 하여야 함

### ① 비상장사 중요사항 수시공시 개관

- 공시대상회사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에서 규정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단, 금융·보험사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
- 연도 중에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신규 편입된 회사는 신규 계열편입된 날로부터 공시의무가 부과
  -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타법인 주식을 30% 이상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편입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공시 의무가 없음
- 연도 중에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부터 계열 제외된 회사 또는 기업집단으로 부터 지정 제외된 기업집단은 계열 제외 또는 지정 제외된 날로부터 공시의무가 면제

#### ■ 주식보유 변동의 공시기준일(변동일)

-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 주권을 교부받은 날
-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 : 주금 납입일의 다음날
- 회사지분 양수시 : 지분 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 주식소유비율이 변동하는 경우 : 변동이 확정되는 날

## ② 공시대상 업무

### (1)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현황 및 변동

| 공시항목             | 공시기준일 | 공시기준           | 비고                   |
|------------------|-------|----------------|----------------------|
| 최대주주의<br>주식보유 변동 | 변동일   | 변동비율 1% 이상     | 최대주주 중 구성원<br>변동도 공시 |
| 임원의 변동           | 등기일   | 변동 내용(신임/해임 등) | 등기부등본 기준             |

- 최대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비율이 당해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 그 변동사항
  - 합병, 신주발행, 주식매각 등 변동 사유는 불문함
  - 액면분할 등에 의해 보유주식 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현황 및 비율이 변경 되지 않으면 공시의무 없음
  - 최대주주가 다수인 경우 각각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 공시
  - 최대주주의 주식수나 지분을 변동이 없을 경우에도 최대주주 구성원의 변동이 있으면 공시
  - 최대주주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동일인, 동일인의 친족, 계열회사, 등기임원 등이 보유한 지분 및 자기 주식을 각각 구분하여 적시
- 임원의 구성현황 및 변동이 있을 때 그 변동사항
  - 임원이 중임된 경우에는 변동이 아니므로 공시의무가 없으나,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예) 이사가 감사로, 이사가 대표이사)에는 임원의 변동이므로 공시해야 함

(2)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공시항목                   | 공시기준일            | 공시기준                    | 비고                                    |
|------------------------|------------------|-------------------------|---------------------------------------|
| 비유동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이사회 (대표이사) 의 결정일 | 자산총액의 10% (납입자본금의 10%※)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 모두 포함 (ex. 건설 중인 자산) |
| 타 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의 취득·처분 |                  | 자기자본의 5%                | 타법인 (국내·해외계열회사 제외)                    |
| 증여 또는 수증               |                  | 자기자본의 1%                | 무상으로 타인과 재산을 주고 받는 모든 행위              |
| 타인을 위한 담보 제공 또는 채무보증   |                  | 자기자본의 5%                | -                                     |
| 채무의 변제 인수              |                  | 자기자본의 5%                | -                                     |
| 증자 또는 감자               |                  | 결정 여부                   | 최대주주의 지분변동 공시 해당 여부 확인                |
| 전환사채·신주인수 권부 사채발행      |                  | 결정 여부                   | 추후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사채에 한정함                |

※ : 새로 설립된 회사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함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비유동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그 결정사항
  - 비유동자산은 회계기준에 따라 분류되는 항목이 포함 (건설 중인 자산, 투자유가 증권도 포함)
  - 공시기준일은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이므로 건설 중인 자산으로서 수년에 걸쳐 지급되는 공사비가 기준금액을 과하더라도 공시대상이 아님
- 자기자본의 5% 이상의 타 법인(국내·해외 계열회사 제외)의 주식 및 출자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그 결정사항

- 자기자본의 1% 이상의 증여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및 증여를 받기로 한 때 그 결정사항
- 자기자본의 5% 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그 결정사항
  - 공정거래법 제24조에서 말하는 채무보증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채무 보증인 사항은 모두 포함
  - 따라서, 해외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담보제공일 경우도 공시대상
- 자기자본의 5% 이상의 채무를 면제·인수하기로 결정한 때 또는 채무를 면제 받기로 한 때 그 결정사항
-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그 결정사항
  - 기준금액이 없으므로 해당결정이 있을 때에는 공시사유가 됨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그 결정사항
  - 모든 사채가 아니며, 추후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사채에 한정 됨

■ 적용기준

- 자기자본 :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해 산정
 
$$\text{자기자본} = \text{자산총액} - \text{부채총액} \pm \text{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자기자본액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12월 결산법인 : 금년 4. 1 ~ 다음해 3. 31)
-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최근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 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 대신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함

### (3) 회사의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공시항목                                | 공시기준일                 | 공시기준 | 비고                                        |
|-------------------------------------|-----------------------|------|-------------------------------------------|
| 영업의 양도·양수                           | 이사회<br>(대표이사)의<br>결정일 | 결정여부 | 상법 제374조에 근거                              |
| 주식교환 및<br>주식 이전                     |                       | 결정여부 | 상법 제360조2의 규정과<br>제360조15에 근거             |
| 회사합병·분할                             |                       | 결정여부 | 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br>제527조의3, 제530조의2에 근거 |
| 해산사유 발생,<br>회생절차, 관리절차의<br>개시, 중단 등 |                       | 결정여부 | 상법 제517조에 근거                              |

-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제527조의2(간이합병)·제527조의3(소규모합병)·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에서 규정한 사실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그 결정사항
-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또는 주식이전 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따른 주식이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사항
- 「상법」 제517조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폐지 및 「화의법」에 따른 화의개시 또는 폐지결정이 있을 때 그 결정사항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4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 규정에 의한 관리절차의 개시·중단·해제가 결정된 때 그 결정사항

### ③ 공시시기

#### (1) 공시시기 :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 ※ 단, 임원변동현황 공시는 분기 공시(등기일 속한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 7일 이내에는 공휴일도 포함되며, 7일째 되는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최초 영업일 까지 공시
- 기간 계산은 사유발생일부터 하되 공휴일도 포함하여 계산함

#### (2) 사유발생일 기준

- 소유지배구조 관련 ‘변동이 있을 때’란
  - 주식을 교부받은 날,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 권리가 이전되는 날
  -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날(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
  -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 그 외의 경우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 그밖의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주식소유비율의 변동이 확정되는 날
- 임원의 ‘변동이 있을 때’란 등기부등본상에 임원이 등재된 날
- 재무구조 관련 ‘결정이 있을 때’란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이 있을 때

### ④ 공시방법 및 절차

- 중요사항 공시대상 비상장회사 등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
- 공시양식은 금융감독원이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 준용. 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름

### 3 기업집단현황 공시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분기별 또는 연 1회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 ① 기업집단현황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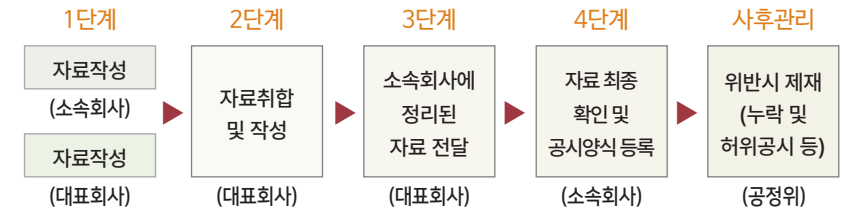
##### (1) 도입배경

- 사전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2009. 3. 3 국회통과)하는 대신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시장감시장치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기업 스스로 기업집단 전체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고 포괄적으로 공개하고, 공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

##### ■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와 기존의 공시□공개제도의 차이점

- 공정위가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유지분구조를 공개하는 제도와 중복 되지 않나요?
  - 정보공개제도는 출자현황 등 소유지배에 관련된 정보만을 공정위가 공개하는데 비해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는 소유지배구조 외에 해외계열회사현황, 거래현황 등을 기업 스스로 공개하는 차이
- 기존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제도',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제도' 등 기존의 공시제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기존의 공정위 공시제도, 한국거래소 공시제도 등은 개별회사가 개별 거래 건에 대해 공시하는 제도로 기업집단 전체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함
- 연결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로 기업집단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지 않나요?
  - 연결재무제표는 회사 간 지배-종속관계를 전제로 하여 작성되고, 결합재무제표는 2009년의 경우 작성 기업집단이 14개에 불과하여 기업집단 전체현황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음

#### (2) 공사업무 PROCESS



- **소속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당해 회사로, 기업집단 현황공시 자료를 작성하고 공시할 의무가 있는 회사
- **대표회사**: 당해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들을 대표하는 회사로서 소속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공시하고, 소속회사가 작성하기 곤란한 사항을 작성하여 공시할 책임이 있는 회사

#### (3) 공시의무대상 회사

| 구 분     | 대표회사                           | 소속회사                           |
|---------|--------------------------------|--------------------------------|
| 해당회사    | 포스코홀딩스(주)                      | 포스코기업집단 소속<br>국내 소속회사          |
| 공시사항 작성 | 자기회사 관련 내용을 작성                 |                                |
| 공시내용    | 자기회사 관련 공시사항<br>소속회사로부터 취합한 내용 | 자기회사 관련 공시사항<br>대표회사의 공시를 참조공시 |

## ② 공시내용

### (1) 공시양식 1~6(연 1회)

| 공시항목      | 공시 주체                      | 공시 기준                               | 공시 기준일               | 공시빈도 |
|-----------|----------------------------|-------------------------------------|----------------------|------|
| 회사개요      | 소속회사                       | 회사명 , 대표자, 설립일, 업종, 종업원수 등 회사의 개요   | 금년도 지정일              | 연 1회 |
| 재무현황      |                            | 개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직전 사업 연도말 기준         |      |
| 손익현황      |                            | 개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                      |      |
| 해외계열 회사현황 | 해외계열회사에 최다출자한 소속회사         | 해외계열회사 일반현황 (회사명, 업종, 소재지)          | 금년도 지정일              |      |
| 계열회사 변동내역 | 계열편입 : 편입회사<br>계열제외 : 대표회사 | 국내 및 해외계열회사 변동 내역을 공시               | 전년도 지정일 ~ 금년도 지정일 전일 |      |
| 임원현황      | 소속회사                       |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임원 (성명, 직위, 등기일, 경력 등) | 금년도 지정일 기준           |      |

▶ 계열회사 변동내역은 공시기한 중 변동된 계열회사만 작성

### (2) 공시양식 7 :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운영, 주주총회 관련제도, 소수주 주권 등의 운영현황(연 1회)

#### • 이사회 운영 현황

| 계열 회사명 | 이사회 구성원명 | 이사회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참석수 |
|--------|----------|--------------|-----------|----------|----------|
| 회사명    | 위원이름     | XXXX. 00. 00 | OOO 설립의 건 | 가결 or 부결 | 참석 여부    |

- 공시기준 : 전년도 지정일부터 금년도 지정일 전일까지

#### •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운영현황

- 상법 제393의2조에 따른 위원회(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등)에 한하여 기재

- 공시기준 : 전년도 지정일부터 금년도 지정일 전일까지

#### • 기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관련제도 운영현황

- 각 제도(집중·서면·전자투표제)의 도입 여부를 정관내용 기준으로 하여 해당란에 O, X로 표시

- 공시기준 : 금년도 지정일 기준

#### • 소수주주권 행사내용

- 소수주주권 행사내용, 행사자, 행사 사유 등을 기재

- 공시기준 : 전년도 지정일 부터 금년도 지정일까지

### (3) 공시양식 8 : 소유지분현황(연 1회)

#### • 공시대상 : 소속회사의 소유지분현황

#### • 공시기준 : 금년도 지정일 기준

- 소유지분현황(주주현황)을 동일인측과 기타주주로 구분하여 보통주·우선주의 주식수와 지분율로 작성

#### • 지분율 계산법

• 보통주 지분율 = (보유 보통주수/총 발행 보통주 주식수) × 100

• 우선주 지분율 = (보유 우선주수/총 발행 우선주 주식수) × 100

↳ 동일인 측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최대주주와 동일인 측의 주식소유 상세내역을 함께 공시하고 자기 주식은 최대주주에 포함하여 계산하되 자기 주식이라고 표시

#### (4) 공시양식 9 : 계열회사 간 주식소유현황(분기 1회)

- 공시대상 : 소속회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 보유현황(상법상 회사만 해당)
- 공시기준 : 직전 분기말 장부가액  
※ 직전분기말 장부가액이 없거나 평가하지 않은 경우는 최근 검토보고서 내지 직전 사업연도말 장부가액 기준(단, 주석으로 표기)

#### (5) 공시양식 10~11 : 자금 차입현황(분기 1회)

- 공시대상 : 해당분기 중 발생한 순수 자금 차입약정 등을 통한 차입금을 기재  
(제외대상 : 사채, 기업어음 등 유가증권의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가수금, 제품, 원자재 수입에 따른 외화 단기차입금, 콜자금, 만기 7일 이내의 증권 금융 차입, 매출채권 매각 거래로 인해 발생한 단기 차입금 등)
- 공시기준 : 직전 분기 개시일~종료일 사이의 차입금
  - ▶ 만기 연장된 금액이 있는 경우
    - 전 분기에 30억원 차입 후 당분기에 연장 → 30억원 기재
    - 단, 이때 10억원은 상환하고 20억원만 연장한 경우 20억원 기재
    - 여신한도약정에 따라 차입한 경우 분기말 실제 잔액을 기재
  - ▶ 차입금을 분기중에 상환한 경우
    - 2016년 2분기 동안 100억원 차입 후 30억원 상환 → 100억원 기재
  - ▶ 당좌차월의 잔액은 자금 차입현황과 당좌차월 약정한도 두 양식에 실제 분기말 잔액만 기재

#### (6) 공시양식 12~13 : 유가증권 거래현황(분기 1회)

- 공시대상 : 해당 분기 중 발생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 공시기준 : 직전 분기 개시일~종료일 사이의 매도가(장부가액)

※ 포스코와 거래시는 매입한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기재

#### ▶ 유가증권이란?

- 주식, 회사채(전환사채, 인수권부사채, 만기 3개월 미만 채권 등도 포함), 수익 증권인 펀드, 기업어음(CP) 등 거래대상이 되는 증권을 의미한다. 단 7일 이내의 기업어음은 제외
- ↳ 유상증자도 유상증자를 실시한 회사가 발행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

#### (7) 공시양식 14 : 계열회사 간 상품 용역거래현황(연 1회)

- 공시대상 : 회사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을 국내 계열회사와 해외 계열회사로 나누어 기재 (금융사 = 영업수익)  
↳ 양식의 매출액 총계는 손익계산서상 매출액과 일치해야 함
- 공시기준 :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사이의 손익계산서상 매출로 계상되는 전 계정과목들의 장부상 매출액
- ※ 해외수출을 위해 국내상사에게 판매되는 상품(일명 로컬수출)의 경우 당해 매출액이 소속회사의 국내매출로 계상되면 국내매출, 해외수출로 계상되면 해외수출로 기재

#### (8) 공시양식 15 : 계열회사 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용(상장사는 분기 1회, 비상장사는 연 1회)

- 공시대상 : 사업기간 중 계열회사와의 거래금액이 연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회사와의 거래내용
- 공시기준 : 상장사 → 직전 분기 개시일~종료일  
비상장사 →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 ※ 공시대상이 되는 개별회사와의 거래 건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건별 금액이 작성회사 전체 매출액의 1% 미만이거나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합산하여 기재 가능

(9) 공시양식 16, 18 : 기타 자산거래현황(분기 1회)

- 공시대상 : 소속회사가 재무상태표에 유·무형 자산으로 계상한 자산의 거래
- 공시기준 : 직전 분기 개시일~종료일 사이에 계열회사 등에게 매도(임대, 리스 포함)한 금액을 처분가액 기준으로 공시

※ 포스코와 거래 시는 매입한 기타자산에 대해서도 기재

(10) 공시양식 17 :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 공시대상 : 특정기업집단임을 식별하기 위한 기호·문자·도형으로 이루어진 상표권을 의미
- 공시기준 :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까지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실적이 있는 회사(사용료 지급회사, 수취회사)가 공시

(11) 공시양식 19 : 계열회사 간 채권·채무잔액현황(연 1회)

- 공시대상
  - 실물채권 :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보증금 잔액(기타 자산의 임대보증금)
  - 금융채권 : 대여금 유가증권 중 회사채 잔액
    - ↳ 회사의 재무상태표상
- 공시기준 : 채권회사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보유한 채권 잔액

(12) 공시양식 20 :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현황(분기 1회)

- 공시대상 : 공정거래법상 제한이 되는 채무보증과 제한이 되지 않는 채무보증
- 공시기준 : 보증회사가 직전 분기말 기준으로 존재하는 채무보증금액

(13) 공시양식 21 : 계열회사 간 담보제공현황(분기 1회)

- 공시대상 : 계열회사에 제공한 담보
- 공시기준 : 직전 분기말을 기준으로 계열회사에 제공한 담보의 내역
  - ▶채무보증과 담보제공은 어떻게 다른가요?
    - 채무보증은 인적담보를 의미하며 담보제공은 물건담보와 예금담보 등 물적담보를 의미함

(14) 공시양식 22 :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현황(연 1회)

- 공시대상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적용대상 회사의 거래 상대방 회사
  - ↳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총수일이 지분율이 30%(비상장은 20%) 이상인 회사
- 공시기준 : 직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

(15) 공시양식 23~24 :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현황

- 공시내용 : 계열회사 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순환출자현황

(16) 공시양식 25 : 지주회사 체제 밖 국내 계열회사 현황 (연1회)

- 공시대상 :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등 지주회사 체제에 포함되지 않고 체제 밖에 별도로 존재하는 국내계열회사 및 그 주주현황

(17) 공시양식 26 : 금융·보험사의 국내 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황(분기1회)

- 공시내용 :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 현황 및 의결권 행사 여부

## 05 | 기업결합

### 1 기업결합의 유형

#### ① 기업결합이란?

- 개별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이 소멸됨으로써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통합되는 기업 간의 자본적·인적·조직적 결합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사항들을 포괄함
  -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
  - 다른 회사와 합병
  - 다른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
  -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

#### ② 기업결합의 유형

##### (1) 결합 회사 간 관계에 따른 분류

- 수평결합 :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
- 수직결합 : 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용역 포함)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
- 혼합결합 :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

##### (2)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기준에 따른 분류

##### ①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간이신고 대상으로 하며,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 양식에 작성하여 공정위에 신고
- 기업결합 신고의무자와 기업결합의 상대회사가 특수관계인인 경우

### ③ 과태료 부과

-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허위로 공시한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한 경우, 공시기한을 초과하여 공시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공정거래법 제14조 및 제130조, 시행령 제94조 및 별표9)

#### (1) 시정명령 :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등

- 미공시·허위공시로 인해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소속회사는 공시의무를 이행하거나 공시내용을 정정해야 하고,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수정된 사항을 기업집단 전체현황 공시양식에 반영

#### (2) 과태료 : 사업자의 경우 1억원 이하, 임직원의 경우 1천만원 이하

#### (3) 과태료 기준 주요내용

| 위반유형           |                 |                                                                     | 과태료 금액<br>(단위: 만원)                                                             |
|----------------|-----------------|---------------------------------------------------------------------|--------------------------------------------------------------------------------|
| 공시여부           | 공시기한<br>준수 여부   | 누락 또는<br>허위 공시 여부                                                   |                                                                                |
| 공시하지<br>아니한 경우 | -               | -                                                                   | 1,000                                                                          |
| 공시한<br>경우      | 기한 내에<br>공시한 경우 |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사항을<br>공시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 처<br>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br>지 보완한 경우 | 100(공시기한을 넘긴 날의<br>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br>지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br>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                 | 누락 또는 허위<br>공시한 경우                                                  | 500                                                                            |
|                | 기한을<br>넘긴 경우    |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하지<br>않은 경우(과태료 처분<br>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br>보완한 경우를 포함한다)    | 100(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br>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br>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br>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                 |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경우                                                     | 1,000                                                                          |

- 상대회사 임원 총수의 1/3 미만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단, 대표이사 겸임 제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 결합하는 경우
- 「선박투자 회사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
- 간이신고 대상은 간이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확인되면 시장현황 자료의 제출은 면제

## ② 일반신고 대상 기업결합

-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 외의 기업결합

## ③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 주식취득 후 같은 날 또는 신고기간 내 재매각하는 경우와 같이 연속적 기업결합에서는 최종 취득자에게만 신고의무 존재
- 하나의 계약에서 2 이상의 기업결합이 발생할 경우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주된 기업결합만 신고대상
- 의결권 없는 주식취득이라도 총회 의결 등으로 의결권이 회복될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다시 발생
- 대규모 회사가 아닌 자의 대규모 회사 임원겸임, 사외이사의 타 회사 사외이사로의 임원겸임은 신고의무 없음
- 회사설립에 있어 최대출자자가 2 이상인 경우 신고의무는 최대출자자 각각에게 있으나, 그 중 1인이 신고한 경우 다른 회사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

## 2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 ① 기업결합의 수단

- ① 주식취득
- ② 임원겸임
- ③ 합병
- ④ 영업의 양수
- ⑤ 새로운 회사의 설립

### ② 신고대상 회사

#### (1) 취득회사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천억원 이상

#### (2) 취득회사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백억원 이상

- 자산총액
  -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의미.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을 말함
- 매출액
  -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영업수익을 말함

### ③ 신고대상 행위

| 기업결합           | 신고대상 행위                                                                                                                                    |
|----------------|--------------------------------------------------------------------------------------------------------------------------------------------|
| 주식 소유          |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20% 이상 (상장법인인 15%)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br>·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이미 20%(상장법인 15%)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당해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
| 임원의 겸임         | ·대규모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br>- 단, 단순한 임원의 교체, 즉 수의 변동 없이 자연인의 변경인 경우는 제외<br>- 계열회사 간 임원겸임일 경우 신고의무 면제                          |
| 합병             | ·다른 회사와의 합병                                                                                                                                |
| 영업양수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입이 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                                                                 |
|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 | ·새로운 회사 설립에 참여하여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br>-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만 참여하는 회사 설립이나 상법 제53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면제   |

### ④ 신고시기

- 원칙적으로 기업결합이 완료된 이후에 신고(사후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규모 회사가 관련된 경우는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신고해야 함
-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후 공정위의 심사결과를 통지 받기 전까지는 기업결합 완료 행위(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주식 인수행위 등)가 금지
- 다만, 기업결합 신고 후 30일(90일을 연장하여 120일까지 심사 가능)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업결합 신고 후 이행행위가 금지되는 기한이 무한정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 구분    | 신고의무자       | 유형      | 신고시기                                       |
|-------|-------------|---------|--------------------------------------------|
| 사전 신고 | 대규모회사       | 합병      | 계약일 이후 이행완료 전                              |
|       |             | 영업양수    |                                            |
|       |             | 주식취득    |                                            |
|       |             | 회사신설 참여 | 주총(이사회) 의결일 이후 이행완료 전                      |
| 사후 신고 | 대규모회사 외의 회사 | 합병      | 합병 등기일로부터 30일                              |
|       |             | 영업양수    | 대금지급 완료일로부터 30일                            |
|       |             | 주식취득    | 주권 교부일로부터 30일                              |
|       |             | 회사신설 참여 | 주금 납입일 다음날로부터 30일                          |
|       | 대규모회사       | 임원겸임    | 피 겸임회사의 주총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선임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 \* 대규모회사란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를 의미함
- \*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대상이나 법적, 계약적 특성상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는 사후 신고 대상임
  - 공개매수, 유증(遺贈), 타 법에 근거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가 일원화되고 해당 기관에 사후 신고하는 경우, 담보물권의 실행, 의결권 없는 주식의 의결권 회복 등

### ⑤ 임의적 사전 심사제도

- 사전·사후 신고대상을 막론하고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계획 중인 기업결합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음
- 임의적 사전심사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는 기업결합으로 판단될 경우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으로 분류되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

### 3 기업결합의 심사기준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목적

#### ①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
-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을 심사
- 적법한 신고서류의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함

#### ②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

##### (1) 지배관계 형성여부 판단기준

- 합병 또는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당해 행위로 지배관계가 형성되나, 주식취득, 임원 겸임 또는 회사신설의 경우에는 취득회사 등이 피취득회사에 대해서 다음 ① 내지 ③에 규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배관계 형성 여부를 판단함

##### ①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경우

- 주식소유비율이 50/10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배관계가 형성
- 주식소유비율이 50/100 미만인 경우에는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
- 취득회사 등에 의해 단독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지만, 다른 자 (피취득회사의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하려는 자 또는 기존 주주)와 공동으로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배관계가 형성

##### ② 임원의 겸임의 경우

-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

##### ③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 참여회사 중 2 이상 회사의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되어야 함
- 지배관계 형성여부는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을 준용

##### (2)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등에 따라 구분 될 수 있음

##### ① 거래대상(상품시장)

-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함(상품의 기능, 효용·가격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 ② 거래지역(지역시장)

- 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말함(부패성·변질성 등 상품의 특성, 생산능력·판매망의 범위 등 판매자의 사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

##### (3)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경쟁제한성은 취득회사 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평형·수직형·혼합형 기업결합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판단함

- ① 기업결합 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시장집중도 및 그 변화정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수평적 기업결합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허핀달-허쉬만지수(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을 말한다. 이하 HHI라 한다)가 1,200에 미달 하는 경우
- (나)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미만인 경우
- (다)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미만인 경우

【수직형 또는 혼합형 기업결합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가 2,500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 유율이 25/100 미만인 경우
- (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② 수평적 기업결합(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

- 경쟁제한성 판단 :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단독효과, 협조효과, 해외경쟁의 도입 수준 및 국제적 경쟁 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단독효과]** 기업결합 후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당사회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협조효과]**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간의 가격수량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가 이루어지기 쉽거나 그 협조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구매력 증대에 따른 효과]**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결합 당사회사가 원재료 시장과 같은 상부시장에서 구매자로서의 지배력이 형성 또는 강화될 경우 구매물량 축소 등을 통하여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지를 고려

- ③ 수직형 기업결합(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 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

- 경쟁제한성 판단 : 시장의 봉쇄효과, 협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시장의 봉쇄효과]** 수직형 기업결합을 통해 당사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협조효과]** 수직형 기업결합의 결과로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④ 혼합형 기업결합(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

- 경쟁제한성 판단 :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진입 장벽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잠재적 경쟁의 저해]** 혼합형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잠재적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경쟁사업자 배제]**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의 자금력, 원재료 조달능력, 기술력, 판매력 등 종합적 사업능력이 현저히 증대되어 당해 상품의 가격과 품질외의 요인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진입장벽의 증대]** 당해 기업결합으로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가하는 등 다른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4)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①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 당사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현저히 높고 당해 상품에 대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상당한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 경쟁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높고 기업결합 후 당사회사의 국내 가격인상 등에 대응하여 수출물량의 내수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 ② 신규진입의 가능성

-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 당해 시장에 참여할 의사와 투자계획 등을 공표한 회사 또는 당해 시장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중대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당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신규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③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생산기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 거래지역별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시장간의 지리적 근접도, 수송수단의 존재 및 수송기술의 발전가능성, 인접시장에 있는 사업자의 규모 등 인근 지역시장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 ④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 결합 당사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자가 기업결합 후에도 공급처의 전환, 신규 공급처의 발굴 및 기타 방법으로 결합기업의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때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이 경우 그 효과가 다른 구매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

#### (5) 효율성 증대효과 및 희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 ①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기준

-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함

-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
-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며,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는 것
- 당해 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효율성 증대부분은 포함하지 아니함

##### ② 희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말함

-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

- 상당기간 재무상태표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
- 상당기간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 중 정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동법 제294조 내지 제298조의 규정에 따른 파산신청이 있는 회사인지 여부
- 당해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회사와 경영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회사인지 여부
-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 4 기업결합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

### ① 법규 위반시

-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제한 또는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인 경우 당해 행위의 금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합병 또는 설립 무효의 소 제기 가능

### ② 시정조치 미이행시

-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당 기준금액의 1만분의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구 분        | 내 용                                 |
|------------|-------------------------------------|
| 주식취득, 회사신설 |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
| 합병         |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
| 영업양수       | 영업양수금액                              |

### ③ 벌칙

- 경쟁을 제한하거나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시 위반행위 유형별 과태료 산정기준

#### ■ 사후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 구 분                            |                    | 기업결합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             |         |
|--------------------------------|--------------------|-----------------------------|-------------|---------|
|                                |                    | 2천억원 미만                     | 2천억원~2조원 미만 | 2조원 이상  |
| 신고회사의<br>자산총액<br>매출액 중<br>큰 금액 | 2천억원 미만            | 400만원                       | 480만원       | 800만원   |
|                                | 2천억원 이상~<br>2조원 미만 | 48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                                | 2조원 이상             | 800만원                       | 1,000만원     | 1,200만원 |

#### ■ 사전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 구 분                            |                    | 기업결합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             |         |
|--------------------------------|--------------------|-----------------------------|-------------|---------|
|                                |                    | 2천억원 미만                     | 2천억원~2조원 미만 | 2조원 이상  |
| 신고회사의<br>자산총액<br>매출액 중<br>큰 금액 | 2천억원 미만            | 1,5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                                | 2천억원 이상~<br>2조원 미만 | 2,000만원                     | 2,400만원     | 3,600만원 |
|                                | 2조원 이상             | 3,000만원                     | 3,600만원     | 4,000만원 |

#### ■ 허위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 7,000만원

#### 사례 ①

롯데인천개발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터미널 건물 및 부지 등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당시 동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중인 신세계백화점과 실질적인 영업양수가 발생함

- 롯데인천개발은 본 기업결합을 위해 2012년 12월 28일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 2013년 1월 30일자로 9,000억원 규모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동안 인천광역시는 재정난 타개의 일환으로 본 인천터미널 매각을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알려짐

- 본 건의 상품시장은 백화점 시장으로, 지리적 시장은 인천·부천지역 시장으로 확정함

【심사시점】 본 기업결합의 실제효과는 신세계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는 2017년 11월 19일 이후에 발생하나, 기업결합 행위는 현재시점에 일어나기 때문에 신규 진입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려하여 경쟁 제한성 여부를 판단함

【경쟁제한성 판단】 기업결합 후 시장 집중상황, 단독효과, 구매력 증대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 본건은 형식적으로 롯데·인천광역시 간 인천터미널 부지 등 매각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 그 실질은 롯데가 신세계 인천점의 영업을 우회적으로 양수하는 것임

【구조적 조치】 2017년 만료되는 신세계 인천점 임대차 계약이 파기 되거나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천·부천지역 롯데 백화점 중 인천점을 포함하여 2개 점포를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로서 기존 용도로 운영하려는 자에게 매각할 것. 다만,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거나 만료되는 시점에 경쟁 제한성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하며, 아울러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 등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명령 이행을 연장할 수 있음

05. 기업결합

【행태적 조치】 2031년까지 신세계와 임대차 계약이 존속되는 부분에 대해 신세계가 독립적으로 백화점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조토록 함

**사례 2** 웨스턴디지털은 히타치GST의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 (2011. 4. 8)

- 공정위는 양 회사의 결합으로 인해 3.5”데스크탑용 HDD, 가전용(3.5”) HDD 시장에서 주요 사업자의 수가 크게 줄어들게 됨에 따라, HDD 생산 업체 간 협조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함
  - 히타치GST와 같은 일종의 독행기업(Maverick)이 사라짐에 따라, 사업자 간 명시적, 묵시적 공동행위가 이루어지기 용이해지고, 정보공유 가능성 증대. 또한, 기본적으로 동질적 재화인 HDD의 특성 및 여유설비의 부족 등에 따라 협조 상태에서의 이탈 가능성이 낮음
- 효율성 증대효과 여부
  - 피심인이 주장한 효율성증대효과는 기업결합 특유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 만큼 충분하다고 보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
- 매각조치 등
  - 3.5” 생산 관련 자산매각(관련 지식재산권의 사용권 부여 등을 포함)
  - 매각대상 영업과 관련된 자산의 이전
  - 자산매각 이후 3년간 핵심부품 공급 의무
  - 매각대상 영업과 관련된 각종 계약들의 이전 협조 의무

포스코이앤씨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 표시·광고법 실무

관련부서 분양 / 마케팅 / 홍보

# 01 | 표시·광고법 개념 및 위반유형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1 표시·광고의 의의

### ① 표시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 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 등
  -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 ② 광고

- 사업자 등이 상품 등에 관한 사항을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인터넷 또는 PC통신,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론 또는 전광판,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 2 위법성의 판단기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소비자오인성)  
 표시광고 행위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공정거래저해성)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① 소비자오인성

-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상식적인 인식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 소비자오인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를 의미하므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경향과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기만당했다는 주장이나 입증은 요구되지 않음

### ② 공정거래저해성

- 부당한 표시·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
  - 공정거래저해성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 즉, 표시·광고의 내용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어야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

### 3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 ① 거짓 · 과장의 표시 · 광고

- 사실과 다르게 표시 ·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 광고하는 경우
- 예) 상가 분양광고를 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연 수익률 10%를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

#### ② 기만적인 표시 · 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 · 광고하는 경우
- 예) 분양물 가운데 위치한 타인 소유의 나대지를 녹지공간으로 표시하여 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광고

####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 광고

-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 · 광고하는 경우
- 예) 비교 기준이 확연히 다름에도 인근 시세에 비해 분양가 저렴하다고 광고하는 행위

#### ④ 비방적인 표시 · 광고

-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 ·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 · 광고하여 비방하는 경우

### 4 부동산 표시·광고의 심사기준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된 표시·광고의 부당성(소비자의 오인성) 여부를 판단 할 때에는 문구의 명료성, 글자 및 도안의 상대적인 위치와 크기 또는 색상, 표시·광고 내용과 표현이 사실에 근거하는지 여부와 명시적·묵시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① 상가 등의 명칭

- 상가·호텔 등을 분양하면서 분양물의 명칭을 사실과 달리 백화점, 특급호텔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 해야만 설립·운영할 수 있는 시설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② 시행자, 시공자, 분양자

- 분양자가 누구인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마치 시행자, 시공자 등 다른 자가 분양자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시공자가 건축물의 건축·시공 외에는 아무 관련이 없거나 분양 표시·광고에 시공자의 상호 등을 사용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시공자가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분양 또는 운영 등에 관여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③ 분양업종, 분양방법, 분양현황, 공사현황 등

- 상가 등을 분양 광고하면서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입점을 허용할 것으로 표시·광고한 뒤, 실제로는 이와 다르게 분양하는 경우
- 분양시 사실과 달리 은행, 극장, 볼링장 등의 체육시설 등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큰 대중이용시설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건물의 공사진행상황이나 입점예정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 등

**④ 입지조건, 생활여건, 접근성**

- 주소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실제 입지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상권에 관해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최상급 또는 확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교통수단에 의한 소요시간을 「통상시간대」의 정상속도가 아닌 「새벽」이나 「한밤중」의 속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현재 이용할 수 없는 교통수단이나 도로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공익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을 현재 이용할 수 없거나 가까이 없음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실제와 달리 표시·광고함으로써 생활 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⑤ 재산가치, 수익성**

- 미래의 재산가치에 대해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거나 막연히 높은 가치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객관적·구체적 근거 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개발가능성이 없거나 확정·확인 되지 않는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내세워 토지의 개발이나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⑥ 부동산의 가격**

- 분양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지 않거나, 분양가격이나 권리금 등을 막연하게 표기하거나, 사실과 달리 표기하는 경우
- 분양가격, 권리금, 임대차가액 등의 지불조건 또는 지불방법 등에 대하여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

**⑦ 부동산의 면적**

- 상가 등의 분양면적을 점포별, 매장별로 면적을 표기할 때 전용면적을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전용면적이 실제보다 넓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주택의登記면적에 대하여 전용면적 이외에 공용면적이나 서비스면적 등을 포함하여 실제보다 넓은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에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이외에 서비스면적이나 기타 공용면적까지 포함하여 「분양면적」, 「공급면적」, 「총면적」, 「--평형」 등으로 실제보다 넓은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⑧ 부동산의 특징(재료·제품, 품질, 부대시설, 별도계약품목 등)**

- 주택, 상가 등의 건축물 또는 점포의 구조, 재료, 부속, 인테리어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 부대시설이나 별도 계약품목의 품질에 대하여, 혹은 그 설비나 공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 부담조건 등에 대하여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

**⑨ 용자·전세금 등**

- 용자금액에 대하여 용자기관 또는 용자금액, 이자율, 용자기간, 상환기간 등 용자내용 및 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 전세가액을 인근 동일조건 것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⑩ 인·허가**

- 토지의 분할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분할허가를 받을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건축허가를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01. 표시·광고법 개념 및 위반유형

## ⑪ 조감도 등

- 분양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시설이나 자연환경, 교통편 등을 표시할 때, 일반 소비자가 현재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을 실제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다만, 장래에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예정시기를 명시하거나 “계획” 또는 “예정” 등의 단서를 명기하여 표현하는 것은 무방)

## ⑫ 건물인증

- 건물인증(정식인증, 예비인증 포함)표현과 관련하여 하위등급을 받았음에도 상위 등급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에너지효율인증마크를 사용하는 등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⑬ 견본주택(모델하우스)

- 견본주택에 실제 사용될 재료나 제품보다 우량한 것을 사용하거나 우량한 구조로 설치하여 실제로보다 우량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견본주택에 사용된 재료 또는 구조가 사정상 변경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설치한 경우에도 실제의 것과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

## ⑭ 기타 거래조건

- 피분양자가 취득할 권리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혜택이 있다고 표기하는 등 실제 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상가 등의 소유권, 임차권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 등 분양절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실제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사례 1

포스코건설은 2002. 11. 3.~12. 20. 기간 중 중앙일간지 및 전단지를 통해 『신촌 포스빌』 주상복합 상가 분양광고를 하면서 “신촌 포스빌 상가가 성공을 자부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라는 표제하에 “단지내 350세대의 상주인구와 단지를 이용하는 유동인구 등 약 2,000여명의 고정고객을 모두 단골로 확보할 수 있어 수익의 안정성 보장”, “인근 주변시세에 비해 저렴한 평당 800만원대의 분양가로 고수익 독점사업을 분양받는 흔치 않은 기회…”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음

- 피심인의 광고행위는 객관적, 구체적 근거없이 막연히 높은 가치가 보장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됨

### 사례 2

대우건설은 2007. 5. 7.부터 2010. 8. 4.까지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소재 「대우월드마크 웨스트엔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분양 카탈로그 등을 통해 “현관전실 - 모던한 디자인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현관전실이 첫인상부터 사는 분의 품위를 높여 드립니다. 가족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용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납공간 극대화” 라고 표현하여 전실 부분이 복도의 일부분인 공용공간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본주택 전실 내부에 수납가구를 배치하고, 카탈로그 등을 통해 전실을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표현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음

- 피심인은 아파트 등 주거용 집합건물을 분양 광고하면서 공용면적인 전실을 마치 개별세대가 수납공간을 형성하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행위에 해당됨

### 사례 ③

(주)강호개발은 2015. 4. 1.부터 2015. 5. 27.까지 화성시 동탄하나길 소재 ‘아너스인터내셔널 호텔’의 분양광고를 중앙일간지 등을 통하여 분양광고를 하면서 “년16% 수익보장 실 투자금대비”, “전국 객실가동률 1위 동탄”, “삼성전자 국내외 바이어 수요독점” 등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음

- 피심인은 자신의 분양형 호텔에 대해 광고하면서
  - 임대료를 확정 지급하는 기간은 단 2년뿐임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장기간에 걸쳐 확정수익을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아너스인터내셔널 호텔’이 위치한 동탄 지역의 호텔 객실 가동률이 전국 1위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행위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삼성전자를 방문하는 국내외 바이어의 숙박 수요를 ‘아너스인터내셔널 호텔’이 독점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해당됨

## 02 | 표시·광고법의 실효성 확보 및 위반시 제재

### 1 중요정보 공개제도

-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건축물 분양 업종의 중요정보 항목
  - 건축허가 취득여부
  -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 신탁계약 체결여부 등 분양대금 관리방법
  - 시행사·시공업체명
  - 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
  - 광고에 수익금액 또는 수익률을 포함하는 경우, 수익(률)의 산출방법(광고 내용이 해당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인 때에는 보장기간 및 방법을 포함해야 함)

### 2 임시중지명령제도

-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식심결이 있을 때까지 부당표시·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부당한 표시·광고로 법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광고실증제도

-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함
  -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
  - 시험 또는 조사는 법령에 따른 시험·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조사기관이어야 함
-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광고중지 명령

### 4 시정조치

-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부과

《시정조치 유형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 유형 | 경고  | 시정권고 | 시정권고 | 과징금 | 고발 |
|----|-----|------|------|-----|----|
| 점수 | 0.5 | 1    | 2    | 2.5 | 3  |

#### ① 과징금

- 부당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억원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 유형           | 부과기준율<br>(관련매출액 산정 가능) | 부과기준율<br>(관련매출액 산정 불가능) |
|--------------|------------------------|-------------------------|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1.6% 이상 2.0% 이하        |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           |
| 중대한 위반행위     | 0.8% 이상 1.6% 미만        |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
|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0.1% 이상 0.8% 미만        | 5백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 ② 고발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및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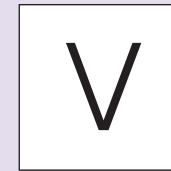
### 5 과태료

- 공정거래법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사업자등에게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업자등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등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①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실증자료를 제출표시·광고 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⑥ 출석요구를 받고도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⑦ 허위 보고 거짓 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

## 03 | 표시·광고시 행동지침

- 개별사업단위에서 임의제작하는 유인물은 반드시 본사 공정거래 담당부서와 협의
- 객관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한 비교광고는 허용, 부분적인 우수성을 전체의 우수성으로 표현하는 행위 등은 지양
- 사보, 홍보만화, 고객 안내문 등 대고객 홍보용자료도 광고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주의
- 인터넷, 사외유통망, 구내방송 등 직원들 간에 유통되는 정보교환 등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주의
- 사소한 민원이라도 초기대응에 실패하면 규제기관에 제소될 우려
  - \* 민원에 대한 초기대응에 유의할 것
- 신규고객 유치시 대출조건이나 상품인도조건 등을 정확하게 이용자에게 안내
- 계약내용과 다르게 가격 변동 행위 지양
- 광고 문안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입각한 것인지, 전문가가 아닌 평균이하의 지적 수준을 지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오인성 검토
- 광고적으로 기발한 표현이라도 경쟁사 비방 광고 지양
- 부당 표시광고사건은 고의 또는 과실 불문 ⇨ 사소한 부주의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
- 부동산 분양관련 부당광고행위의 책임주체는 1차적으로 시행사(시공사)에 있음
  - \* 분양대행사 등의 관리에 철저
- 건설공사 및 분양광고 업무를 시공사에게 위탁할 경우 : 시공사 책임
- 분양광고는 시행사, 시공사는 건설공사만 수행
  - \* (공사도급계약 등에 의거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위탁시) : 시행사 책임
-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기하는 경우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 전용면적)으로 표시하여야 함. 주거전용면적 외에 주거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은 별도로 표시할 수 있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7항)

포스코이앤씨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 약관법 실무

관련부서    분양 / 마케팅

# 01 | 약관법의 적용범위

##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칭 '약관법')이란?

약관법은 공정거래법규 중 하나로 사업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불공정한 약관에 의한 거래를 강요함으로써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법으로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 ① 약관 규제의 취지

- 약관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삽입하게 되며, 고객은 이러한 조항을 간과하기 쉽고, 알았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수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고객의 입장에서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가 일방적으로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함. 사업자가 약관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불공정한 약관의 횡포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약관 규제가 필요함

### ② 약관법상 약관이란? (법 제2조)

-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

#### (1) 약관의 요건

- ①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미리 마련된 것이어야 함
- ② 상대방이 다수이어야 함
- ③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함
- ④ 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2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제재

### ① 시정조치(법 제17조의2)

- 공정위는 위반한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지시 가능

### ② 과징금(법 제24조의2)

-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 ③ 벌칙(법 제32조)

- 시정조치에 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양벌규정 - 법인,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32조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④ 과태료(법 제34조)

- 각 사안에 따라 공정위에서 100만원~5,000만원까지 부과

## 02 | 약관법의 특성

### 1 약관법의 특성 및 해석

#### ① 약관의 작성·설명 의무 (법 제3조)

-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여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함. 이를 위반했을 경우, 사업자는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가능)

##### ▶ 사업자가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경우

- ①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 ② 고객 요구시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 ③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은 경우

#### ② 개별약정의 우선 (법 제4조)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약관에 우선함.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약관보다는 개별약정이 더욱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임

#### ③ 약관의 해석 (법 제5조)

-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거나, 고객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됨

#### ④ 불공정한 약관의 효력 (법 제16조)

-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무효이며,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제외한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유효함. 단,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가 무효임

#### Q&A ①

다음은 약관법상 규제대상인 ‘약관’에 해당하는가?

- ① 백화점 주차장에 게시되어 있는 “차량의 손상 및 차량 안 물건의 도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
- ② 사채업자가 사용하는 계약서 중 연체이자율 부분을 공란(또는 특약사항)으로 남겨두고 사실상 똑같은 이자율을 기재토록 하는 경우
- ③ 아파트 관리규약상 입주자 간의 권리관계를 규정한 조항  
약관법상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일방성)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다수성)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사전성)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통칭하는 것이므로
- ① ‘유일약관’의 예로서 약관법상 약관임
- ② 개별합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도 사실상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같은 내용을 반복 사용하는 것으로서 약관법상 약관임
- ③ 아파트 관리규약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하는 것으로서 일방 당사자가 만든 것이 아니므로 약관법상 약관이 아님

#### Q&A ②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약관 설명의 방법은? 설명의무가 있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

- 약관 설명의 방법은 고객의 약관 내용 인식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하여야 함. 따라서 약관을 계약서의 이면에 기재하였다는 것으로 또는 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안내문의 송부만으로는 사업자의 약관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설명 의무가 있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는 계약해지 사유, 기한 이익 상실사유, 계약해지시 위약금, 중도상환 수수료, 금전적 부담이나 법률적 책임부과 내용 등임

## Q&amp;A ③

사업자가 불가피한 경우 기존 약관 조항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 (☞ 금융시장의 변동으로 이자율 변경)

- 약관법상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하고 이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의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는 ‘약관의 일방적 변경금지의 원칙’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한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이러한 약관의 변경시에는 고객에게 그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고 종전 약관의 존속이나 계약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함

## 03 | 불공정한 약관조항

## 1 불공정한 약관의 일반원칙(법 제6조)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임
- 불공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관조항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고객이 거래행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① 다음의 약관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

- 약관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사업자 일방이 정하는 조항
- 불평등한 위약금 조항
- 헌법에서 규정하는 단체조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임차인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시 임의로 단수, 단전, 폐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이익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 소송 발생시 소송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 고객의 재산권 처분권한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
- 사업자가 고객에 대하여 포괄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고객에 전가시키는 조항
- 고객에게 통상적이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
- 쌍방 간의 계약에서 사업자의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
- 전형적으로 인정되어지는 사항을 배제하는 조항

### 사례 ①

(주)00항공의 보너스클럽회원 안내서상 “00항공은 보너스클럽 프로그램의 절차나 방침 등에 대한 운용권리를 가지며 그에 대한 분쟁발생시 00항공의 해석이 우선합니다.”라는 조항

- 약관은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전에 작성된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해석되지 않는 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법 제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의해 그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가 불명확의 위험을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약관조항은 내용 및 규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논쟁이 있을 경우 사업자의 해석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

### 사례 ②

00공사의 부동산매매 계약서상 “매매 목적물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용을 그 발생이 계약체결일 전후를 불문하고 매수인에게 부담”하도록 정한 조항

- 특정조세 등의 공과금을 이전시키는 합의가 아니라 일체의 제세공과금을 매수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며, 고객이 계약의 거래행태 등 제반사항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서 무효인 조항임

## 2 면책조항의 금지 (법 제7조)

### •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한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조항은 무효임

-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 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 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 ① 다음의 약관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

- 주차장 내 도난, 파손 등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체 지지 않는다는 조항
- 도착한 날로부터 7일을 초과하여도 인수하지 않은 수하물의 파손,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탁송수하물 운송약관
- 전기설비의 고장, 수리, 변경 등으로 전기의 공급을 중지, 사용제한을 하는 경우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기공급 규정
- 야구경기장에서 연습공이나 파울볼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관중이 부상을 당한 경우 주최측이 현장 응급치료만 책임지고 나머지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경기장 관람약관
-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대해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부동산 매매약관
- 물품 매매에 있어 하자 담보책임을 보증기간 내의 부품상의 재질 또는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에 대한 보증수리에 한한다는 자동차 판매약관

- 면적의 증감에 따른 정산을 요구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상가분양 계약
- 담보책임은 상품을 수수한 후 8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제기되지 아니한 이의에는 고려되지 아니 한다는 매매약관

#### 사례 ①

00유업(주)의 보급소거래 계약서상 “사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한 제품의 반품, 교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자가 자기의 귀책사항임을 인정하거나 자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반품, 교환을 인정한다”는 조항

-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을 규정한 민법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반품 여부의 결정권이 사업자에게 있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무효임

### 3 과중한 손해배상 예정의 금지(법 제8조)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계약조항은 무효임
  - 여기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는 지연손해의 배상, 전보배상, 위약벌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인 경우를 모두 포함
  - ‘부당하게 과중한’을 판단함에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금을 예정한 경위,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두루 참작하여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공정을 잃은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고려하게 됨

#### ①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

- 부동산 임대차의 중도해지시 손해배상금으로 보증금의 30%를 예정하는 조항
- 토지분양 계약의 중도해제시 손해배상금으로 매매대금의 20%를 예정하는 조항
- 계약해제시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으로 규정하고도 계약해제로 인하여 매도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매수인에게 배상책임을 다시 물을 수 있도록 한 조항
- 손해배상액인 위약금과는 별도로 미납연체료를 따로 청구하거나 기 납부금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하고 납부한 연체료는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

### 사례 ①

00건설의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계약의 해제·해지시 임차인이 이미 지급한 임대보증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하여 임대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

- 손해배상 예정액은 당사자 쌍방의 입장을 고려한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부동산 거래관행상 해약이나 위약시 위약금은 임대료 총액의 10% 수준이 적당하다고 할 것인 바, 임대보증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무효임

### 사례 ②

00(주)의 상가분양 계약서상 “임차인이 매월 납부하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매월 체납액의 10%와 체납액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액의 5%를 초과 과태료로 부과한다”는 규정

- 동 약관대로 하면 임차인은 연 180%에 해당하는 지연배상 의무를 지게되며, 이는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인 연 25%를 현저히 초과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 것으로서 약관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무효임

## 4 계약의 해제·해지(법 제9조)

### •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조항은 무효임

-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사업자에게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해제·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사업자가 고객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최고기간 내에 이행이 없어야 하고 또한 해제·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가능함
- 계속적 채권관계 (예 전기·가스 공급계약, 임대차 계약 등)에서 존속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로 하는 것은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제한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게 되며, 반면 부당하게 단기로 하는 것은 고객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함

### 사례 ①

중장비매매 계약서상 “사업자가 원자재 공급지연 등을 사유로 물품 인도기일을 연기할 수 있고, 고객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조항

- 사업자가 물품인도의 지연사유로 열거하고 있는 원자재 공급지연, 물품 수송사고 등은 불가항력 사유로 보기 어려워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고객의 계약해제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임

### 사례 ②

00(주)의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기간 중이라도 사업자의 회사운영상 해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는 조항

- 계약의 해제·해지는 계약 당사자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내용도 타당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계약의 존속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야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사유를 포괄적이고 불분명하게 규정한 조항은 무효임

### 사례 ③

00시설관리사업단의 청소용역 계약서상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보증금을 사업자에게 귀속한다”는 조항

- 고객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는 물론 사업자의 계약위반으로 고객이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계약보증금이 오히려 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한 것은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한 조항으로 무효임

## 5 채무의 이행(법 제10조)

### • 채무의 이행에 관한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조항은 무효임

-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 급부(계약의 목적물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는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당사자 일방이 독단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됨

### ① 다음의 약관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

- “자재의 수급상 다른 회사의 동일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는 아파트 분양 계약 조항
- 계약 후 차량 인도시 변동된 가격으로 자동차를 인수하도록 하는 자동차 판매 약관 조항
- “운송인은 통보 없이도 운송인을 타 운송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운송약관 조항
- 임대주택 사업자가 주택관리를 위탁관리로 전환시키더라도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

## 6 고객의 권익보호(법 제11조)

### • 고객의 권익에 관한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조항은 무효임

-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
-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
-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 고객이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득을 사업자가 개별적 약정이 아닌 약관으로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
-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
  - 항변권 : 일정한 사유에 기하여 청구(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상계권 :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
  - 유치권 :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
  - 선택권 : 여러 형태의 급부 중에서 선택하여 급부를 확정하는 권리
- ‘**기한의 이익**’이란 그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양당사자가 얻는 이익으로 물품대금 납부 약정일을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이전에는 물품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등임
- 약관으로 고객의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적당한 범위 안에서 기간·구역·영업의 종류 등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나,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상대방의 영업의 자유나 기타의 거래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것은 무효임

### 사례 1

00병원 리스 약관상 “고객의 채무불이행시 리스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리스물건을 회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고객이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

- 리스물건의 반환과 사업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고객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리스물건 유치권, 분쟁발생시 소송 제기권 등 법률상 고객에게 부여된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한 조항으로 무효임

### 사례 2

승강기 보수점검 하도급 계약서상 “하수급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이 종료된 후 3년간 하도급 사업자의 거래고객과 직접 보수점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조항

- 일종의 겸업금지 의무를 정하는 경우 그 기간은 대상기술, 영업비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인데 보수업무 관련 기술 및 영업정보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무효임

### 사례 3

00의 임대차 계약서상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와 홍보, 광고활동은 임대인이 지정한 대행업체에 위임한다”는 조항

- 상가건물 전체의 미관과 조화를 위하여 임대인이 인테리어 규격과 도안 또는 통일된 광고, 홍보방식을 지정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임의로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위임하는 조항은 임차인이 홍보 또는 광고의 대행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무효임

## 7 의사표시의 의제(법 제12조)

### • 의사표시에 관한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조항은 무효임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
-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 또는 불확정 기한을 정하는 조항

- 고객의 의사표시 의제의 경우,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효함
- 약관의 변경은 양 당사자가 계약 체결과 동일한 방법으로 약관변경에 합의를 한 경우에만 유효하고, 약관의 변경시에는 고객은 그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고 종전 약관의 존속이나 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고객에게 부여되어야 함
- 의사표시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법률관계를 신중하게 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 이외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고객의 의사표시에 부당한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고객의 의사표시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은 무효임
- 의사표시의 도달은 실제로 상대방의 영역 내에 의사표시가 도달한 경우 또는 객관적으로 도달되었다고 인정될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임의로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은 무효임

### 사례 ①

00은행카드 연대보증 계약서상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증인 또는 회원의 탈회 최고나 별도 통지가 없는 한 보증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는 조항

- 연대보증 계약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증인 또는 회원의 탈회 최고나 별도 통지가 없는 한 보증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하는 것은 일정한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의제된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임

### 사례 ②

124개 금융기관의 여신거래 기본약관상 “금융기관의 각종 통지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에는 도달주의의 법리가 더 엄격히 요구된다고 할 것인 바, 고객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아니하거나 연락된 때에도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무효임

## 8 소송 제기의 금지 등(법 제14조)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나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임

- 당사자 간 자유로운 합의로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약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에게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고객이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임
- 재판관할에 대하여 법률에서 전속관할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의 거래에 이용하기 위한 약관에 관할법원을 약정하는 것은 관할지역 외에 소재하는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무효임
- 입증책임을 부담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약관에 의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무효임

포스코이앤씨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 공정거래 자율점검

## 01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                    |                       |
|--------------------|-----------------------|
| 1. 하도급법            | 관련부서 사업본부(현장) / 구매    |
| 2. 공정거래법(부당한 공동행위) | 관련부서 영업부서 / 구매 / 경영기획 |
| 3. 공정거래법(부당한 지원)   | 관련부서 영업부서 / 구매 / 경영기획 |
| 4. 공정거래법(공시)       | 관련부서 영업부서 / 구매 / 경영기획 |
| 5. 표시광고법           | 관련부서 분양 / 마케팅 / 홍보    |

## 02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1. 예규
2. 지침

# 01 |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 1. 하도급법

관련부서 사업본부(현장) / 구매

| No. | 의무/금지사항         | 점검내용                                                                                                                                                                                                                                                                                           | 확인 |   |
|-----|-----------------|------------------------------------------------------------------------------------------------------------------------------------------------------------------------------------------------------------------------------------------------------------------------------------------------|----|---|
|     |                 |                                                                                                                                                                                                                                                                                                | ○  | × |
| 1   | 서면교부            |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작업지시서 등을 작업 시작 전에 교부한다.<br>① 작업내용 ② 완료 시기 및 장소 ③ 검사 방법 및 시기 ④ 대금지급 방법 및 기일 ⑤ 원재료 제공시 수량·제공일·대가지급 방법 및 기일, ⑥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방법<br>-수급사업자로부터 서면 발급 요구를 서면 통보받은 경우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면 회신한다.                                                                            |    |   |
| 2   | 부당특약 금지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제한하는 등의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않는다.<br>·부당유형 ① :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하는 약정<br>·부당유형 ② : 원사업자 부담의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전가하는 약정<br>·부당유형 ③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전가하는 약정<br>·부당유형 ④ : 원사업자 책임의 인허가, 환경관리,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항, 입찰시 예측이 불가한 사항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    |   |
| 3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는다.<br>-수의계약시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는다.<br>*도급계약상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 합계                                                                                                                                                                                    |    |   |
| 4   | 물품 등 구매강제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물품 등의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                                                                                                                                                                                                                                                              |    |   |
| 5   | 선급금 지급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한다.<br>-선급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한다.<br>-법정기일 초과시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연 15.5%(고시이율)의 자연이자를 지급한다.<br>(2015.7.1일 이전 발생 건은 20% 적용)                                                                                              |    |   |

| No. | 의무/금지사항                | 점검내용                                                                                                                                                                                                                           | 확인 |   |
|-----|------------------------|--------------------------------------------------------------------------------------------------------------------------------------------------------------------------------------------------------------------------------|----|---|
|     |                        |                                                                                                                                                                                                                                | ○  | × |
| 6   |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및 수령 거부 금지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위탁 임의 취소, 목적을 수령 또는 인수 거부 등을 하지 않는다.                                                                                                                                                                       |    |   |
| 7   | 검사 기준, 방법, 시기          | -기성검사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 통보한다.                                                                                                                                                                                            |    |   |
| 8   | 부당반품 금지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목적물 반품을 하지 않는다.                                                                                                                                                                                           |    |   |
| 9   | 감액금지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감액을 하지 않는다.                                                                                                                                                                                |    |   |
| 10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 물품, 용역 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    |   |
| 11  | 기술자료 제공 요구금지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요구 또는 유용을 하지 않는다.<br>-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 요구시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를 사전에 발급한다.<br>① 요구목적, ②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③ 권리귀속 관계, ④ 대가 및 지급방법, ⑤ 명칭 및 범위, ⑥ 요구일, 제공일, 제공방법, ⑦ 사용기간, ⑧ 반환 및 폐기 방법, ⑨ 반환일 또는 폐기일, ⑩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정당성 |    |   |
| 12  | 하도급대금의 지급              | -목적물수령일로부터 또는 월 1회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br>-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br>-법정기일 초과시,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연 15.5%(고시이율)의 자연이자를 지급한다.<br>(2015.7.1일 이전 발생 건은 20% 적용)                           |    |   |

| No. | 의무/<br>금지사항                       | 점검내용                                                                                                                                                                                                                                               | 확인 |   |
|-----|-----------------------------------|----------------------------------------------------------------------------------------------------------------------------------------------------------------------------------------------------------------------------------------------------|----|---|
|     |                                   |                                                                                                                                                                                                                                                    | ○  | × |
| 13  | 관세 등<br>환급액의<br>지급                | -추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br>-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br>-법정기일 초과시,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연 15.5%(고시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br>(2015.7.1일 이전 발생 건은 20% 적용)                                                                                   |    |   |
| 14  | 설계변경 등에<br>따른 하도급<br>대금의 조정       |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은 경우 설계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설계변경 사실을 통지한다.<br>-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은 경우 설계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변경을 실시한다.<br>-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대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대금을 지급한다.<br>-법정기일 초과시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연 15.5%(고시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br>(2015.7.1일 이전 발생 건은 20% 적용) |    |   |
| 15  | 공급원가 가격<br>변동에 따른<br>하도급대금의<br>조정 |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에 다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시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한다.                                                                                                                                                                                            |    |   |
| 16  | 부당한<br>경영간섭 금지                    | -하도급대금 조정 방법 등으로 수급사업자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다.                                                                                                                                                                                                               |    |   |
| 17  | 보복조치<br>금지                        | -원사업자를 관계기관에 신고한 사실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수주기회 제한 등)을 가하지 않는다.                                                                                                                                                                                        |    |   |
| 18  | 탈법행위<br>금지                        |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

## 2. 공정거래법(부당한공동행위)

관련부서 영업부서 / 구매 / 경영기획

| No. | 위반유형          | 점검내용                                                                                                                                        | 확인 |   |
|-----|---------------|---------------------------------------------------------------------------------------------------------------------------------------------|----|---|
|     |               |                                                                                                                                             | ○  | × |
| 1   | 입찰가격<br>담합    | -사업간에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한 최저입찰가격 등을 결정하거나 이에 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
| 2   |               | -사업간에 입찰가격을 협의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의 교환, 제공을 통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
| 3   |               |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를 복사 또는 대신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에 의해 입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
| 4   |               | -사업자간에 공동으로 발주처의 예정가격을 인상시킬 목적으로 예정금액보다 높은 수주금액 또는 수준을 정한 후 고의적으로 유찰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
| 5   | 낙찰예정자<br>사전결정 | -수주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보다 입찰가격을 높게하여 응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
| 6   |               | -수주희망업체가 협조업체에게 낙찰에 협조하는 대가로 차기 공사발주시 낙찰의 협조, 금품지급 등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또는 이익공여를 약속하는 방법에 의해 낙찰자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
| 7   |               | -특정입찰에 대한 연고권 주장을 통하여 특정업체에 낙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이에 협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
| 8   |               | -특정업체들간에 일정한 범위내의 공사를 교대로 수주하거나 특정업체가 다른 입찰참가업체들의 산출내역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면서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입찰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의 형태로 입찰에 참가하여 특정업체의 낙찰을 밀어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
| 9   |               | -특정업체가 산출내역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용역업체에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의뢰하고 이를 참여사업자에게 배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
| 10  |               | -수주예정자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후 이를 관련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
| 11  |               | -낙찰에서 배제된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자선정에 협조한 대가로 낙찰사업자에게 사례금, 또는 특별회비, 부과금 등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

| No. | 위반유형    | 점검내용                                                                                                                              | 확인 |   |
|-----|---------|-----------------------------------------------------------------------------------------------------------------------------------|----|---|
|     |         |                                                                                                                                   | ○  | × |
| 12  | 수계약 유도  | -사업자간에 공동으로 당해입찰을 수계약으로 유도할 것을 합의하고 입찰참가자가 모두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의해 계속적으로 유찰시키거나 입찰참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
| 13  |         | -특정사업자의 수주를 목적으로 몇몇 사업자가 공모하여 들러리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도중에 입찰을 포기하여 특정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봉쇄하여 수계약으로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
| 14  |         | -사업자간에 공동으로 객관적 기준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당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하여 발주처에 통보하거나 대외공표함으로써 입찰참여를 방해한 후 수계약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
| 15  | 수주물량 결정 | -업자 간에 공동으로 회합 등을 통해 수주물량을 결정하거나 입찰참가자간 수주물량 배분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
| 16  |         | -사업자간에 공동으로 수주물량 배분등의 결정에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기타 불이익 제공 등의 차별적 취급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
| 17  |         |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물량에 대해서만 응찰하여 다른사업자와의 공동수주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
| 18  | 경영간섭    | -사업자단체가 원재료를 공동구매하여 판매함에 있어 입찰금액이 낮거나 임의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에게는 판매물량의 제한이나 기타 불리한 조건에 의해 판매하는 등을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
| 19  |         | -사업자단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구성사업자에 대해 입찰가격에 관한 목표를 부여하거나 수주예정자 결정을 위하여 입찰참여 여부를 사전에 통지토록 요청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
| 20  |         | -사업자간에 공동으로 사전에 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수주물량의 일부를 특정사업자에게 하도급 형태로 분할하는 조건이나 특정사업자로부터의 자재구입 사용조건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
| 21  |         | -낙찰예정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일정률을 기부금 형태로 납부토록 하거나 특별회비로 납부토록 하여 이익의 일부를 공동 사용 또는 배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

## 3. 공정거래법(부당한지원)

관련부서 영업부서/구매/경영기획

| No.  | 위반유형 | 점검내용                                                                                           | 확인 |   |
|------|------|------------------------------------------------------------------------------------------------|----|---|
|      |      |                                                                                                | ○  | × |
| 자금거래 |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또는 현저한 규모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가?       |    |   |
| 1    | 자금거래 | 거래상대방의 시중 자금조달금리(개별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주지 않는다.                                              |    |   |
| 2    |      | 상품 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주지 않는다.                                          |    |   |
| 3    |      | 단체퇴직보험을 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계열회사 등에게 저리 대출을 유도하지 않는다.                                            |    |   |
| 4    |      |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정당한 이유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태만하게 회수하지 않는다.                                                 |    |   |
| 5    |      | 부동산 등에 대해 장기 매매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없이 잔금 지급 전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중도금 상당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지 않는다.                |    |   |
| 6    |      | 부동산, 시설 등을 다른 임차인과 동일하게 이용하면서 보증금, 임차료를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    |   |
| 7    |      | 수임대료를 약정상 납부기한 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지연이자는 받지 않거나 적게 받지 않는다.                                           |    |   |
| 8    |      | 편드를 이용하거나 금융회사 또는 다른 자를 통해 상기 행위들을 우회/간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    |   |
| 9    |      | 상기의 방법들을 통해 반대로 부당한 지원을 받지 않는다.                                                                |    |   |
| 자산거래 |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무채자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또는 현저한 규모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가? |    |   |
| 10   | 자산거래 |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로 저리의 기업어음, 회사채 등을 인수하지 않는다.                                             |    |   |
| 11   |      | 지원객체의 기업어음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지 않는다.                                            |    |   |
| 12   |      | 상기의 방법들을 통해 반대로 부당한 지원을 받지 않는다.                                                                |    |   |

| No. | 위반유형 | 점검내용                                                                                             | 확인 |   |
|-----|------|--------------------------------------------------------------------------------------------------|----|---|
|     |      |                                                                                                  | ○  | × |
| 13  | 자산거래 | 전환권 행사가 불가할 정도로 전환가격이 높고 현저히 낮은 이자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는다.                                             |    |   |
| 14  |      | 경영권 방어 등 특별한 사유없이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해 포기되는 누적이자가 전환되는 주식의 시세총액과 총전환가액의 차액보다 크에도 불구하고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    |   |
| 15  |      | 시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매각하지 않는다.                                                        |    |   |
| 16  |      |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금리의 후순위사채를 인수하지 않는다.                                                  |    |   |
| 17  |      | 금전신탁에 가입 후 위탁자금으로 기업어음, 회사채 등을 저리로 인수하도록 하지 않는다.                                                 |    |   |
| 18  |      | 역외펀드를 통해 기업어음 또는 회사채를 저리로 매입하거나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지 않는다.                                                |    |   |
| 19  |      |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매입하지 않을 정도의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지 않는다.                                                    |    |   |
| 20  |      |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보유지분이 없는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주식을 인수하지 않는다.                        |    |   |
| 21  |      | 유상증자시 발생된 실권주를 보유지분이 없는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인수하지 않는다.                               |    |   |
| 22  |      | 주가추이 대비 가격이 현저히 높은 유상증자 주식을 인수하거나 지분율을 현저히 초과하여 인수하지 않는다.                                        |    |   |
| 23  |      | 부동산, 시설 등을 시가 대비 고가로 매입하지 않는다.                                                                   |    |   |
| 24  |      | 부동산 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시가 대비 낮은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                                                        |    |   |
| 25  |      | 연구개발 성과, 특허기술 등의 무체재산권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지 않는다.                                               |    |   |
| 26  |      | 펀드를 이용하거나 금융회사 또는 무체재산권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지 않는다.                                              |    |   |
| 27  |      | 상기의 방법들을 통해 반대로 부당한 지원을 받지 않는다.                                                                  |    |   |

| No.     | 위반유형    | 점검내용                                                                                              | 확인 |   |
|---------|---------|---------------------------------------------------------------------------------------------------|----|---|
|         |         |                                                                                                   | ○  | × |
| 상품·용역거래 |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상품·용역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또는 현저한 규모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가? |    |   |
| 28      | 상품·용역거래 | 다른 자와의 동일한 거래 대가 대비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지 않는다.                                                        |    |   |
| 29      |         | 매출채권을 정당한 이유없이 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 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   |
| 30      |         | 외상매출금, 영역대금을 약정기한내 회수하지 아니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지 않는다.                                                    |    |   |
| 31      |         | 지원객체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자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용자금으로 알선해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다.                        |    |   |
| 32      |         | 펀드를 이용하거나 금융회사 또는 다른자를 통해 상기 행위들을 우회/간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    |   |
| 33      |         | 상당한 거래규모에 따른 비용절감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    |   |
| 34      |         | 상기의 방법들을 통해 반대로 부당한 지원을 받지 않는다.                                                                   |    |   |
| 인력거래    |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인력을 제공하면서 당해 인력의 일체 또는 일부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는 방법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가? |    |   |
| 35      | 인력거래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급여, 수당 등 실제지급급여)를 부담하지 않는다                                                 |    |   |
| 36      |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 하지 않는다.                                         |    |   |
| 37      |         | 상기의 방법들을 통해 반대로 부당한 지원을 받지 않는다.                                                                   |    |   |
| 거래단계추가  |         | 다른사업자와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계열회사 등을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지 않는가?             |    |   |

| No. | 위반유형    | 점검내용                                        | 확인 |   |
|-----|---------|---------------------------------------------|----|---|
|     |         |                                             | ○  | × |
| 38  | 거래단계 추가 |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통해 상품·용역을 간접적으로 구매하지 않는다. |    |   |
| 39  |         | 지원객체의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    |   |
| 40  |         | 상기의 방법들을 통해 반대로 부당한 지원을 받지 않는다.             |    |   |

## 4. 공정거래법(공시)

관련부서 영업부서/구매/경영기획

| No. | 거래 종류           |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결정 및 공시 |      |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       |      | 확인 |   |
|-----|-----------------|----------------------|------|------------------|------------|-------|------|----|---|
|     |                 | 공시 해당                | 유형   | 거래 상대방           | 거래규모       | 공시 해당 | 유형   | ○  | × |
| 1   | 채무면제 상대방        | ○                    | 자금   | 제한없음             | 자기자본 5% 이상 | ○     | 채무구조 |    |   |
| 2   | 채무면제 받음         | ○                    | 자금   | 제한없음             | 자기자본 5% 이상 | ○     | 채무구조 |    |   |
| 3   | 채무인수            | ○                    | 자금   | 제한없음             | 자기자본 5% 이상 | ○     | 채무구조 |    |   |
| 4   | 채무인계            | ○                    | 자금   |                  |            |       |      |    |   |
| 5   | 채무보증            |                      |      | 제한없음             | 자기자본 5% 이상 | ○     | 채무구조 |    |   |
| 6   | 자금대여            | ○                    | 자금   |                  |            |       |      |    |   |
| 7   | 자금차임            | ○                    | 자금   |                  |            |       |      |    |   |
| 8   | 유가증권매수 (취득)     | ○                    | 유가증권 |                  |            |       |      |    |   |
|     | 유가증권매수 (취득)주식   | ○                    | 유가증권 | 계열회사 제외          | 자기자본 5% 이상 | ○     | 채무구조 |    |   |
|     | 유가증권매수 (취득)출자증권 | ○                    | 유가증권 | 계열회사 제외          | 자기자본 5% 이상 | ○     | 채무구조 |    |   |
| 9   | 유가증권매도 (처분)     | ○                    |      |                  |            |       |      |    |   |
|     | 유가증권매도 (처분)주식   | ○                    | 유가증권 | 계열회사 제외          | 자기자본 5% 이상 | ○     | 채무구조 |    |   |
|     | 유가증권매도 (처분)출자증권 | ○                    | 유가증권 | 계열회사 제외          | 자기자본 5% 이상 | ○     | 채무구조 |    |   |
| 10  | 유상증자 참여         | ○                    | 유가증권 |                  |            |       |      |    |   |
| 11  | 유상증자            |                      |      | 제한없음             | 실시여부       | ○     | 채무구조 |    |   |
| 12  | 무상증자            |                      |      | 제한없음             | 실시여부       | ○     | 채무구조 |    |   |
| 13  | 감자              |                      |      | 제한없음             | 실시여부       | ○     | 채무구조 |    |   |
| 14  | 전환사채발행          | ○                    | 유가증권 | 제한없음             | 실시여부       | ○     | 채무구조 |    |   |
| 15  |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 ○                    | 유가증권 | 제한없음             | 실시여부       | ○     | 채무구조 |    |   |
| 16  | 교환사채발행          | ○                    | 유가증권 |                  |            |       |      |    |   |

| No. | 거래<br>종류             | 대규모 내부거래의<br>이사회결의 및 공시 |      | 비상장회사 등의<br>중요사항 공시 |          |          |      | 확인 |   |
|-----|----------------------|-------------------------|------|---------------------|----------|----------|------|----|---|
|     |                      | 공시<br>해당                | 유형   | 거래<br>상대방           | 거래규모     | 공시<br>해당 | 유형   | ○  | × |
| 17  | 사모사채발행               | ○                       | 유가증권 |                     |          |          |      |    |   |
| 18  | 비유동자산 매수<br>(취득)     | ○                       | 자산   | 제한없음                | 자산총액 10% | ○        | 재무구조 |    |   |
|     | 비유동자산 매수<br>(취득) 부동산 | ○                       | 자산   | 제한없음                | 자산총액 10% | ○        | 재무구조 |    |   |
| 19  | 비유동자산 매도<br>(처분)     | ○                       | 자산   | 제한없음                | 자산총액 10% | ○        | 재무구조 |    |   |
|     | 비유동자산 매도<br>(처분) 부동산 | ○                       | 자산   | 제한없음                | 자산총액 10% | ○        | 재무구조 |    |   |
| 20  | 부동산 임대               | ○                       | 자산   |                     |          |          |      |    |   |
| 21  | 부동산 임차               | ○                       | 자산   |                     |          |          |      |    |   |
| 22  | 자산 양도                | ○                       | 자산   |                     |          |          |      |    |   |
| 23  | 자산 양수                | ○                       | 자산   |                     |          |          |      |    |   |
| 24  | 영업 양도                | ○                       | 자산   | 제한없음                | 실시여부     | ○        | 경영활동 |    |   |
| 25  | 영업 양수                | ○                       | 자산   | 제한없음                | 실시여부     | ○        | 경영활동 |    |   |
| 26  | 상표권 사용권<br>제공        | ○                       | 자산   |                     |          |          |      |    |   |
| 27  | 상표권 사용권<br>받음        | ○                       | 자산   |                     |          |          |      |    |   |
| 28  | 기술 제휴                | ○                       | 자산   |                     |          |          |      |    |   |
| 29  | 기술 이전<br>(제공)        | ○                       | 자산   |                     |          |          |      |    |   |
| 30  | 기술 이전<br>(받음)        | ○                       | 자산   |                     |          |          |      |    |   |
| 31  | 담보제공                 | ○                       | 공통   |                     |          |          |      |    |   |
| 32  | 담보받음                 | ○                       | 공통   |                     |          |          |      |    |   |
| 33  | 증여                   | ○                       | 공통   | 제한없음                | 자기자본 1%  | ○        | 재무구조 |    |   |

| No. | 거래<br>종류                         | 대규모 내부거래의<br>이사회결의 및 공시 |    | 비상장회사 등의<br>중요사항 공시 |         |          |      | 확인 |   |
|-----|----------------------------------|-------------------------|----|---------------------|---------|----------|------|----|---|
|     |                                  | 공시<br>해당                | 유형 | 거래<br>상대방           | 거래규모    | 공시<br>해당 | 유형   | ○  | × |
| 34  | 수증                               | ○                       | 공통 | 제한없음                | 자기자본 1% | ○        | 재무구조 |    |   |
| 35  | 기타 내부거래                          | ○                       | 공통 |                     |         |          |      |    |   |
| 36  | 리스거래                             | ○                       | 공통 |                     |         |          |      |    |   |
| 37  | 영업전부의 임대·<br>경영위임 등              | ○                       |    | 제한없음                | 실시여부    | ○        | 경영활동 |    |   |
| 38  | 영업전부의 임대·<br>경영위임 등의<br>계약 변경·해지 | ○                       |    | 제한없음                | 실시여부    | ○        | 경영활동 |    |   |
| 39  | 회사 합병                            | ○                       |    |                     | 실시여부    | ○        | 경영활동 |    |   |
| 40  | 회사 분할                            | ○                       |    |                     | 실시여부    | ○        | 경영활동 |    |   |
| 41  | 주식교환·이전                          | ○                       |    | 제한없음                | 실시여부    | ○        | 경영활동 |    |   |
| 42  | 해산사유 발생                          | ○                       |    |                     | 실시여부    | ○        | 경영활동 |    |   |
| 43  | 회생절차 개시                          | ○                       |    |                     | 실시여부    | ○        | 경영활동 |    |   |
| 44  | 회생절차 종결                          | ○                       |    |                     | 실시여부    | ○        | 경영활동 |    |   |
| 45  | 회생절차 폐지                          | ○                       |    |                     | 실시여부    | ○        | 경영활동 |    |   |
| 46  | 채권은행 등의<br>관리절차 개시               | ○                       |    |                     | 실시여부    | ○        | 경영활동 |    |   |
| 47  | 채권은행 등의<br>관리절차 중단               | ○                       |    |                     | 실시여부    | ○        | 경영활동 |    |   |
| 48  | 채권은행 등의<br>관리절차 종료               | ○                       |    |                     | 실시여부    | ○        | 경영활동 |    |   |
| 49  | 최대주주 등의<br>변동                    | ○                       |    |                     | 변동여부    | ○        | 경영활동 |    |   |
| 50  | 임원의 변동                           | ○                       |    |                     | 변동여부    | ○        | 경영활동 |    |   |

## 5. 표시광고법

관련부서 분양 / 마케팅 / 홍보

| No.  | 거래유형          | 점검내용                                                                                                                                                                                            | 확인 |   |
|------|---------------|-------------------------------------------------------------------------------------------------------------------------------------------------------------------------------------------------|----|---|
|      |               |                                                                                                                                                                                                 | ○  | × |
| 일반원칙 |               |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된 표시·광고의 부당성 여부 판단 기준<br>- 문구의 명료성<br>- 글자 및 도안의 상대적 위치, 크기, 색상<br>- 표시·광고 내용과 표현이 사실에 근거하는지 여부<br>- 명시적, 묵시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    |   |
| 1    | 상가등의 명칭       | 분양자가 누구인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마치 시행자, 시공자 등이 분양자인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   |
| 2    | 시행자, 시공자, 분양자 | 아래의 경우 시공자의 상호나 상징마크 등을 상가 등의 명칭에 포함하여 마치 시공자가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분양 또는 운영 등에 관여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br>-시공자가 건축이나 가가 등 건축물의 시공 외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br>-분양자가 시공자와 분양 표시·광고에 시공자의 상호 등을 사용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는 경우 |    |   |
| 3    |               | 분양자보다 시공자의 명칭을 크기, 색상 등의 면에서 현저히 눈에 더 잘 띄게 표기함으로써 사실과 달리 시공자가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분양 또는 운영 등에 관여하는 것처럼 표시하지 않는다.                                                                                         |    |   |
| 4    | 분양업종          | 상가 등을 분양 광고하면서 실제 계획과 다르게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입점을 허용할 것으로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   |
| 5    | 분양방법          | 피분양자의 자격 또는 수, 피분양자를 결정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   |
| 6    | 분양현황          | 점포의 분양 현황에 대한 표현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게 은행, 극장, 볼링장 등의 체육시설 등 상가 등에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큰 대중이용 시설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   |
| 7    | 공사 현황         | 건물의 공사 진행상황이나 입점에정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여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   |
| 8    | 입지 조건         |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주소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실제 위치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   |
| 9    |               | 상권에 관해 객관적, 구체적 근거없이 최상급 또는 확정적 표현을 호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   |

| No. | 거래유형    | 점검내용                                                                                                                               | 확인 |   |
|-----|---------|------------------------------------------------------------------------------------------------------------------------------------|----|---|
|     |         |                                                                                                                                    | ○  | × |
| 10  | 생활여건    | 주택의 소재지에 대하여 기준지정이나 교통수단을 명시하지 않고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   |
| 11  |         | 교통수단에 의한 소요시간을 통상시간대의 정상속도가 아닌 새벽이나 한밤중의 속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주택 소재지가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   |
| 12  |         | 현재 이용할 수 없는 교통수단이나 도로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교통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   |
| 13  |         | 주택소재지 여건에 대하여 계획단계의 비전이나 막연한 추측성상의 내용을 확인된 사실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   |
| 14  | 접근성     | 공익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생활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   |
| 15  |         | 현재 이용할 수 없는 학교, 공원, 백화점, 수영장 등 공익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생활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   |
| 16  | 재산가치    |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미래의 재산가치에 대해 객관적, 구체적 근거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거나 막연히 높은 가치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   |
| 17  | 수익성     | 객관적, 구체적 근거없이 확정적 투자 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   |
| 18  |         | 개발가능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확정·확인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내세워 토지의 개발이나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   |
| 19  | 부동산의 가격 |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하지 않거나,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가격이나 권리금 등을 막연하게 표기하거나, 사실과 달리 표기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   |
| 20  |         | 분양가격, 권리금, 임대차계약 등의 지불조건 또는 지불방법 등에 대하여 막연하게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   |

| No. | 거래유형      | 점검내용                                                                                                                                  | 확인 |   |
|-----|-----------|---------------------------------------------------------------------------------------------------------------------------------------|----|---|
|     |           |                                                                                                                                       | ○  | × |
| 21  | 부동산의 면적   | 상가 등의 분양면적을 점포별 또는 매장별로 표기하여 분양 표시·광고하는 경우, 전용면적으로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전용면적이 실제보다 넓은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   |
| 22  |           | 주택의登記면적에 대하여 전용면적 이외에 공용면적이나 서비스 면적 등을 포함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넓은 것으로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   |
| 23  |           |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에 대하여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이외에 서비스 면적이나 기타 공용면적까지 포함하여, ‘분양 면적’, ‘공급면적’, ‘총면적’, ‘-평형’ 등으로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넓은 것으로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   |
| 24  |           | 단독주택의 경우, 공급면적에 대하여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에 대하여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보다 넓은 것으로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   |
| 25  | 부동산의 특징   | 주택, 상가 등의 건축물 또는 점포의 구조, 재료, 부속, 인테리어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   |
| 26  |           | 급배수, 가스, 전기, 무인경비 등의 부대시설이나 별도 계약품목의 품질에 대하여, 혹은 그 설비나 공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 부담조건 등에 대하여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   |
| 27  |           |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대하여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   |
| 28  | 용자, 전세금 등 | 용자금액에 대하여 용자기관 또는 용자금액 이자율, 용자기간, 상환기간 등 용자내용 및 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   |
| 29  |           | 전세금에 대하여 전세가액을 인근 동일조건인 것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   |
| 30  | 인허가       | 토지의 분할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분할허가를 받을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   |

| No. | 거래유형    | 점검내용                                                                                                                                                      | 확인 |   |
|-----|---------|-----------------------------------------------------------------------------------------------------------------------------------------------------------|----|---|
|     |         |                                                                                                                                                           | ○  | × |
| 31  | 인허가     | 관계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를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   |
| 32  | 조감도 등   |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시설이나 자연환경의 유무, 위치, 거리, 교통편 등을 조감도, 카탈로그, 팸플렛, 약도 등에 표시할 때, 일반 소비자가 현재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을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   |
| 33  | 건물인증    | 건물인증(정식인증, 예비인증 포함) 표현과 관련하여 하위등급을 받았음에도 상위등급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   |
| 34  |         | 건물인증(정식인증, 예비인증 포함) 표현과 관련하여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에너지효율인증마크를 사용하는 등 인증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   |
| 35  | 건본주택    | 건본주택을 설치하면서 주택이나 상가등에 실제 사용될 재료나 제품보다 우량한 것을 사용하거나 우량한 구조로 설치하여 당해 주택이나 상가 등이 실제보다 우량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   |
| 36  |         | 건본주택에 사용된 재료 또는 구조가 사정상 변경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설치한 경우에도 실제의 것과의 차이가 현저하게 하지 않는다.                                                                                  |    |   |
| 37  | 기타 거래조건 | 피분양자가 취득한 권리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혜택이 있다고 표기하는 등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   |
| 38  |         | 상가 등의 소유권, 임차권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 등 분양 절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는다.                                                                     |    |   |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예규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임직원들이 경쟁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포스코이앤씨의 모든 임직원은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는 회사에 적용되는 경쟁관련 법령, 규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경쟁법은 공정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보호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법규를 말한다.
3. 경쟁당국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
4.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5.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 제1절 자율준수관리자

제4조(선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5조(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2.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요구권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제6조(의무)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

제7조(직무)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2.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 수립
3.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
4. 점검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등 후속 조치
5. 기타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6.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임직원 교육
7.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8. 자율준수 활동계획과 활동상황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

- 9.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
-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인사상 불이익 부과금지)**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 제9조(회사의 지원)

-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전담부서)**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며, 회사전체의 자율준수업무는 공정거래업무 전담그룹에서 주관한다.

### 제2절 자율준수협의회

#### 제11조(설치 및 구성)

- ① 자율준수협의회는 위원은 각 본부의 선임그룹리더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자율준수관리자가 위원을 추가 임명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협의회 의장은 자율준수관리자가 한다.
- ③ 주관부서 그룹리더는 간사0를 맡는다.

**제12조(역할)** 자율준수협의회는 반기 단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2인 이상의 구성원 요구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율준수의 기본방침 설정

- 2. 중요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자문

### 제3절 임직원

#### 제13조(의무)

- ① 모든 임직원은 경쟁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각 그룹리더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쟁법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 ③ 각 그룹리더는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쟁법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 제14조(자율준수편람)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모니터링 제도)**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준수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 대표이사 및 임원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임직원의 자율준수실태 등에 대한 점검, 조사
- 2.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각 부서별로 작성한 각종 체크리스트의 검토 및 확인
- 3.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보고서,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

**제16조(교육프로그램의 실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예규와 관련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① 경영, 재무, 인사, 조달, 영업 등 경쟁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는 반기당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내용은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예규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경쟁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한다.
- ③ 자율준수교육에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7조(경쟁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준수여부 점검결과 적발된 경쟁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하되, 인사노무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당해 임직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8조(문서관리)

- ①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아래 분류, 보관한다.
- ②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작성, 보관한다.
- ③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 제19조(운영성과 평가)

- ①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운영성과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20조(공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상황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1조(경쟁당국과의 관계)**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예규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예규는 2022. 6. 29부로 개정, 시행한다.

|               |               |               |
|---------------|---------------|---------------|
| 제정 2003.07.10 | 개정 2005.05.02 | 개정 2007.03.05 |
| 개정 2013.03.25 | 개정 2014.04.02 | 개정 2018.02.26 |
| 개정 2022.06.29 |               |               |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 개정번호 | 등록일자       | 내용                                                   | 작성  | 검토   | 승인  | 등록  |
|------|------------|------------------------------------------------------|-----|------|-----|-----|
| 0    | '20.02.04  | 최초발행                                                 | 최효준 | 한일희  | 이근배 | 최효준 |
| 1    | '20.06.03  | 양정기준 개정                                              | 임홍철 | 한일희  | 이근배 | 최효준 |
| 2    | '20.11.26  | 자율준수편람 개정기준 등 추가                                     | 최효준 | 한일희  | 이근배 | 최효준 |
| 3    | '21.05.14  | 교육강사 기준 강화 등                                         | 조명래 | 최효준  | 이근배 | 조명래 |
| 4    | '21.11.03  | 교육 및 운영평가 기준 강화 등                                    | 조명래 | 최효준  | 이근배 | 김정원 |
| 5    | '22.03.18. | 양정기준 개정                                              | 조명래 | 최효준  | 강성민 | 김정원 |
| 6    | '22.07.04. | CP주관부서 직원 자격 추가,<br>모니터링 및 점검시 준수사항<br>추가, 양정기준 강화 등 | 임홍철 | 한일희S | 강성민 | 김정원 |
| 7    | '22.10.01. | 양정기준 개정                                              | 임홍철 | 한일희  | 강성민 | 김정원 |
| 8    | '23.06.23. | 하도급 상생·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br>영 추가                          | 임홍철 | 한일희  | 최은두 | 김정원 |
| 9    | '23.12.22. | 양정기준 개정                                              | 임홍철 | 한일희  | 최은두 | 김정원 |
| 10   | '24.07.08. | 양정기준 개정                                              | 임홍철 | 한일희  | 최은두 | 김정원 |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주식회사 포스코이앤씨(이하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임직원이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이하 “자율준수”라 한다).
- ②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예규의 경쟁법을 의미하며 공정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보호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법령을 말한다.
- ③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 감독 등 회사 내부의 준법시스템과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이하 “CP”라 한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란 CP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 ⑤ “자율준수협의회”란 자율준수관리자를 자문하고 담당본부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 감독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 ⑥ “담당본부”란 자율준수협의회 위원 별로 자체점검을 실시, 감독하는 본부를 말한다.

- ⑦ “CP 주관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지휘 아래에서 CP 업무를 주관하여 실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2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 제1절 자율준수관리자

#### 제4조(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과 해임)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사내외 이해관계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관여되어 있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해임할 수 있으며 임직원과 사내외 이해관계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본 조 제3항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 CP 주관부서장이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새로 선임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 보장)

-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②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수행의 객관성과 독립성의 확보를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가 본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가 아닌 이상,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업무수행 중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업무수행 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 ④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⑤ 회사는 본 지침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

제6조(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CP의 운영
2. CP와 관련된 계획 수립
3. CP 실태에 대한 감사를 분기 1회 이상 실시
4. 점검 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등 후속 조치
5.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6.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업무에 대한 임직원 교육
7. CP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8. CP 활동계획과 활동상황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
9.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 협조 및 지원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CP 준수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2.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 요구권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 요구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 제2절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조직

제8조(조직의 구성) 자율준수관리자는 원활한 CP운동을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 직속의 CP 주관부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① CP 주관부서의 직원은 입사 2년 이상자로서 점검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자로 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전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CP 주관부서 직원으로 보임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3.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부적격자로 인정한 자
- ③ CP 주관부서의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요청에 의한다.
- ④ CP 주관부서의 직원은 법령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9조(CP 주관부서) CP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보좌
2. CP의 실행에 필요한 계획 작성, 자율준수관리자 보고 및 시행
3. CP 운영상의 실무적인 문제처리 및 CP 운영효과성 평가
4.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연관된 사내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등 지원 활동
5.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전파

6.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자율준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주관
7.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및 배포
8. 공정거래 관련 반기 1회 모니터링 및 점검
9. 공정거래 모니터링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발
10. 하도급 상생·협력 위원회 운영
11. 공정거래 관련 법령,제도 및 회사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본 지침,자율준수편람 및 관련 기준의 정기 검토와 개정

## 제3절 자율준수협의회 구성 및 역할

제10조(자율준수협의회의 구성 및 선임)

- ① 자율준수협의회의는 자율준수협의회 위원과 공정거래 실천리더로 구성한다.
- ② 자율준수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인 자율준수관리자와 공정거래와 관련된 부서의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 ③ 공정거래 실천리더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각 사업본부 및 기획, 지원본부내 공정거래와 관련된 부서의 직원으로 선임한다. 단, 본 자율준수협의회의의 구성은 자율준수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④ CP 주관부서장은 간사로서 자율준수협의회의 실무운동을 총괄한다.

제11조(자율준수협의회의의 운영 및 역할)

- ① 자율준수협의회의는 반기 단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2인 이상의 구성원 요구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협의회의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재재 등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의 심의 및 필요사항 권고, 자문

2.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서간의 업무 조정
3. 위원별 담당부분의 법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실시 및 감독, 그 결과를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보고
4. 각 위원별 담당본부의 자율점검에 대한 감독
5. 기타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수행 자문

#### 제12조(자율준수협의회 위원과 공정거래 실천리더의 역할)

- ①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관리자 지원
  2. 공정거래 실천리더를 지휘감독하여 소속본부 CP운영
  3. 본부의CP교육 참여 독려로 소속본부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사전 법 위반 예방
  4. 본부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리스크 및 CP 운영 개선사항의 발굴
- ② 공정거래 실천리더는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의 자율준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의 자율준수활동 지원
  2. 본부의 공정거래 관련 상담 및 자문
  3. 본부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준수 점검 및 그 결과를 CP 주관부서에 통보
  4. 본부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시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주관부서에 통보

#### 제13조(하도급 상생·협력위원회 구성)

- ① 하도급 상생·협력위원회는 국내 법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 ② 하도급 상생·협력위원회 위원장은 국내 법무 담당임원으로 하고 위원은 각 사업본부의 PJT관리 담당 부서장, 해당 계약담당 부서장, 원가관리

담당 부서장, 법무 담당 부서장(필요시)으로 구성한다.

- ③ CP 주관부서장은 간사로서 하도급 상생협력위원회 실무운동을 총괄한다.

#### 제14조(하도급 상생·협력위원회 운영)

- ① 하도급 상생·협력 위원회는 현장, PJT관리부서, 계약부서가 1차적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미합의시 현장(PJT관리부서)의 요청에 의거 개최한다.
- ② 하도급 상생·협력 위원회는 필요시 현장, 관련부서,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은 자진 시정하여야 한다. 자진시정 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사내 기준에 의거 처분한다.
- ④ 하도급 상생·협력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⑤ 의사결정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부의 안건이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제4절 임직원

#### 제15조(임직원의 의무)

- ①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CP 주관부서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모든 임직원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CP 주관부서에 알려야 한다.

### 제5절 대표이사

#### 제16조(대표이사의 역할)

-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효과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보고받을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절차 개선 등을 지시하고 필요시 관련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 제 3 장 CP의 운영

### 제1절 자율준수 의지선언

제17조(선언목적)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CP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준수 의지를 선언하여야 한다.

제18조(선언방법) 대표이사의 자율준수 의지는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 제2절 CP의 운영

#### 제19조(자율준수편람)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들이 실제 업무수행의 지침서로 유용하게 사

용할 수 있는 자율준수편람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고 이를 임직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임직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개정 검토(매월) 및 개정(반기 1회)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0조(교육)

- ① CP 주관부서는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구매, 견적, 사업관리, 재무부서 교육
  2. 공무, 공사, 관리, 안전 등 현장 관리자 및 담당자 교육
  3.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에 대한 교육
  4.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보수교육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특별교육
  5. 기타 직원들의 공정거래 준수 마인드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교육
  6. 대면, 온라인, 동영상, 업무시스템 게시 및 팝업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 ② CP 주관부서는 교육별 의무 수강부서를 선정하여 이를 공지할 수 있으며 교육 후 수강현황을 부서장에게 통보토록 한다
- ③ CP 주관부서로부터 교육 대상으로 선정된 부서의 임직원들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임직원 중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는 감사규정, 동 지침의 하도급법 위반 제재기준에서 정한 기준보다 가중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④ CP 주관부서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CP 주관부서는 교육 후 피교육자의 이해도, 만족도, V.O.C, 참석율 등의 파악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연말에 종합적인 교육 효과성 평가를 실시한다.
- ⑥ 교육을 하는 사외강사의 자격은 법무법인, 전문기관 등에서의 공정거래 관련 업무경력 2년 이상으로 하며, 사내강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정한다.
  - 1. 시공관리, 제작관리, 구매 등의 공정거래 관련 업무경력 2년 이상
  - 2. CP 주관부서 업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CCP) 2급 이상 자격 소지
  - 3. 사외 공정거래 전문교육기관 강의 수료 1회 이상

#### 제21조(문서의 관리)

- ①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관련된 업무 수행시 발생된 모든 문서는 3년 간 보관되어야 한다.
- ② 본 규정 외의 사항은 사내 문서관리지침에 따른다.

**제22조(위험성평가)** CP 주관부서는 부서별 업무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리스크를 평가하고, 적합한 통제를 통해 법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① 위험성평가는 분기 1회 실시하고, 리스크등급은 상, 중, 하 3단계로 구분한다. 리스크등급이 ‘중’ 등급 이상의 경우 적절한 통제방안을 강구하여 해당 리스크를 회피, 경감 또는 제거한다.

**제23조(모니터링 및 점검)** CP주관부서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과 관련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① CP 주관부서는 리스크가 높거나 자율점검이 부진한 본부 및 그룹에 대해 상시 공정거래 모니터링 및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 ② 수감부서는 CP 주관부서의 모니터링 및 점검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 ③ CP 주관부서는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경영층에 보고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업무절차개선 등을 취할 수 있다.
- ④ 점검을 수행하는 자는 시공관리, 제작관리, 구매 등의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 ⑤ CP 주관부서 직원은 모니터링 및 점검을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 점검 기준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3.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기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
  - 4. 모니터링 및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점검대상자 또는 부서의 업무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점검대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모니터링 및 점검과정에서 권위적·고압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우수사례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6. 점검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24조(제보시스템의 운영)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발견할 경우 이를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시스템을 마련하

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보된 내용에 대해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보시스템은 기명제보 뿐만 아니라 익명제보도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익명제보는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제 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제보자가 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공시)**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운영상황을 대내외에 자진 공시하여야 한다.

#### 제26조(운영평가)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기 1회 평가 하여 경영층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CP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운영평가에는 주요 법령의 비준수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이 포함 되어야 한다.
- ③ 운영평가자는 CP 주관부서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또는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CCP)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한정하고 필요 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3절 공정거래 관련 위반에 대한 제재 및 포상

#### 제27조(제재조치 요구)

- ① 본 운영지침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인지한 부서 책임자가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주관부서로 즉시 알려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주관부서는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인사업무 담당부서에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28조(제재의 원칙과 절차)

- ①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주관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임직원 또는 조직에 대해 주의 또는 경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CP 주관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임직원 또는 조직에 대해 인사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제재조치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첨의 하도급법 위반 제재기준을 따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법령 위반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CP 주관부서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수준이 가중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29조(임직원 포상)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를 성실하게 실천하였다고 평가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인사업무 담당부서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 1. CP점검 우수 조직
  - 2. 자율준수협의회 우수 위원 및 공정거래 실천리더
- ② 포상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첨의 공정거래 우수 현장 및 실천리더 포상기준을 따르며, 자율준수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 제30조(기타)

- ① 자율준수관리자와 CP 전담부서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 내부 절차에 의거 CP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은 반기 1회 이상 그 적정성과 운영 실효성을 검토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제·개정, 조직 및 업무 변경, 운영평가 결과, 주요 위반사례 발생 또는 기타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정할 수 있다.

## 별첨 1. 하도급법 위반 제재기준

## 별첨 2. 공정거래 우수 현장 및 실천리더 포상기준

## 별첨 1. 하도급법 위반 제재기준

## [개인책임 양정 기준]

| 조사주체 | 양정대상 건                    | 위반행위<br>유형별 평가점수 | 양정        | 비고                                                                                                                                                                                              |
|------|---------------------------|------------------|-----------|-------------------------------------------------------------------------------------------------------------------------------------------------------------------------------------------------|
| 공정위  | 신고접수/<br>직권조사             | 50점 초과           | 징계        | -공정위 처분 공문 도달 시 양정                                                                                                                                                                              |
|      |                           | 50점 이하           | 사장 경고     |                                                                                                                                                                                                 |
|      | 공정위/<br>조정원<br>접수 후<br>합의 | 80점 초과           | 징계        | -공정위 조사과정 중 발견된 명백한<br>법위반(서면, 대금, 부당특약 등)에<br>대해서만 기준에 따라 양정<br>(단, 공정위 접수 전 코칭에 대해서<br>는 정상 참작)                                                                                               |
|      |                           | 70점 초과           | 사장 경고     |                                                                                                                                                                                                 |
|      |                           | 50점 초과           | 본부장<br>경고 |                                                                                                                                                                                                 |
|      |                           | 50점 이하           | 주의        |                                                                                                                                                                                                 |
| 법무실  | 공정거래그룹<br>점검              | 80점 초과           | 징계        | -민원을 통한 하도급 분쟁 접수 후<br>점검(당사, 포스코, 언론, 국회 민원<br>접수)<br>-주기적인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에<br>따라 점검 우선 대상 현장 선정<br>*작업지시서 발급이 저조한 현장<br>* 계약변경이 많거나, 계약종료 후<br>잔액이 있는 하도급계약이 많은<br>현장<br>* 추가공사 이상 징후 빈발 현장<br>등 |
|      |                           | 70점 초과           | 사장 경고     |                                                                                                                                                                                                 |
|      |                           | 50점 초과           | 본부장<br>경고 |                                                                                                                                                                                                 |
|      |                           | 50점 이하           | 주의        |                                                                                                                                                                                                 |
|      | 현장요청에<br>따른 점검            | 70점 초과           | 본부장<br>경고 | -하도급분쟁 예상 업체와의 법위반<br>Risk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코칭<br>요청 시(단, 코칭 후 30일 이내 자진<br>시정 완료 시 면책)                                                                                                              |
|      |                           |                  |           |                                                                                                                                                                                                 |

## [관리책임 양정 기준]

| 구 분     | 내 용                                                                                                                                                |
|---------|----------------------------------------------------------------------------------------------------------------------------------------------------|
| 관리책임 정의 | - 부하직원의 업무과실이 발생할 경우 직책보임자는 관리, 감독 노력 정도에 따라 인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
| 판단기준    | - 법 위반행위가 당해 직책보임자의 관리영역 내에서 발생해야 함.<br>- 해당업무에 대해 직책보임자로서의 주의의무가 결여되어야 함.<br>- 법 위반행위가 직책보임자의 지시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해당 직책보임자에게 관리책임이 아닌 직접책임에 의한 인사조치 의뢰 |
| 적용범위    | - 업무과실자의 직상급자를 포함하여 인사조치 의뢰                                                                                                                        |
| 양정범위    | - 업무과실자 인사처분 대비 동등 혹은 1단계 낮은 수준으로 인사조치 의뢰                                                                                                          |

## [양정 감경 및 가중사항]

| 구 분  | 내 용                                                                                                                                                                                                                           |
|------|-------------------------------------------------------------------------------------------------------------------------------------------------------------------------------------------------------------------------------|
| 감경대상 | - 법 위반의 자발적 인정 및 반성<br>- 신입(전입)사원 혹은 해당업무 미숙련자의 업무 미숙<br>- 자율준수노력, 외부 법률 상담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위반한 경우<br>- 조사 전 자율적으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스스로 시정한 경우<br>- 기타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등 점검인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감경이 필요한 경우 |
| 가중대상 | - 유사 법 위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 발생하는 경우<br>- 불성실 조사대응 및 허위진술<br>- 기타 고의적, 악의적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점검인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가중이 필요한 경우                                                                                                        |

## [하도급법 유형별 세부 평가표]

| 구분       | 비중  | 100점 (상)                                                                                                                                                                                                                                                                                                                           | 67점 (중)                                                                                                                                                                                                                                                                                                                                                                                                                               | 33점 (하)                                                                                                                                                                                                                                                                                                                                                                                                         |
|----------|-----|------------------------------------------------------------------------------------------------------------------------------------------------------------------------------------------------------------------------------------------------------------------------------------------------------------------------------------|---------------------------------------------------------------------------------------------------------------------------------------------------------------------------------------------------------------------------------------------------------------------------------------------------------------------------------------------------------------------------------------------------------------------------------------|-----------------------------------------------------------------------------------------------------------------------------------------------------------------------------------------------------------------------------------------------------------------------------------------------------------------------------------------------------------------------------------------------------------------|
|          |     | ① 제4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br>②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위탁취소·변경 또는 수령·인수의 거부, 지연 등을 한 행위<br>③ 제10조를 위반하여 목적물등을 부당하게 반품한 행위<br>④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br>⑤ 제12조의3을 위반하여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br>⑥ 제19조를 위반하여 신고 또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등을 이유로 수주기회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준 행위<br>⑦ 제20조를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지급한 도급대금을 환수하는 등의 탈법 행위 |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적법한 서면을 발급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행위<br>② 제5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물품 등을 강제로 매입 또는 사용하게 한 행위<br>③ 제6조를 위반하여 선급금 및 이와 관련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또는 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 하지 아니한 행위<br>④ 제12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물품구매대금 등의 결제를 청구한 행위<br>⑤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br>⑥ 제12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br>⑦ 제12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br>⑧ 제12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의 범위, 보유 임직원의 명단 등을 적은 비밀 유지계약을 수급 사업자와 체결하지 아니한 행위 | ① 제3조의4를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br>② 제7조를 위반하여 내국 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한 행위<br>③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br>④ 제9조를 위반하여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br>⑤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감액사유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br>⑥ 제11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감액금액과 관련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br>⑦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대금지급보증을 적법하게 하지 아니한 행위<br>⑧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행위<br>⑨ 제14조 제5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
| 위반 행위 유형 | 0.4 |                                                                                                                                                                                                                                                                                                                                    |                                                                                                                                                                                                                                                                                                                                                                                                                                       |                                                                                                                                                                                                                                                                                                                                                                                                                 |

| 구분             | 비중  | 100점 (상) | 67점 (중)                                                                                                                                                                                                                                                                                                                                                             | 33점 (하)                                                                                                                                                                                   |
|----------------|-----|----------|---------------------------------------------------------------------------------------------------------------------------------------------------------------------------------------------------------------------------------------------------------------------------------------------------------------------------------------------------------------------|-------------------------------------------------------------------------------------------------------------------------------------------------------------------------------------------|
|                |     |          |                                                                                                                                                                                                                                                                                                                                                                     |                                                                                                                                                                                           |
| 위반<br>행위<br>유형 | 0.4 |          | ⑨ 제13조를 위반하여 하도급대금, 준공금이나 기성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또는 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지급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행위,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 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행위<br>⑩ 제16조를 위반하여 발주자와 원사업자간 계약금액 변동 사실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 계약금액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 추가 하도급대금 및 관련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br>⑪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대물변제한 행위<br>⑫ 제18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한 행위 | ⑩ 제15조를 위반하여 관세 등 환급상당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br>⑪ 제16조의2 제7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행위<br>⑫ 제17조 제2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여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행위<br>⑬ 오프라인 작업 지시서를 사용한 행위 |

| 구분                  | 비중  | 100점 (상)                   | 67점 (중)                 | 33점 (하)                 |
|---------------------|-----|----------------------------|-------------------------|-------------------------|
|                     |     |                            |                         |                         |
| 위반<br>횟수            | 0.5 | 동일한 위반행위로 처벌을 3번 이상 받는 경우  | 동일한 위반행위로 처벌을 2번째 받는 경우 | 동일한 위반행위로 처벌을 처음 받는 경우  |
| 위반<br>대상<br>업체<br>수 | 0.1 | 위반행위 대상 수급사업자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 위반행위 대상 수급사업자 수가 2개인 경우 | 위반행위 대상 수급사업자 수가 1개인 경우 |

※ 단,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범위반 행위를 동시에 한 경우에는 유형별 합산 점수의 80%를 적용한다.

※ 위반행위 가중 : 동일한 위반행위가 5건 이상인 경우 20%, 10건 이상인 경우 30%를 가중한다.

※ 지연이자가 발생한 경우 산정된 점수에 아래와 같이 가중한다.

- 1백만원 이상 : 10% 가중
- 5십만원 이상 : 5% 가중

별첨 2. 공정거래 우수 현장 및 실천리더 포상기준

[공정거래 우수현장 선정 평가표]

| 구분       | 평가요소                                               |                        | 배점(점) | 단위 | 비고                              |
|----------|----------------------------------------------------|------------------------|-------|----|---------------------------------|
| 정량<br>평가 | 기본<br>점수                                           | 기본 부여                  | 100   | -  | -                               |
|          |                                                    |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공정위)      | -100  | 건당 | 공정위 처분 공문 도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          | 감점<br>요소                                           |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br>(자체점검) | -5    | 건당 | 공정거래그룹 주관 점검                    |
|          |                                                    | 공정거래 하도급 분쟁 발생         | -10   | 건당 | 포스코(이앤씨), 공정위, 국회, 언론사 등 민원 제기시 |
|          |                                                    | 추가공사 이상징후 발생           | -2    | 건당 | 시스템에 협력사가 응답                    |
|          |                                                    | 부당특약 사용                | -1    | 건당 | 공정거래그룹 주관 점검                    |
|          | 가점<br>요소                                           | 실천리더 주관 본부 자체점검        | 5     | 회당 | 최대 10점<br>(결과보고서 등 확인 시)        |
|          |                                                    | 현장소장 주관 교육             | 2     | 회당 | 최대 10점<br>(출석부, 사진 등 확인 시)      |
|          |                                                    | 공정거래 법 위반 자진시정         | 5     | 건당 | 현장 자진시정 限<br>(입금확인서 등 확인 시)     |
|          |                                                    |                        |       |    |                                 |
| 정성<br>평가 | 정량평가에서 동점인 경우,<br>공사금액, PJT 난이도, 수급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 공정거래그룹이 결정                      |

[공정거래 우수 실천리더 선정 평가표]

| 구분       | 평가요소                                      |                        | 배점(점) | 단위 | 비고                               |
|----------|-------------------------------------------|------------------------|-------|----|----------------------------------|
| 정량<br>평가 | 기본<br>점수                                  | 기본부여                   | 100   | -  | -                                |
|          |                                           |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공정위)      | -10   | 건당 | 공정위 처분 공문 도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          | 감점<br>요소                                  |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br>(자체점검) | -5    | 건당 | 공정거래그룹 주관 점검                     |
|          |                                           | 공정거래 하도급 분쟁 발생         | -3    | 건당 | 포스코(이앤씨), 공정위, 국회, 언론사 등 민원 제기 시 |
|          |                                           | 실천리더 주관 본부 자체점검        | 10    | 회당 | 최대 40점<br>(결과보고서 확인 시)           |
|          | 가점<br>요소                                  | 실천리더 주관 교육             | 5     | 회당 | 최대 20점<br>(출석부, 사진 등 확인 시)       |
|          |                                           | 공정거래 법 위반 자진시정         | 5     | 건당 | 현장 자진시정 限<br>(입금확인서 등 확인 시)      |
|          |                                           | 공정거래 관련 현장 코칭          | 1     | 회당 | 이메일 등 확인 시                       |
|          |                                           |                        |       |    |                                  |
|          |                                           |                        |       |    |                                  |
| 정성<br>평가 | 정량평가에서 동점인 경우,<br>우수 현장이 선정된 본부의 실천리더가 수상 |                        |       |    | 공정거래그룹이 결정                       |

##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발 행 인 포스코이앤씨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발 행 처 법무실 공정거래그룹

발 행 일 2026년 7월

편집·제작 (주)블루리밴드